

研究報告書 97-15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자 : 김 인(부산대 교수)

목 차

| | |
|--|-----|
| 국 문 요 약 | 9 |
| 제 1 장 서 론 | 12 |
|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12 |
|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 15 |
| 제 2 장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시민참여 | 27 |
| 제 1 절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시민의 참여 | 27 |
| 제 2 절 경찰서비스의 성격과 경찰서비스 전달상의 시민참여 | 38 |
| 제 3 절 자율방범활동의 공공재적인 특성과 자원봉사자의 논리 | 45 |
| 제 4 절 경찰서비스 전달상의 시민참여의 영향요인과 결과 | 52 |
| 제 3 장 각국의 주민자율방범제도 | 60 |
| 제 1 절 미국의 주민자율방범활동 | 60 |
| 제 2 절 일본의 주민자율방범활동 | 74 |
| 제 3 절 영국의 자율방범활동 | 81 |
| 제 4 절 기타 외국의 자율방범활동 | 88 |
| 제 4 장 경찰서비스 전달상의 시민참여 실태분석 | 93 |
| 제 1 절 부산지역 경찰자율방범조직의 현황과 운영실적 | 93 |
| 제 2 절 부산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 참여 실태 분석 | 105 |
| 제 5 장 자율방범활동이 경찰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참여 활성화 대책 | 125 |

| | | |
|----------|-------------------------------|-----|
| 제 1 절 | 경찰서비스 결과와 시민들의 특성 | 125 |
| 제 2 절 | 경찰서비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145 |
| 제 6 장 |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 방안 분석 | 152 |
| 제 1 절 | 자율방범활동의 정도와 관련 요인 분석 | 152 |
| 제 2 절 | 자율방범단체 참여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159 |
| 제 3 절 | 자율방범단체활동의 활성화의 방안 분석 | 163 |
| 제 7 장 |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179 |
| 제 1 절 | 분석결과의 종합적 논의 | 179 |
| 제 2 절 |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 187 |
| 제 8 장 | 결 론 | 203 |
| 참고문헌 | | 206 |
| 부 록 | | 213 |
| Abstract | | 243 |

표 목 차

| | |
|---|-----|
| 〈표 1〉 Eureka 자율방법순찰대의 임무 | 68 |
| 〈표 2〉 일본 직장 단위 자율방법단체 현황 | 78 |
| 〈표 3〉 부산북부경찰서 산하협조단체 현황 | 95 |
| 〈표 4〉 부산지역 경찰협력단체 회원의 직업별 현황 | 96 |
| 〈표 5〉 1996년도 2/4분기 자율방법대 조직현황 | 100 |
| 〈표 6〉 2/4분기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산하 자율방법대 활동 실적 | 101 |
| 〈표 7〉 부산광역시 각 구별 자율방법대원 현황 | 103 |
| 〈표 8〉 부산시민들의 개인적 소극적 방법활동 분석 | 106 |
| 〈표 9〉 성별에 따른 방법장비 소지 여부 분석 | 108 |
| 〈표 10〉 연령별 자녀에 대한 방법교육실시 유무 분석 | 109 |
| 〈표 11〉 거주지 유형별 자녀 방법교육 실시 여부 | 109 |
| 〈표 12〉 연령별 귀가 자녀의 마중 여부 분석 | 110 |
| 〈표 13〉 개인적 적극적 자율방법활동 분석 | 111 |
| 〈표 14〉 성별에 따른 수상한 자 신고 여부 분석 | 112 |
| 〈표 15〉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른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 여부 분석 | 112 |
| 〈표 16〉 성별에 따른 범죄희생 후 즉각적인 신고 여부 분석 | 113 |
| 〈표 17〉 범죄희생 후 신고하지 않는 이유 | 114 |
| 〈표 18〉 집단적 소극적 자율방법활동 실태분석 | 115 |
| 〈표 19〉 성별에 따른 이웃간의 방법대책협의 여부 분석 | 116 |
| 〈표 20〉 연령별 이웃간의 방법대책협의 여부 분석 | 116 |
| 〈표 21〉 이웃간의 대책협의 유무와 범죄희생경험 유무간의 관련성 분석 | 117 |
| 〈표 22〉 시민들의 경찰협력단체 참여 동기분석 | 117 |
| 〈표 23〉 주변자율방법단체별 회원들의 참여 빈도 | 119 |
| 〈표 24〉 각종 자율방법단체 회원들의 참여의 적극성 정도 | 121 |

| | |
|---|-----|
| 〈표 25〉 각종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정도 평가분석 | 123 |
| 〈표 26〉 거주지 특성에 따른 범죄희생경험 분석 | 125 |
| 〈표 27〉 시민들의 범죄희생경험 | 126 |
| 〈표 28〉 동네의 범죄발생정도 분석 | 128 |
| 〈표 29〉 거주지 유형별 범죄발생 정도 | 128 |
| 〈표 30〉 소득수준별 동네의 범죄발생정도 | 129 |
| 〈표 31〉 거주지의 범죄 안전성 정도 분석 | 131 |
| 〈표 32〉 생활수준별 동네의 안전성 인식의 차이 분석 | 131 |
| 〈표 33〉 소득수준별 동네의 안전성 인식에 대한 차이 분석 | 132 |
| 〈표 34〉 생활수준별 야간귀가의 안전성 비교 | 133 |
| 〈표 35〉 성별에 따른 야간귀가의 안전성 비교 | 134 |
| 〈표 36〉 거주지 유형별 야간귀가의 안전성 인식 비교 | 134 |
| 〈표 37〉 소득수준별 야간귀가의 안전성 인식 비교 | 135 |
| 〈표 38〉 자율방범단체 참여 여부에 따른 경찰 순찰활동의 만족도 비교 | 136 |
| 〈표 39〉 생활수준별 경찰 순찰활동에 대한 만족도 | 137 |
| 〈표 40〉 거주지유형별 경찰 순찰활동의 만족도 비교 | 138 |
| 〈표 41〉 자율방범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경찰의 범인검거활동 만족도 비교 | 139 |
| 〈표 42〉 소득수준별 경찰의 범인검거활동 만족도 비교 | 140 |
| 〈표 43〉 학력별 경찰의 범인검거활동에 대한 만족도 비교 | 141 |
| 〈표 44〉 자율방범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전반적인 경찰서비스 만족도 비교 | 142 |
| 〈표 45〉 거주지 유형별 전반적인 경찰서비스 만족도 비교 | 143 |
| 〈표 46〉 소득수준별 전반적인 경찰서비스 만족도 비교 | 144 |
| 〈표 47〉 주민 안전감의 영향 요인 분석(I) | 147 |
| 〈표 48〉 경찰서비스 만족감의 영향 요인 분석(Ⅰ) | 148 |
| 〈표 49〉 경찰서비스 만족감의 영향 요인 분석(Ⅱ) | 150 |
| 〈표 50〉 자율방범활동 참여 여부별 주민 자율방범활동 관심도 비교 | 152 |
| 〈표 51〉 연령별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관심도 비교 | 153 |
| 〈표 52〉 성별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심도 비교 | 154 |

| | |
|---|-----|
| 〈표 53〉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정도와 활동정도와의 관련성 분석 | 155 |
| 〈표 54〉 주민간의 친밀성 정도와 자율방법활동 정도간의 관련성 분석 | 156 |
| 〈표 55〉 주민의 호응정도와 자율방법활동 참여 정도간의 관련성 분석 | 157 |
| 〈표 56〉 범죄희생경험 유무와 자율방법활동 정도간의 관련성 분석 | 158 |
| 〈표 57〉 자율방법단체 참여여부와 범죄희생경험 유무와의 관련성 분석 | 159 |
| 〈표 58〉 자율방법단체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 영향요인 분석 | 160 |
| 〈표 59〉 자율방법단체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 영향 요인 분석 | 161 |
| 〈표 60〉 자율방법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 | 164 |
| 〈표 61〉 각 단체별 회원들의 효과성 인식 정도 분석 | 165 |
| 〈표 62〉 각 단체 활동의 비효과성 원인 분석 | 166 |
| 〈표 63〉 각 단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정도 분석 | 167 |
| 〈표 64〉 각 단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상의 문제점 | 168 |
| 〈표 65〉 경찰관들이 평가한 자율방법단체 지원상의 문제점 | 169 |
| 〈표 66〉 주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방안 | 170 |
| 〈표 67〉 경찰이 평가한 자율방법활동 활성화 방안 | 171 |
| 〈표 68〉 자율방법단체 참여 여부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시책 | 172 |
| 〈표 69〉 경찰이 평가한 자율방법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 분석 | 174 |
| 〈표 70〉 경찰관이 평가하는 주민자율방법활동의 비활성화 이유 | 174 |
| 〈표 71〉 각 단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정도 분석 | 175 |
| 〈표 72〉 경찰관이 평가한 경찰의 주민단체 지원정도 분석 | 176 |
| 〈표 73〉 각 단체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유인책 | 177 |
| 〈표 74〉 각 단체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자원봉사의 바람직한 형태 | 178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자율방범실태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정책적 처방책을 모색해 보는 실천적 성격을 띠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주민 800명, 자율방범대원 160명, 경찰협력단체 참여자 100명, 경찰관 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이 일반시민들에 비해서 각 유형의 자율방범활동에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이 일반시민들에 비해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주민들의 생활수준과도 관계가 있으나 그 관계의 양상은 중간층이 낮은 꺾모양의 비선형적이다. 경찰 서비스의 만족감은 정부의 정치적 태도, 주민들의 안전감, 불신감 및 연행경험 유무, 범죄희생정도, 소득수준, 교육수준, 자율방범단체 참여 여부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변수들이 45.938% 설명하고 있다. 또한 경찰 서비스의 주관적 결과인 안전감은 주민들이 인식하는 1년간의 범죄발생정도, 주민들간의 친밀감,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 여부, 성별, 소득수준, 거주지 유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안전감을 25.93% 설명하고 있다. 자율방범단체 참여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심도, 주민들의 호응도, 주민들의 친밀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변수들이 자율방범단체 참여의 적극성을 34.180% 설명하고 있다.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의 동기로서는 지역의 안전 확보와 친목의 도모가 가장 중요하며,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서는 자신들의 사정, 지원체계의 미비, 주민들의 낮은 호응도를 들고 있다. 이들은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는 것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시민들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 모두가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혜택이나 보상을 통한 사기 양양,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모집,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들고 있다. 자율방법단체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고시에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것,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자원봉사의 바람직한 형태로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접적인 노력봉사이며, 그 다음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형태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경찰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중요하다.

첫번째,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 홍보와 자원봉사의 사회지도 이념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지도자와 사회지도자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각종 유형의 방법활동 참여의 중요성 홍보 강화, 자율방법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두번째, 자율방법단체 참여자들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회원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 인사를 포함시켜 조직구성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협력단체 회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자율방법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 경찰 및 검찰 산하의 자율방법단체들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의 다른 자원봉사단체와 연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율방법단체 참여자의 선발, 훈련, 배치, 감독, 평가, 보상 등 제반의 인력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경찰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율방법단체 참여자들의 교육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네번째, 범죄신고보상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신고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철저 한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종 유인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인책으로서 각종 사고시에 보험혜택의 제공과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력을 인정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번째, 경찰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시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시민들은 치안서비스의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보급과 개선을 위해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과 시당국의 예산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경찰서비스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의 실시를 제도화 하여 시민들의 경찰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경찰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여섯번째, 반상회를 활성화 하여 동네 주민들 상호 간에 친밀감을 증진 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민들의 안전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자율방범활동에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된다.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최근 우리사회는 80년대 이후의 지속적이고도 급속한 경제성장 덕분에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으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높은 생활수준의 이면에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 상존하고 있는 지나친 민부의 격차, 국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는 물질만능적이고 향락적인 사고방식, 지나친 경쟁의식, 그리고 만연된 각종 비리와 범죄 등 각종 사회적 문제들은 국민들 상호간의 불신감과 적대감을 형성시키고 연대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사범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흉포화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 상대적 빈곤과 사회적 무력감을 느끼던 젊은 청소년들이 소위 ‘막가파’라는 폭력단을 조직하여 부녀자를 납치·폭행한 뒤 살인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경악케하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그런데, 오늘날 범죄는 양적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대담화·흉포화되고 동시에 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범죄의 예방과 구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범죄 예방과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없이 경찰 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최근에 형사사법과정 및 이와 관련된 여러 부문에서 시민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범죄라는 사회현상에 대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인식과 그리고 시민들은 자신과 가족은 물론 주위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공공서비스는 소비자인 시민과 서비스 전달자의 결합된 노력을 통해서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의 양과 질이 어떠한가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양과 서비스 수준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이 그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지리적 특성 등 그 지역사회의 여러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요인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공공서비스 전달의 효과성을 높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범죄예방활동에의 시민참여의 효과도 마찬가지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정부부문인 서비스 전달자와 그리고 서비스 수혜자나 혹은 소비자인 시민들이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 들이는 공동의 노력을 흔히 공동생산(coproduction)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본다면,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을 경찰서비스의 공동생산이라 지칭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구체적으로 다양한 모습과 형태를 띠게 된다. 즉, 시민들이 우범지역에 밤 늦게 다니지 않는 것, 범죄발생을 신고하고 범인이나 혐의자를 제보하는 것, 각종 방범시설이나 경보장치를 집이나 시설물에 설치하는 것, 방범길을 기르는 것, 그리고 동네의 자율방범대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 등은 공동생산의 좋은 예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생산 활동 중 능동적이며,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인 주민자율방범대 활동은 서비스 전달자인 경찰과 서비스 소비자인 주민 사이의 교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치안서비스의 가장 전형적인 공동생산 형태이다.

이러한 자율방범활동은 그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율적 활동이라는 점에서는 자급자족(Self-Help) 서비스이지만, 그 지역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참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자원봉사의 성격도 갖고 있다. 치안서비스나 혹은 그 외의 여러 도시서비스에 있어서 공동생산 활동은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이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요한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생산 활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최근에 행정학자들과 행정실무자들은 이와 같은 공동생산 활동이 왜 활성화되지 않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최근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 전달의 능률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자원봉사조직들을 활용할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 이러한 과제 중에서 시민자율방법대 활동의 활성화 방안도 지방정부가 해결하고자 하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자율방법활동의 활성화 문제는 비단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법무부 산하의 검찰, 교정기관 등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치안서비스의 증진을 위한 시민자율방법대 활동이나 혹은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구제하는 환경단체의 활동과 같은 규제활동들은 그 활동을 통해서 산출하는 서비스나 재화가 공공재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재화의 특성과 참여의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공동생산이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경찰치안 서비스 활동에 시민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만 시민들의 참여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라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재정적 부담은 오히려 적게 지려고 하고 있어 지방정부는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경영행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행정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종 서비스 전달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서비스 성과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비록 우리 나라의 경찰이 자치경찰이 아니라 하더라도 경찰의 치안활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경찰서비스 성과를 향상시키는 좋은 방책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첫째, 치안 서비스 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다양한 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둘째, 이러한 활동이 경찰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보고, 셋째, 이러한 활동의 활성화와 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을 규명해 봄으로써 주민자율방법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경찰은 원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가 그들의 기본적인 기능이며,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경비 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배포, 교통단속 및 위해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가 경찰의 구체적인 기능이다.¹⁾ 경찰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이 경찰의 기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범죄의 통제기능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와 관련되는 범죄예방기능과 구제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기로 한다.

경찰은 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범죄 예방과 구제 활동은 검찰이나 교정기관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하며, 다양한 자원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는 경찰의 치안활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검찰, 교정기관 등 여러 사법체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주민참여 활동 중 경찰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것에만 한정하고자 한다. 사실 범죄의 예방과 구제를 핵심으로 하는 치안서비스는 다양한 정부 사법체계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동시에 이들 사법체계와 관련한 주민 참여활동에 의해 치안서비스의 결과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경찰서비스와 관련한 연구는 그 만큼 어렵다. 즉, 경찰은 사법체계의 한 구성요소에 지나지 않으므로 경찰서비스의 결과는 경찰은 물론, 검찰, 교정기관, 법원 등 다양한 정부 기관들의 활동의 산물을 의미하므로 경찰만의 활동을 엄격하게 분리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정부나 혹은 전체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반영한 것일 수 있으며, 경찰은 실제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기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와 경찰공무원법 제2조 1항 참조. 김도창, 일반행 정법론(하) (서울: 경운사, 1985), pp. 204-258.

때문에 실제 경찰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 중에서 분석의 대상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²⁾ 본 연구에서는 연구 역량의 한계나 혹은 연구의 관심에 따라 검찰, 교정기관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은 체계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범죄의 예방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범죄발생 이후의 범죄자의 처벌, 교정교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소위 형사 사법적인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범죄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소위 비형사사법적인 사회적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을 강화시킬 수 있다. 본 연구는 후자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또한 범죄예방을 활동 대상에 따라 1차, 2차, 3차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는데, 1차예방은 주로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삼는 예방활동이고, 2차예방은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예방활동이며, 3차예방은 이미 범죄를 행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범방지 활동이다.³⁾ 본 연구는 이 중에서 1차예방활동에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2차나 3차예방 활동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경찰의 활동이 주로 1차예방 활동과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에서 흔히 민간경비와 인론의 범죄예방도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민간 차원의 범죄예방사업으로서 경찰력의 한계로 야기되는 국민생활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사회 각 계층의 다양한 경비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활동이다. 이러한 민간경비서비스를 개인이나 기업이 활용하게 되면, 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자조(self-help)와 같은 활동이나, 본 연구에서 이러한 민간 경비서비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동생산이나 자원봉사, 혹은 시민참여의 개념이라기보

2) Robert L. Bish and Hugh O. Nourse, *Urban Economics and Policy Analysis*(Tokyo : McGraw-Hill, Kogakusa, LTD., 1975), pp. 190-191.

3) 최인섭,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재단법인 한국범죄방지재단 (편), *범죄예방과 범죄인 교화*, 1995, pp. 24-25.

다는 민간부문 혹은 민간부문과의 계약과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을 통한 범죄예방활동도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이것은 그 만큼 오늘날 언론매체의 위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언론을 통한 범죄예방활동은 대중에게 범죄예방 홍보 캠페인, 범죄분체에 대한 정보 제공의 목적을 갖는 범죄신문을 통한 정보 캠페인, 그리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범죄신고를 유도하는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⁴⁾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범죄 신고와 관련한 범죄 예방활동에 있어 시민참여의 문제는 연구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하나 언론을 통한 범죄예방활동 자체는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죄의 유형은 전통적인 형사범죄에 한정하고자 한다. 즉, 마약사범이나 밀수 등과 같은 특수범죄와 경제범죄, 교통범죄 등은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실,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만큼 중요성도 부각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살인, 강도, 폭력, 주거침입 절도, 단순 절도 등 전통적인 형사범죄가 일반 시민들의 안전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연구의 범위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치안활동과 관련한 주민참여의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활동에 한정하는냐에 관한 것이다.

경찰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단체들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 중 어떤 것은 분명하게 방범활동과 관련된 것도 있으며, 어떤 것은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안활동을 넓은 범위에서 파악하고자 하며, 따라서 시민들이 각 경찰서와 파출소의 각종 협력단체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⁵⁾

4) 치안연구소 편집반, "21세기 범죄와 대응방향", 치안정책연구, 제6호, (1996), pp. 32-33. 이들은 에스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1996년에 발간한 「소득 1만불 시대의 한국사회의 변화와 대응」중 일부를 발췌수룩한 것임.

5) 이러한 협력단체로서는 경찰서 산하의 치안자문위원회, 방범자문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향장, 선진질서 위원회, 녹색어머니회, 기동거리정화위원회, 모범운전자회, 보안지도위원회와, 그리고 각 파출소 산하의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선진질서위원회, 방범자문위원회, 향장 등을 포함한다. 사실, 이런 협력단체를 연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들의 활동이 자율방범활동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연구의뢰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공동생산의 개념과 관련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 중에서 어떤 것을 포함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주민단체를 통해 주민들이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방법 활동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료수집의 편의 때문에 부산지역에 한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반드시 이러한 지리적 범위에 한정하여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본 연구의 외적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서울을 위시한 기타 도시에도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치안서비스 활동과 관련한 주민참여의 문제가 서울을 위시한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등 도시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나라의 경찰행정은 오랜 중앙집권의 전통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관련되는 주민참여활동의 양상도 상당히 비슷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론을 우리 나라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요한 정책적 참고 자료로 활용하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할 각종 자료는 비교적 최근의 자료에 한정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과거 2년간으로 잡고자 한다. 물론, 연구의 필요에 따라 자료방법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할 때에는 더욱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상황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지나친 과거의 자료를 통한 정책문제의 분석은 그 타당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연구방법

가. 연구의 성향

본 연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지향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문제

의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는 연구자의 올바른 가치관이나 시각이 필요하겠지만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중요하다. 정책문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역방법활동의 공동생산에 관한 다양한 실태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공동생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정확한 정형적 연구도 필요하다. 나아가서 공동생산이 서비스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밝혀냄으로써 공동생산의 중요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뒤에서 언급하는 연구방법에서 공공재를 생산하는 행위자의 참여행태에 있어서 참여자의 활동의 효과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정치경제학적 관점과 관련하여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쥬는, 본 연구는 경찰의 치안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연구결과로서 제시되는 정책주장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과학적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정형적 정향의 연구방법과 그리고 연구자의 관점을 제시하는 구범적 정향의 연구방법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나. 연구의 접근방법

연구에 있어서 사용하게 되는 접근방법이란 그 연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지칭한다. 이렇게 본다면 한 연구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근본적으로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본 연구에서 필요한 각종 자료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고, 이러한 자료를 통해 경찰서비스 결과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즉, 시민들의 안전감이나 만족과 같은 경찰서비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행태론적 접근방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접근방법 외에 신제도론적 접근방법과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도 활용하고자 한다. 즉, 연구대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변수를 선정하거나 혹은 분석에 필요한 주요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이들 접근방법의 논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제도론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공동생산의 활동은 참여자들의 활동상황과 참여자들의 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이것은 지역사회의 특성, 공동 생산되는 서비스의 특성, 사용된 규칙으로서의 일단의 제도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⁶⁾ 이런 관점은 자율방법활동의 활성화나 성과의 증진을 위해서 제도가 중요한가 아니면 규칙으로서의 제도가 중요한가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 주며, 동시에 그 활동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물론 본 연구에서 이러한 접근 방법에 따라 구체적인 각종 규칙인 제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의 주요 변수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한다.

특히, 참여자들의 공동생산에의 참여와 관련한 선택적 행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을 중요하게 참고하고자 한다. 이 접근방법은 정치행정적 행위를 경제학의 이론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생산 활동의 참여와 관련한 시민들의 반응에 관한 분석에서 시민들의 행태에 관한 경제적 모형(economic model)을 적용하게 되면, 공동생산활동은 그 활동으로부터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편익을 반드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인 보상도 포함한다.⁷⁾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서 비용과 편익을 수리적으로 계산하기 보다는 비용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행위를 분석한다는 것이다. 제도론적 접근방법도 원래 신제도론적 경제학에 기초를 두고 있어 행위자에 대한 경제인을 가정하고 있어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볼 수 있다.⁸⁾

6) J.S. Gellar, R. J. Oakerson and Susan G. Wynne, *An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Marketing of Arabica Coffee in the West and North West Provinces of Cameroon*, Burlington, Vt.: Associates in Rural Development, Inc., (1990).

② In Kim, "A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alysis of Urban Service Delivery: Focused on Police Service Delivery,"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Vol. 4, No. 1. (1992).

7) Richard C. Rich, "Interaction of the Voluntary and Governmental Sectors;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Coproduction of Municipal Services", *Administration & Society*, Vol. 13, NO. 1. pp. 59-76, (1981).

8) In Kim (1992), op. cit., pp. 58-59.

다. 분석단위와 수준

치안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서 분석단위의 선정은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원래 공공서비스는 그 성격에 따라 개인에게 전달되기도 하며 동시에 어떤 구역이나 집단에게 제공되기도 한다. 경찰서비스의 범죄예방 활동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서비스를 집합적으로 소비하며 동시에 개인의 서비스 사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어떤 구역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러나 경찰서비스의 결과로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과 그 원인, 개인들이 공동생산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원인 등에 관한 분석은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우리가 집단(더 정확하게는 구역의 주민) 수준에서도 분석을 할 수는 있다. 즉, 어떤 동네의 주민들이 경찰서비스에 더욱 만족을 느끼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공동생산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가를 분석할 수는 있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의 분석 내용은 각기 다른 것을 의미하고 사실 이러한 두 가지 정보는 다 필요하므로 두 가지 분석이 다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방범활동의 공동생산에 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분석의 수준을 지역, 즉 동이나 혹은 동네, 동네 주민 등에 둘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에 둘 수도 있다. 어디에 두느냐는 연구자의 관심에 달려 있지만, 결국 이런 문제는 자료를 찾게 되는 주제단위와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단위로 분석단위를 구분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⁹⁾

본 연구에서는 첫째, 시민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 자율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가를 규명하는 연구와 자율방범활동이 경찰의 치안서비스 결과인 시민들의 안전감이나 혹은 경찰서비스의 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단위가 개인이 되며, 둘째, 일반시민들이나 자율방범단체의 참여자들이나 혹은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집단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의 정도에 관한 분석에서는 이런 집단들이 대상 단위가 된다.¹⁰⁾

9) Heinz Eulau, *Micro-Macro Political Analysis: Accents of Inquiry*(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69), pp. 12-13.

10) 강신택, *사회과학 연구의 논리*, (서울:박영사, 1995), pp. 148-149.

라. 자료의 수집

본 연구에서 수집해야 할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2차적 자료로서 이미 발표되었거나 작성된 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로는 경찰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 치안활동과 관련한 각종 규칙이나 제도, 치안 활동과 관련한 인적 물적 자원에 관한 자료,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자료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 중 어떤 것은 본 연구에서 상당히 도움을 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되나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2차자료는 구체적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 다른 하나는 1차적 자료로서 본 연구에서 직접 수집해야 할 자료들이다. 이러한 자료는 일반주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할 것이다. 특히, 경찰서비스 결과에 대한 각종 자료는 정부기관의 각종 자료철을 통해서 수집할 수도 있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할 수도 있다.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동시에 수집의 능률성과도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경찰서비스의 결과의 하나인 범죄피해경험, 범죄로부터의 안전감,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이들 자료는 객관적일 수도 있으며, 주관적일 수도 있다. 사실, 정부기관을 통해서 수집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주민들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주관적인 것은 아니다.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것의 문제는 응답자가 설문에 대한 응답을 할 때 가치판단을 하느냐 사실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범죄피해에 관한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과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은 주관적일 수 있다. 즉, 범죄발생 정도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더욱 불안하게 느낄 수 있으며, 똑같은 경찰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에 따라 만족하거나 불만스러워 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한 주관적인 자료를 통해 경찰서비스 전달이나 공동생산의 분배를 논하게 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방법론상의 문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응답자의 정치적 태도가 서비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¹¹⁾ 특히, 정신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서비스나 범시행과 관련되는 검찰, 경찰, 교정 서비스의 경우 정부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변수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변수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밝히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경찰서비스의 경우 순찰활동은 지역에 집합적으로 제공되며, 그 외의 경찰활동이나 범인 체포와 같은 서비스활동은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제공되기는 하나 일반 주민들이 직접 경험하기란 극히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형성된 만족이나 불만의 태도도 서비스에 대한 태도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구체적인 경험을 한 경우 이를 주요 변수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응답자가 자기 동네의 서비스 상태를 다른 동네의 경우보다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¹²⁾ 따라서 설문조사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측정치와의 비교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서비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민들이 꽤 정확하게 평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사실, 주관적 측정치를 통해서 서비스의 결과나 성과를 측정하는 경우 이러한 자료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문제가 있다. 즉, 주관적 자료는 설문조사의 응답 과정이라는 개인의 구체적인 정신적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응답을 하게 되는 심리적 반응과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¹³⁾ 넷째, 경찰이 발표하는 소위 '보고된 범죄율'이나 '보

11) Mark S. Rosentraub and Lyke Thompson, "The Use of Surveys of Satisfaction of Evaluations," *Policy Studies Journal*, Vol. 9, (Summer, 1981), pp. 990-998.

12) Brian Stipark, "Attitudes and Belief Systems Concerning Urban Service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41 (Spring, 1977), pp.41-55.

13)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는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 자신의 기대와 비교되어 그 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나타낸다는 지각 기대 모형(perception expectation model), 서비스의 각 속성의 중요성이 고려된 가운데 그 속성에 관한 시민들의 지각의 총화를 나타낸다는 합리적 신념모형(rational belief value model), 서비스의 보다 구체적인 특성에 대한 시민의 평가를 나타낸다는 일반화 모형(specific to general model), 시민이 정부나 혹은 그런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는 구체화 모형(general to specific model), 시민이 가족 혹은 영향력 있는 개인들로부터 배운

고된 범죄의 처리결과'와 같은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경찰이 얼마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의 활동과 시민들의 범죄피해경험, 범죄로부터의 안전감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게다가, 최근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자료들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집되고 있다. 이것은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고 따라서 시민들에 대한 만족이나 지각이 서비스 성과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란 생각에서도 기인하겠지만, 이러한 조사결과는 서비스 관리자 혹은 정책결정자에게 시민의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정보를 부가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¹⁵⁾

마. 표본의 추출

조사대상자들을 표본 추출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은 치안활동의 집단적인 공동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과 잠재적인 참여자,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조사대상에 포함되도록 조사설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시민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를 구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며, 아울러 이들에게는 각기 다른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을 어떻게 표출하느냐의 문제인데, 여기서는 자율방범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이 분석될 수 있도록 조사설계를 할 필요가

태도를 나타낸다는 준거집단 모형(reference group model), 시민이 그 서비스에 대해 아무런 느낌이나 생각 없이 질문에 무작위 적으로 응답한 것이라는 무작위적 응답 모형(random response model), 이런 여러 요인의 결합이라는 복합 모형(compound model) 등이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평가할 때는 조사결과가 위의 여러 모형 중에서 '합리적 신념 가치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결과가 위의 다른 모형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가능한 줄여서 조사결과에 타당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 14) Elinor Ostrom and Gordon Whitaker, "Does Local Community Control of Policy make a Difference? Some Preliminary Finding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17 (Feb. 1973), pp.48-76.
- 15) R. Fitzgerald and Robert T. Durant, "Citizen Evaluations and Urban Management Service Delivery in an Era of Protes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0 (Nov./Dec. 1980), pp. 585-594.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수준, 자율방법활동의 활성화 정도, 거주지 특성 등이다. 따라서 동네를 상류층, 중상류층, 중하류층, 하류층으로 구분하여 표본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주민자율방법활동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과 상대적으로 부진한 지역을 구분하여 표본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각 동 중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등이 고루 선정되도록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¹⁶⁾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본이 추출되면 자율방법활동의 원인과 결과와 관련한 변수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산의 16개의 구 중에서 1차로 급정구, 부산진구, 사상구, 영도구 등 4개의 구(경찰서)를 표출하고, 2차로 각 구에서 주민들의 평균적인 생활수준이 상류층, 중상류층, 중하류층, 그리고 하류층인 동을 각각 1동씩 선정하였다. 각 동에서 주거지역의 특성과 그리고 자율방법대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고려하여 5개의 통을 선정하였다. 끝으로, 각 통에서 10명씩의 주민들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총 800명의 주민을 표출하였다. 또한 구청에서 관장하는 청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선진질서추진위원회 등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주민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각 동별로 10명씩 16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총 960명이며, 이들에 대한 조사는 1996년 10월 28일부터 일주일 동안 배포식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 실시하였으며, 전수 회수되었다.

본 연구에서 표본추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각 지역에 대한 명부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각 경찰서 및 파출소의 경찰협력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부산의 급정경찰서, 부산진경찰서, 북부경찰서, 영도경찰서 산하의 각 협력단체별로 회원 명부를 수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협력단체의 회원 중

16) 부산지역의 자율방법대는 1995년 1/4분기 현재 876개소이며, 우범지역 768개소이다. (부산시 내부자료, 1995).

200명을 선정하여 1차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수된 것이 45부에 지나지 않아 다시 새로운 설문대상자를 200명 선정하여 2차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7부가 회수되어 응답자가 총 102명이 되었다.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도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4개 경찰서 산하 파출소 중에서 100개를 선정하여 이들 파출소에 1부를 보내어 가능하면 파출소장이 응답하도록 요청하였다. 1차 우편조사에서 100부를 발송하였으나 20부가 회수되었으며, 2차 우편조사에서는 응답하지 않은 파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2부가 더 회수되어 총 42부가 분석에서 사용되었다. 우편설문조사는 재조사 때문에 11월 한 달 동안 계속되었다. 위의 여러 유형의 설문지는 〈부록 2〉, 〈부록 3〉, 〈부록 4〉로 제시되어 있다.

바. 자료의 처리 방법

문제를 구성하거나 정의할 때 우리는 자료를 계량적으로 분석 처리하게 되면 문제의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든다면, 범죄피해정도, 범죄피해경험 유부, 자율방범대 활동이 활성화된 동네와 그렇지 않은 동네 사이에 주민들의 안정감 차이, 주민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만족 등을 고찰해 보는 것은 치안서비스 전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혹은 자율방범대활동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은 물론 Chi-Square Test를 하고자 한다. 특히, 후자는 집단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데 유용한 통계기법이다. 아울러 자율방범대의 참여자들과 잠재적 참여자들인 시민들이 생각하는 참여동기나 유인에 관한 분석은 비록 단순 빈도만을 제시하더라도 자율방범대활동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정책건의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통해 치안활동 공동생산의 수준, 원인, 그리고 결과에 관해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며,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분석에서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고자 한다.

제 2 장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제 1 절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시민의 참여

1. 서비스전달과 시민참여

정치 행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오래 전부터 커다란 관심을 끌여온 주제이다. 60년대 말부터 미국의 젊은 정치학자들이 제기하기 시작한 실행정부에서도 시민참여는 행정의 주요한 하나의 이념이자 원칙으로 제시된 바 있다. 이와 같은 시민참여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은 행정 통제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도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이것은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일체감을 통한 시민사회 내지는 국민국가의 건설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다.¹⁷⁾

Alford는 시민참여를 '의사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정의하고 있고,¹⁸⁾ Smith와 Ross는 '의사결정에서의 관여'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⁹⁾ 일반적으로 행정에서의 시민참여란 청문회, 자문위원회, 특수연구단, 설문조사 등 다양한 제도와 형태를 통해서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주로 지방정부와 일선행정기관의 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정책결정에의 참여도 포함하지만 주로 서비스 생산활동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것은 정부와 시민들이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소위 공동생산을 의미한다.

17) 김홍기, 지방자치에 있어서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법률행정논집 (서울시립대학교), 1993, p. 168.

18) Robert R. Alford, *Bureaucracy and Participation* (Rand McNally and Company, 1969), p. 21.

19) Davis Smith & Valerie Ross, *Enhancing Citizen Participation*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Metropolitan Research and Development, 1973), pp. 2-3.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시민 참여의 문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과정을 보다 자세하게 분해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²⁰⁾ 흔히 우리가 공공서비스의 전달이나 서비스의 공급이란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경우 서비스 전달의 개념 속에는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무엇을 생산하여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산출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를 서비스의 공급이라 하고 후자를 서비스의 생산이라 구분하고 있다.

서비스의 공급이란 제공할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 규제할 사적활동, 규제할 유형과 내용, 확보할 세수(revenues)의 규모, 제공될 재화의 양적·질적 표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에 관한 집합적 선택을 지칭한다. 이와 달리 생산이란 투입을 산출로 전환하는 보다 기술적인 활동 과정을 지칭한다.²¹⁾ 그래서 정부의 많은 공공서비스는 정부기관이 서비스를 공급(provision)하고, 생산(production)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공공서비스를 정부가 공급하고 생산하여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즉, 정부는 서비스의 질적 양적 표준이나 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비용의 부담과 그 규모의 결정 등 소위 서비스의 공급은 정부가 맡고 사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가 생산되고 있다.

누가 서비스의 생산을 맡는가의 문제는 서비스 생산과 관련한 능률성이나 효과성 등 서비스 성과에 의해 크게 결정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주요 생산방식으로서는 정부의 직접적 생산, 정부간 협의, 계약, 프랜차이즈, 증표(vouchers), 보조금, 자원봉사, 자조(self-help), 그리고 규제와 유인 등을 들 수 있다.²²⁾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정부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업체,

20) V. Ostrom and E. Ostrom, "Public Goods and Public Choices," in E. S. Savas, ed., *Alternatives for Delivering Public Services: Toward Improved Performanc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1977, pp. 18-23.

21)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 *Metropolitan Organization: The St. Louis Case*, Washington D. C.: ACIR, (1988), Report M-158, pp.6-7.

22) 김인, 부산시 교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지방과 행정연구 (부산대학교), 제6권 1호, 1994, p. 62.

비영리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다. 시민들은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게 되기도 하지만 자조 활동의 일환으로서 참여하게 되기도 한다.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사기업이 참여하게 되는 것은 주로 민영화의 논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는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서 공공서비스의 전달에 참여하기도 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일환으로서 공공서비스 전달의 일부 업무를 맡기도 한다.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있어서 시민참여의 문제는 이처럼 자원봉사 활동과 자조활동으로서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활동을 모두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공동생산의 문제로 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과정에서 시민참여는 주요한 의사결정에 자기들의 선호나 요구를 반영하는 것, 즉 투입으로서의 참여만을 의미하지만,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논의할 때는 이러한 투입 상의 문제와 아울러 지지로서의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도 포함한다. 공동생산은 공적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시간의 기여라는 역할을 중요시 해 왔다. 그래서 공동생산은 보다 책임성 있는 시민, 보다 대응적인 정치과정, 동네집단의 활용 증가, 인간적인 정치과정,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과정 등 발전의 바퀴와 같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²³⁾

앞에서 서비스 전달과정을 분해해 보면 공급과 생산으로 분리해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서비스 전달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에 따라 공동공급(coprovision), 공동생산(coproduction), 공동재정(cofinancing)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공동공급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누구에게 공급하며, 그 서비스의 질적 양적 표준의 설정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자문을 해 주거나 실제 공동으로 의사 결정하는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공동생산은 구체적으로 서비스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23) W. E. Bjur and G. B. Siegel, "Voluntary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Quality, Cost, and Commitment," *Midwest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11. (1977) pp.135-149.

2. 시민참여로서의 공동생산의 개념

원래, 공동생산은 1980년대는 미국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에 시민들의 참여의 유망한 한 형태로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흔히 공동생산을 공공서비스 전달을 위해 한편으로는 정부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주민조직, 지역사회의 협회, 고객집단 등과의 협동적인 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Brudney, 1990). 그래서 Brudney는 공동생산은 서비스 공급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의 서비스 담당자와 시민 개인이나 시민집단에 의한 서비스의 합동적 생산(joint production)이라 정의하고 있다.²⁴⁾ 그러나 Kiser는 정부기관과 시민이 동일한 서비스를 생산할 때 이것을 공동생산이라고 간단히 정의 내리고 있다. Kiser는 공공기관과 시민이 동일한 상품(commodity)을 생산할 때 그것을 공동생산이라 규정하고 이런 공동생산 활동의 정도는 서비스 기관의 특성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Whitaker도 공동생산의 개념을 서비스 수혜자 혹은 소비자로서의 시민이 서비스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²⁵⁾ Parks와 동료들은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정규생산자(regular producer)와 그리고 소비자로서의 생산자(consumer producer)의 혼합적인 생산적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²⁶⁾ 공동생산을 어떻게 정의하든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동생산의 개념에는 시민 개인이나 집단으로서의 시민 혹은 주민들이 공공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waren과 그의 동료들은 공동생산을 도시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는 개인이나

24) Jeffrey L. Brudney, "Local Coproduction of Services and the Analysis of Municipal Productivity", *Urban Affairs Quarterly*, Vol. 19, No.4 (June 1984), p. 465.

25) G. Whitaker, "Coproduction: Citizen Participation in Service Delive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0 (May/June 1980), pp. 240-246.

26) Parks, Rodger B., Pauler C, Baker, Larry L. Kiser, Ronald Oakerson, Elinor Ostrom, Vincent Ostrom, Stephen L. Percy, Martha B. Vandivort, Gordon P. Whitaker, and Rick Wilson, "Consumers as Coproducers of Public Services: Some Economic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 *Policy Studies Journal*, Vol. 19, No. 7, Summer 1981.

집단과 공공기관 사이의 교호적인 작용이라 정의하고서 공공기관과의 교호작용이 없이 시민들에 의한 생산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투입은 공동생산의 개념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는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로서 기능하는 데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개인의 활동을 보조생산(ancillary production)이라 하며, 정부기관의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지만 공공기관과의 직·간접적인 교호작용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평행생산(parallel production)이라 규정하여 이들을 공동생산과 구분하고 있다. 보조생산의 예로서는 법시행에 있어서 어린이에게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시키는 것,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 사람들이 배심원으로서 일하는 것, 운전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는 것 등을 들 수 있으며, 평행생산의 예로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자물쇠나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 방법을 위해 총을 집에 비치해 두거나 혹은 방범무기를 휴대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고 한다.²⁷⁾

이러한 구분은 공동생산의 개념을 좁게 정의한 것으로서 서비스 생산에 시민참여의 실제적인 의미를 모두 포괄하지는 못한다. 이에 비해 Rich는 공동생산을 능동적인 활동과 수동적인 활동으로 나눌 수 있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과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있다고 한다. 또한 능동적인 활동은 다시 개별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나누어 보면, 공동생산은 전체 6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²⁸⁾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것은 주로 어떤 활동을 하지 않거나 삼가는 것으로서 그것 자체도 어떤 서비스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서비스 성과에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공동생산으로서 관심을 끄는 것은 능동적이며 동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개별적 혹은 집단적 활동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공동생산활동의 예로서는 개인의 집이나 건물에 방범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집단적

27) Robert Warren, Mark S. Rosentraub, and Karen S. Harlow, "Coproduction, Equity, and the Distribution of Safety," *Urban Affairs Quarterly*, Vol. 19, No. 4, 1984, pp. 447-464.

28) Rich, Richard C., "Interaction of the Voluntary and Governmental Sectors: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Coproduction of Municipal Services", *Administration & Society*, Vol.13, No.1 (1981), p. 62.

인 공동생산활동으로서는 자율방법활동을 들 수 있다.

Rich의 분류에 따르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활동, 즉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혹은 어떤 가치를 파괴하는 활동도 공동생산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이 공원을 배회하면서 각종 청소년 폭력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공동생산의 활동으로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것은 비록 그것이 부정적 공동생산이라 지칭하더라도 통상적인 개념과는 잘 맞지가 않다. 따라서, 공공서비스 전달과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는 공동생산을 적극적인가 소극적인가의 차원과 그리고 개별적이나 집단적이나의 차원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평행생산과 보조생산의 개념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과 자조활동도 포괄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분류방식에 따른 넓은 의미의 공동생산 개념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공동생산의 개념과 관련하여 끝으로 논의할 것은 공동생산과 공동공급, 공동재정의 문제이다. 서비스 전달과정을 구분하면 공급과 생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의 생산 활동에의 시민참여만을 공동생산이라 좁게 규정할 수도 있지만, 위에서 논의한 바처럼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공동생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동공급을 넓은 의미의 공동생산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의 생산에 단순히 인적 자원의 투여, 즉 시간을 들여 어떤 활동을 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서비스의 생산에 필요한 물적 자원, 즉 금전적 기여인 공동재정도 당연히 공동생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공동생산의 개념을 보다 자세하게 구분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다만 서비스전달에 시민참여의 문제는 공동생산의 문제이며, 이때 공동생산의 개념은 여기서 논의한 바처럼 넓은 의미의 공동생산의 개념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서비스전달에서의 시민참여는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참여도 포함하며,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집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나아가 시민들의 참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자원봉사와 자기 자신이나 자기들의 집단을 위한 활동인 자조활동(self-help)도 포함된다. 나아가

서,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자문을 해주거나 혹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물질 자원을 제공하는 활동도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중요한 시민참여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3. 공동생산에 관한 연구경향

공동생산에 대한 연구의 방향과 관련한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공공기관의 업무에 시민들의 참여의 한 형태로서 관심을 끌기 시작한 이래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먼저, Kiser는 공동생산에 관한 제도적 이론을 개발하려는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그는 서비스의 공동생산을 증진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참여자와 그 직책에 관한 규칙인 경계규칙(boundary rule)과 그리고 의사결정에 관한 규칙인 권위규칙(authority rule)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 있다.²⁹⁾

이런 공동생산에 관한 초기 연구의 하나로서 Bjur와 Siegel의 연구를 들 수 있다.³⁰⁾ 그들은 지방정부에 있어서 자발적 시민참여에 관해 서비스의 질, 비용 등의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립하려고 했으며 동시에 이러한 개념을 통한 도시공공서비스를 새롭게 보려는 시도를 하였다.³¹⁾ 이러한 연구는 Vincent Ostrom과 Elinor Ostrom의 공공재와 공공선택이라는 논문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그들은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높이

29) Larry L. Kiser, "Toward an Institutional Theory of Citizen Coproduction," *Urban Affairs Quarterly*, Vol.19, No.4. (1984).

30) W. E. Bjur and G. B. Siegel, "Voluntary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Quality, Cost, and Commitment," *Midwest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1. (1977).

²⁾Larry L. Kiser, "Toward an Institutional Theory of Citizen Coproduction", *Urban Affairs Quarterly*, Vol. 19, No.4 (June, 1984), p. 485.

31) Elaine, B. Sharp,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Urban Services and Citizen Participation: The Coproduction Concept," *Midwest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 14, (1980).

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특히 공공재의 경우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치밀한 제도적 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³²⁾ 이런 관점의 연구는 Rodger B. Parks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학자들에 의해서 계속되었다. 그들은 공동생산의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 관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하였으며, 특히 공동생산이 시장과 비시장에 의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고 있다.³³⁾ 뿐만 아니라, Rich는 공동생산을 정부부문과 자원봉사의 교호작용으로 보면서 도시정부의 공동생산을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³⁴⁾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소위 공동생산이 왜 흔하게 일어나지 않는가에 관한 질문에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서비스의 집합재적인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며, 이런 관점이 곧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공공서비스 전달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자체의 편익처럼, 공동생산의 편익은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동네 주민 모두를 위한 집합재의 성격을 띤다. 집합적 재화는 개인들이 그 생산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그들에게 그 재화의 사용을 하지 못하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단에 의해 함동으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가로등, 경찰의 치안서비스, 소방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어떤 구역의 동네 주민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집합적 재화이다.³⁵⁾ 집합적 재화는 어떤 구역에 제공된다면 그 구역에 살거나 드나드는 사람 모두에게 그들이 그 서비스의 공급에 기여했거나 않거나 관계없이 그 편익이 이

32) Vincent Ostrom, and E. Ostrom, "Public Goods and Public Choice," in E. S. Savas (ed.) *Alternatives for Delivering Public Services: Toward Improved Performance*, (Boulder, Co.:Westview,), pp.7-49. (1977).

33) Rodger B. Parks et als, "Consumers as Coproducers of Public Services: Some Economic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 *Policy Studies Journal*, Vol.9, (1981).

34) Rich, Richard C., "Interaction of the Voluntary and Governmental Sectors;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Coproduction of Municipal Services", *Administration & Society*, Vol.13, No.1 (1981), pp. 59-76.

35) E. Ostrom, "The Design of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he Responsiveness of Police," in L. Rieselbach (ed.) *People vs. Government*, Bloomington:Indiana University Press, (1975).

용 가능하다. 집합적 재화의 이런 성질은 대규모 집단들에게는 집합 재를 확보하려는 자원봉사활동을 극히 불확실하게 한다.

Mancur Olson은 이익집단의 규모가 대규모인 경우 개별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기여에 따른 적절한 보상으로서의 편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단을 위한 집합재의 공급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유인을 갖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³⁶⁾ 집합재의 생산에 있어서 개별적인 기여자들은 대규모 집단을 위한 집합재의 이용에 있어서 자신들의 기여에 따른 어떤 차이를 직면하게 될 것 같지가 않으며, 동시에 이러한 재화의 공급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주목되지도 않을 것이다. 다른 구성원의 노력으로 생산되는 집합재의 편익을 기여하지 않은 개인들이 향유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고, 그들 자신의 기여를 통해서 재화의 공급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잠재적 기여를 보류함으로써 그들의 비용을 극소화시킬 유인을 갖게 될 것이다.³⁷⁾

집합재의 공급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없이 집합재의 편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을 흔히 무임승차자(freerider)라고 한다. 대규모 집단에 집합재를 공급하는 데 분개가 되는 것은 비록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그 재화를 바라는 경우에도 집단구성원들은 무임승차자 전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개인들이 무임승차자의 위치를 실제 채택하고 집합적 이익과 관련하여 수동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단 구성원들이 집합재의 공급에 관해 각자의 행태를 기대하는 어려움에 있는 것이다. 만약 개인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적절한 기여를 기대할 수 없다면, 그들 공동의 집합적 노력이 요구되는 재화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괜히 그들 자신의 기여를 무용불로 만들 위험부담을 안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³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집합재를 한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경우 이런 역풍성이 적용된다면 그 결과는

36) Mancur Olson J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New York: Schocken Books, (1965).

37) N. Fritlich, J. A. Oppenheimer, and O. Young, *Political Leadership and Collective Good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38) A. Oberschall, *Social Conflict and Social Movement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3).

면 집합재를 한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경우 이런 역동성이 적용된다면 그 결과는 자원봉사 활동의 대규모 실패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용의 극소화와 편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합리성은 집단이익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합적 비합리성을 가져올 수 있다.³⁹⁾

이와 같이 공동생산을 재화의 성격, 특히 공공재의 성격과 관련하여 연구함으로써 공동생산 활동 중 자원봉사활동이 자조활동보다 활성화시키기가 더욱 어려운 이유를 분명히 밝힐 수 있었으며,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연구 외에도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방법론상의 이슈와 정책이슈에 관한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으며,⁴⁰⁾ 공동생산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또한 공동생산이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시켜 줄 수 있는 전망에 대해 고찰한 연구도 있어 공동생산과 도시서비스 전달의 성과 사이의 관계에 관한 관심도 나타났다.⁴¹⁾ 이러한 연구는 Brudney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는 공동생산이 도시서비스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⁴²⁾ 이와 같은 공동생산이 경찰서비스의 배분과 형평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논문도 있다.⁴³⁾ 이러한 연구와는 달리 Ferris는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의 표준,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의 자금조달방법, 서비스의 생산자 등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는 활동과 관련한 시민참여를 공동생산과 구분하여 공동공급(coprovision)이라 개념을 사용하여 서비스공급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금과 시간의 기여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⁴⁴⁾

39) G.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 162 (1968), pp. 1243-1248.

40) Rosentraub, M. S. and K. S. Harlow, "Public/Private Relations and Service Delivery: The Coproduction of Personal Safety," *Policy Studies Journal*, Vol. 11, No. 3, (1983).

41) Stephen L. Percey,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Coproduction of Urban Services," *Urban Affairs Quarterly*, Vol. 19, No. 4, (1984).

42) Jeffrey L. Brudney, "Local Coproduction of Services and the Analysis of Municipal Productivity," *Urban Affairs Quarterly*, Vol. 19 No. 4 (1984), pp. 465-466.

43) R. Warren, M. S. Rosentraub, and K. S. Harlow, "Coproduction, Equity, and the Distribution of Safety," *Urban Affairs Quarterly*, Vol. 19, No. 4, (1984), pp. 447-464.

44) Ferris, James M., "Coprovision: Citizen Time and Money Donations in Public Service Provis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4, No.4. (1984)

한국에서도 경찰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문제를 다룬 연구도 있으며,⁴⁵⁾ 공공서비스의 배분 연구에서 공동생산의 원인과 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연구를 다룬 연구도 있다.⁴⁶⁾ 또한 시민주도형 범죄예방을 소개한 논문도 있으며, 민간의 자율방범활동을 기본적 시각과 함께 다각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있다.⁴⁷⁾ 아울러 경찰의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참여의 분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도 있다.⁴⁸⁾

어쨌든, 자원봉사활동은 공공서비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데 갖고 있는 유인체제와 이런 활동의 효과성은 정부의 정책에 크게 달려 있다. 정부의 서비스 담당관료들은 서비스 전달체계의 융통성과 대응성을 증가시키고, 지역사회의 자급자족 노력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공공서비스 전달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여에 대해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해 주므로써 자원봉사제도를 촉진시켜 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은 공생산적인 활동이 공공서비스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평가함으로써, 그리고 공공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하는 유인체제를 분석하는 노력을 기울이므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의 모색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이미 여러 학자들에 의해 수행 중이다.⁴⁹⁾ 이런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어떤 주어진 수준의 수요를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공동생산의 역학을 이해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공동생산활동을 조장함으로써

45) 정윤수,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에 관한 이론적 고찰", 경찰대학 논문집, 제13집.

46) 김인, 공공서비스 배분의 결정요인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1986).

47) 신동운, "민간의 자율방범활동", 형사정책연구, 창간호, 1990, p. 317-333.

48) ①김중남, 경찰과 지역사회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치안논총, 제 7집, 1990, pp. 105-141.

②정승호, "지역공동치안전략에 관한 연구", 경대 논문집(경찰대학), 제14집, 1994, pp. 369-401.

49) ①Rodger B. Parks et als, "Consumers as Coproducers of Public Services: Some Economic and Institutional Consideration," *Policy Studies Journal*, Vol. 9, (1981).

②Whitaker, Gordon P., "Corproduction: Citizen Participation in Service Delive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0, NO. 3. (May/June, 1980), pp. 240-246)

우리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의 수요를 창조할 수 있고, 이것은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하며, 또한 많은 도시들이 고통받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제 2 절 경찰서비스의 성격과 경찰서비스 전달상의 시민참여

1. 경찰서비스의 성격

경찰서비스는 하나의 공공서비스이다. 모든 국가는 권력적 통치체제로서 일정한 정부 조직을 갖추고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부조직을 통해서 수행되는 기능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치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국민생활을 보호 원호 규제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동시에 사회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일어나는 계분제를 해결하며,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사회의 발전을 유도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과 관련한 정부의 제반활동을 행정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란 이러한 행정현상의 하나로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편익을 배분하게 되는 정부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⁵⁰⁾ 보다 간단하게 공공서비스를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⁵¹⁾ 이와 같이 본다면 정부의 활동으로서의 공공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가 있다. 경찰서비스도 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원호하며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나아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경찰서비스에 관한 많은 연구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연구의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50) William H. Lucy, Dennis Gilbert, and Guthrie S. Birkhead, "Equity in Local Service Distribu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7 (Nov./Dec. 1977), p. 687.

51) Bryan D. Jones, "Assessing the Products of Government: What gets Distributed?" *Policy Studies Journal*, Vol.9 (Summer 1981), p. 964.

우리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의 수요를 창조할 수 있고, 이것은 더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게 하며, 또한 많은 도시들이 고통받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제 2 절 경찰서비스의 성격과 경찰서비스 전달상의 시민참여

1. 경찰서비스의 성격

경찰서비스는 하나의 공공서비스이다. 모든 국가는 권력적 통치체제로서 일정한 정부 조직을 갖추고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정부조직을 통해서 수행되는 기능은 국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는 정치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국민생활을 보호 원호 규제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동시에 사회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일어나는 계분제를 해결하며, 국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사회의 발전을 유도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과 관련한 정부의 제반활동을 행정이라 할 수 있다. 공공서비스란 이러한 행정현상의 하나로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바람직한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한 사회 내에서 편익을 배분하게 되는 정부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⁵⁰⁾ 보다 간단하게 공공서비스를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⁵¹⁾ 이와 같이 본다면 정부의 활동으로서의 공공서비스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다양한 종류가 있다. 경찰서비스도 그 중 하나이다. 따라서 경찰은 국민생활을 보호하고 원호하며 규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나아가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국민의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경찰서비스에 관한 많은 연구는 공공서비스에 관한 연구의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50) William H. Lucy, Dennis Gilbert, and Guthrie S. Birkhead, "Equity in Local Service Distribu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37 (Nov./Dec. 1977), p. 687.

51) Bryan D. Jones, "Assessing the Products of Government: What gets Distributed?" *Policy Studies Journal*, Vol.9 (Summer 1981), p. 964.

경우가 많다.

흔히, 공공서비스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흔히 공공재의 성격을 띠지만, 그 외에도 요금재의 성격을 띠거나 공유자원의 성격을 띠는 것도 있다. 즉, 공공서비스에는 한 개인이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이 감소하지 않는 비경합적 소비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특정한 개인을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하기가 어려운 소위 비배제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공공재가 있는 반면에 비경합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배제가 가능한 요금재가 있으며, 동시에 소비가 경합적이지만 배제가 어려운 공유자원도 있다.

경찰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많다. 그러나 공공재의 성격을 띠더라도 그것이 갖는 공간적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다. 즉, 국방과 같이 전국적 규모의 파급효과를 갖는 것이 있는가 하면 경찰의 순찰활동이나 범인의 체포활동과 같이 파급효과가 비교적 중간 정도가 되는 서비스도 있다.⁵²⁾ 이와 같은 파급효과와 관계나 서비스의 경제적 특성은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⁵³⁾ 원래,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수사과 교통의 탄속, 소방,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직무로 하고 있다.⁵⁴⁾ 경찰관의 직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공공의 질서 유지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①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②경비·요인경호 및 내간첩작전수행, ③지안정보의 수집 작성배포, ④교통탄속 및 위해방지, ⑤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를 들 수 있다.

Myren은 전세계의 경찰기구의 활동에 관한 분석을 통해 경찰이 기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섯 가지 각기 기능을 밝히고 있다.⁵⁵⁾ 이들 기능이란 전통적인

52) 김봉건, 현대재정학, (서울:박영사, 1984), pp.72-76.

53) 김인, 강성철, 이강용, "부산시 교통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 지방과 행정연구, 제6권 1호, 1994.

54) 경찰공무원법, 제2조 1항.

55) Richard A. Myren, "The Role of the Police" in Harry W. More, Jr., *Critical Issues in Law Enforcement* (Cincinnati: The W. H. Anderson Company, 1972), p.v.

형법의 침해에 대한 규제, 현대의 편의 규범의 침해에 대한 규제, 여러 가지 봉사 기능의 수행, 반정부활동의 통제 및 진압, 군사적 침략을 철폐시킬 수 있는 경찰력의 유지 등이다. 경찰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이 경찰의 기능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범죄의 통제 기능이다. 그리고 경찰은 형사사법체계(criminal justice system)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경찰 외에도 검찰과 교정기관도 이러한 범죄통제의 기능을 맡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찰서비스는 그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호적 기능을 수행하는 서비스이고,⁵⁶⁾ 전달자의 재량권의 수준에서 본다면 재량권이 비교적 큰 서비스이며,⁵⁷⁾ 법규에 의해 규정된 강제적 필수적 서비스로서 전지역의 조정을 위한 조직이 필요한 서비스이다.⁵⁸⁾ 또한 경찰보호나 마약 단속과 같은 서비스는 사회비용서비스로서 자본축적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중요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이런 서비스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해당 주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서비스는 순찰활동과 같이 구역에 기초를 둔 서비스이기도 하며, 주민들이 경찰서나 파출소에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때문에 집에 기초를 둔 서비스로 보고 있다. 이런 측면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란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서비스 배분의 연구에서 중요하다. 끝으로, 경찰서비스는 서비스의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은 서비스이다.⁵⁹⁾

2. 경찰서비스 전달과 시민참여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경찰은 다양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경찰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범죄예방이란 특정 지역 내에서 범죄나 비행이 발생하는

56) William H. Lucy et als, op. cit., p. 689.

57) Mark S. Rosentraub and Lyke Thompson, op. cit., 991--992.

58) I. M. Barlow, *Spacial Dimensions of Urban Government* (Chichester: Research Studies press, 1981), p.81-84.

59) 김동진, 현대재정학 (서울:박영사, 1984), pp. 72-76.

것을 막기 위하여 국가 혹은 공동체가 시도하는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전통적인 범죄예방활동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갖는 범죄특성, 즉 범죄행위의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억제함으로써 범죄발생을 억제하려는 형태로 전개되어 왔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각국의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범죄의 양상도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공통의 특성이다. 따라서 오늘날 범죄 예방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정부에게만 맡겨 두지 않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⁶⁰⁾ 이것은 범죄 발생의 원인이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서구 각국에서는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전통적인 범죄예방 활동 외에도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범죄예방교육과 그리고 민간인의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⁶¹⁾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하게 되므로써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각국의 경찰서비스는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통해 각 지역에 제공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모습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 미국과 같은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중앙정부의 경찰과 지방정부의 경찰로 구분하여 경찰서비스가 전달되고 있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경찰서비스가 아직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어 경찰서비스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도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경찰내부만을 고려한다면,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그리고 파출소의 계층제 하에서 수직적인 기능상의 역할 분담에 따라 경찰서비스가 전달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경찰서와 파출소에 다양한 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Ferris는 이와 같은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공동공급(coprovision)이라 규

60) 재단법인 한국범죄방지재단의 활동, 각 지방 검찰청 산하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를 결성하여 활동, 각 시도의 자치단체 산하에 청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의 회원들을 통한 자율방범대 운영, 각 경찰서와 파출소 산하의 각종 방법위원회 등 각종 협력단체 등의 활동은 이와 같은 시민참여를 통한 방법활동의 대표적인 예이다.

61) 치안연구소 편집반, "21세기 범죄와 대응방향", 치안정책연구, 제6호, (1996), p. 23. 이 내용은 에스원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소득 1만불 시대의 한국사회 의 변화와 대응」이라는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수록하였으며, 제목은 치안연구소 편집반에서 붙인 것임.

정하고 이러한 활동으로서는 단순히 지역의 방법문제와 관련하여 자문을 해 주거나 혹은 어떤 집단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만을 지칭하지 않고 자금을 포함하는 물적 자원의 기여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돈을 치안서비스 생산과 전달과정에 기탁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의 능률성, 형평성을 진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⁶²⁾

이러한 자문위원회는 각국의 경찰서비스 조직체계와 역사적 전통에 따라 그 기능에 다소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방법위원회, 청소년자문위원회, 향장, 녹색어머니회 등 다양한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이들 조직의 구성원은 경찰서장이나 파출소장의 추천에 의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들 자문위원회의 숫자도 아주 많으며, 모든 단체들은 경찰의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다. 구성원들의 직업도 주로 중소기업대표나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의 역할도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 이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국가범죄 예방운동을 위해 국립범죄예방위원회(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NCPC)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다.⁶³⁾ 아울러 미국의 여러 도시정부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해 자문해 주는 소위 CCPB(Council of Community Policing Board)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전국방법협회연합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교통안전협회와 같은 조직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의 제도는 우리 나라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좋은 대안을 탐색하는 수단으로서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개별적이며 소극적인 시민참여 활동은 방법장비의 휴대, 이중자물쇠 등 잠금장치의 설치, 각종 전자경보장치의 설치, 자녀에 대한 방법교육의 실시, 귀가 중인 자녀의 안전을 위한 마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경찰과의 교호작용 없이 시민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이 중에서

62) James M. Ferris, "Coprovision: Citizen Time and Money Donations in Public Service Provis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4, No. 4. (1984), p. 324.

63) 이진중, "각국의 실태: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한국범죄방지재단, 범죄예방과 범죄인 교화, 1995, p. 44.

범죄예방교육은 1차범죄예방활동의 한 요소로서 학교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법을 준수하고 가족을 중시하는 인성과 도덕심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에 따라 경찰서비스의 결과로서 시민들의 범죄 피해나 지역의 범죄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시민들의 안전감을 증진시키게 된다. 이것은 결국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진작시키게 된다.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개별적이며 적극적인 시민참여 활동은 범죄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신고이다. 이러한 신고는 자신이 범죄에 피해된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들이 피해된 경우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고에는 범죄 발생 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발생 전에도 잠재적인 범죄발생, 즉 수상한 사람이 등장한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러한 신고 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동네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감시활동을 펴서 수상한 자를 신고할 수도 있다.

이러한 범죄발생의 신고 활동의 활성화 정도는 신고에 따른 결과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시민정신이나 문화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서구에서는 범죄정보 보상 프로그램(Crime Stoppers)이라는 제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실용적인 범죄통제전략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6년 이후 급속하게 출현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약 700개의 운영 프로그램이 있으며, 계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다.⁶⁴⁾

우리 나라에서도 각 지방경찰청에서 범죄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집단적이며 소극적 시민참여 활동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방범대책을 논의하여 새운다든지, 공동으로 경비원을 고용하거나 공동으로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공동주택에서 많이 이루어지지만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의 협의는 범죄가 많이 생기는 지역이면 어디서든지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면 주민들 간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경우에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64) 이진중, 전계문, p. 46.

끝으로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집단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 활동은 주민들 공동으로 펼치는 주민자율방범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이웃감시활동, 시민자율순찰대 활동 등이 있다. 이웃감시활동과 시민자율순찰대 활동은 1차범죄예방활동의 하나로서 지역사회주민 스스로 지역사회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잠재적 범죄자의 검거 확률을 높임으로써 잠재적 범죄를 억제하는 활동이다. 특히, 시민자율순찰활동은 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들의 거주지역을 계획적으로 순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찰의 순찰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오늘날 범죄방지는 국가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 범죄방지는 시민참여의 증대나 자치적 주민감시제도의 개발, 그리고 경찰과 시민단체의 공동적 치안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시민자율순찰활동은 경찰의 순찰활동과 달리 의도스러운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감시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경찰에 신고하기만 한다. 이러한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은 순찰지역의 범죄 발생을 감소시키거나 억제하는 것 외에 흔히 지역사회 주민들을 교육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범죄예방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조장하는 것과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 등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집단적인 적극적 시민참여 활동은 일정한 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공공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이들의 활동은 자신들에게만 편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거나 통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범죄의 억제와 감소, 시민들의 안전감 등의 편익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이러한 편익을 누리려고 하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언제나 적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인 소극적인 활동에 비해서도 훨씬 적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문제 중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러한 적극적인 집단적 공동생산에 시민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동시에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는 것이다.

제 3 절 자율방범활동의 공공재적인 특성과 자원봉사의 논리

1. 자율방범활동의 공공재적 특성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오늘날 각국의 범죄예방에 있어서 효과적이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은 기대하는 것 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그 지역사회의 문화나 관습, 정부의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 등에 의해서도 기인하겠지만 자율방범활동의 성격에 의해 크게 기인된다. 즉, 자율방범활동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것인데, 이러한 지역사회의 안전은 공공재적(public goods) 혹은 집합재적(collective goods)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공공서비스가 그렇듯이, 자율방범활동과 같은 공동생산의 편익은 일반적으로 그 활동으로부터 편익을 받는 동네 주민 모두가 누리게 되는 집합재의 성격을 띤다.⁶⁵⁾ 물론, 공공서비스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성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울타리가 없는 공원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해수욕장에 입장료를 물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게 되면 이들 재화는 공공재에서 요금재의 성격으로 바뀌게 되며, 쓰레기 수거의 경우에도 봉투를 사용하여 버리게 하면 쓰레기 수거서비스는 사적서비스나 혹은 요금재의 성격을 갖게 된다.⁶⁶⁾ 그러나 국방, 교육, 치안, 화재 등 많은 다양한 서비스들은 일단의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집합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집합적 재화는 개인들이 그 생산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그들에게 그 재화의 사용을 하지 못하게 배제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집단에 의해 합동으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이다. 가로등, 경찰의 치안서비스, 소방서비스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어떤 구역의 동네 주민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집합적 재화이다.⁶⁷⁾ 집합적 재화는 어떤 구역에 제공된다면 그 구역에 살거나 드나드는 사람

65) J. M. Buchanan (1968), *The Demand and Supply of Public Goods*. Skokie, IL: Rand McNally.

66) E. S. Savas, *Privatization: The Key to Better Government*, (Chatham, New Jersey: Chatham House Publishers, Inc., 1987), p. 44.

모두에게 그들이 그 서비스의 공급에 기여했거나 않거나 관계없이 그 편익이 이용가능하다.

2. 자율방법활동과 자원봉사의 논리

자율방법활동과 같은 집합적 재화의 이런 성격은 자원봉사활동 그 자체를 어렵게 한다. 특히, 대규모 집단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어떤 집합재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는 극히 불확실하게 된다. 따라서 자율방법활동을 작은 동네 단위로 하지 않고 그 규모를 크게 하면 그만큼 자율방법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오기 어렵다. 대규모 집단의 개별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기여에 따른 적절한 보상으로서의 편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집단을 위한 집합재의 생산 공급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⁶⁵⁾

이것은 개별 기여자들은 대규모 집단이 공동으로 향유하는 집합재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기여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게 하지도 못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재화의 공급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크게 주목받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집단에 있어서는 개인의 기여는 비교적 쉽게 그 기여가 나타나게 되며, 동시에 개인의 노력도 쉽게 눈에 띈다. 또한 다른 구성원의 노력으로 생산되는 집합재의 편익을 그 생산에 기여하지 않은 개인들이 향유하지 못하도록 배제할 수 없고, 그들 자신의 기여를 통해서 재화의 충분한 공급이나 혹은 좋은 재화의 공급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은 잠재적 기여를 보류함으로써 그들의 비용을 극소화시키려고 할 것이다.⁶⁶⁾ 예를 든다면, 거리에 휴지나 담배 껍초 등 갖가지의 쓰레기가 버려져 있을 경우 개인 혼자 노력으로 거리를 매일 청소할 수도 없고, 자기가 청소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67) B. Ellickson (1971), "A Generalization of the Pure Theory of Public Good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3 (June) pp. 417-432.

68) M. Olson J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New York: Schocken Books, 1965).

69) N. J. Frohlich, A. Oppenheimer, and O. Young, *Political Leadership and Collective Good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함께 하게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청소했다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청소한 거리를 지나가지 못하게 할 수도 없다. 이런 경우 개인은 청소하지 않고 그냥 지냄으로써 불필요한 노력을 들이려고 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 그 지역사회나 혹은 동네로서의 대규모 집단은 이들의 노력을 조직화할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각종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여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공공재의 공급에 있어서 무임승차자(free rider) 문제를 야기한다. 무임승차자란 집합재의 공급에 대한 자신들의 기여 없이 집합재의 편익을 향유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대규모 집단에 집합재를 공급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은 비록 그 집단의 모든 구성원이 그 재화를 바라는 경우에도 집단구성원들은 자신의 부담을 극소화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서 무임승차자 전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만약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적절한 기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면, 그들 공동의 집합적 노력을 통해서 그들이 바라는 재화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게 되며, 그렇게 되면 그들 자신의 기여를 무용물로 만들게 되는 위험부담을 증대로 안으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⁷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어떤 집합재를 한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경우 이런 무임승차의 논리와 이에 따른 개인의 반응과 같은 논리가 그대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그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은 커다란 실패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비용의 극소화와 편익의 극대화라는 개인들의 입장에서의 합리성은 결코 집합적인 이익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집단 집합적 비합리성을 가져올 수 있다.⁷¹⁾ 이것은 죄수의 딜레마이론과 같은 것이다.⁷²⁾

만약 우리가 커뮤니티의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에 관한 분석에서 행태에

70) A. Oberschall, *Social Conflict and Social Movement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73).

71) G.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 162, (1968), pp. 1243-1248.

72) Anatol Rapoport and Albert M. Chammah, *Prisoner's Dilemma*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5).

²William N. Dunn, *Public Policy Analysis: An Introdu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1), pp. 104-105.

관한 경제모형(economic model)을 적용한다면, 자원봉사활동은 시민들이 처한 환경에서 그들이 갖게 되는 기회에 대한 일종의 계산된 반응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분석의 편의상 사람들이 대안적인 활동의 기대되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고 최대의 순편익을 가져다 주는 대안을 선택하리라고 기대되는 한 우리는 그들의 행위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를 얻는 데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상대적인 비용과 편익에 대해 잘못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에 따라 행동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비록 조잡하지만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며, 그들이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에 대한 회수를 극대화시키려고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자원봉사활동에 적용하는 데에는 복잡한 측면이 있다. 경제학에서 합리성이란 개인이 자신의 물질적 복지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자기 이익 중심적인 개인들의 행태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다. 대부분의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자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편익을 가져다 준다. 만약에 합리성을 물질적 편익이라는 좁은 관점에서만 정의한다면, 자원봉사활동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편익을 좁게 보지 않고 비물질적인 것까지 포함시킨다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이타적인 행위에서도 합리적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⁷³⁾

첫째,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는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로부터 다양한 개인적인 편익을 얻게 된다.⁷⁴⁾ 이런 경우, 사람들은 자원봉사활동

두 명의 형사피고인이 서로 격리된 방에 갇혀서 심문을 받는 경우,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결정 결과 불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 드는 각 피고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자백이며, 이에 따라 각각 5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이 예는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게 되는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개개인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정도 집단이나 정부관료제, 기타 사회 속에서는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73) Rich, Richard C., "Interaction of the Voluntary and Governmental Sectors;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Coproduction of Municipal Services", *Administration & Society*, Vol. 13, No.1 (1981), p. 64.

74) D. H. Smith and R. D. Reddy, "The Impact of Voluntary Action upon the Volunteer," in D. H. Smith (ed.) *Voluntary Action Research*, (Lexington, Ma.:D. C. Heath, 1973)

동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상대적 비용과 편익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편익을 극대화시켜주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은 대안적 활동에 대한 자신의 비용과 다른 사람들이 결과로서 얻게 될 것 같은 편익을 비교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봉사활동으로부터 받게 되는 보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편익을 줌으로서 얻게되는 기쁨이나 혹은 만족감이라면, 이런 자원봉사활동이 효과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편익을 얻게 될 때 그들은 자원봉사의 보람이라는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원봉사활동의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적으로 분리 가능한 두 가지 논리적 과정을 설정할 수 있다. 하나는 시민들이 대안적인 자원봉사활동이나 혹은 공동생산적인 활동을 통해 동네를 위해서 어떤 편익을 창출해 낼 것인가를 묻는 것이며, 두번째 논리적 과정에서는 시민들이 잠재적 자원봉사활동이나 공동생산의 노력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에게 생기는 상대적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친교, 자기존중(self-esteem) 혹은 봉사활동과 관련한 다른 포착하기 어려운 편익 때문에 커뮤니티를 개선하는 데 비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이라 하더라도 이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순편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들은 공동생산적 노력이 변화를 초래하는 데 효과적이고, 공동생산활동이 부과하는 비용을 능가하는 편익을 산출한다는 의미에서 능률적이기만 하다면 지역사회나 혹은 어떤 대상집단, 예를 든다면 노인들, 장애인, 혹은 실업자 등에 생기는 편익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은 물질적이든 혹은 심리적이든 어떤 편익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원봉사자들은 능동성과 수동성 사이에 혹은 효과성에 대한 비용의 지각된 비율에 기반을 두고 대안적인 행동 노선들 사이에서 선택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나 남들에게 최대의 결과를 가져다 줄 프로그램에 자신들의 노력을 투자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든다면, 커뮤니티내에서 청소년비행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세 개의 선택안에 직면할 수 있다. 즉, 첫째,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 둘째, 구역의 청년들을 선도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셋째, 시가 지원하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다. 만약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고, 각 행동 대안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요구하게 된다면, 어떠한 종류의 봉사활동에 대한 유인도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시민이 자기의 노력을 가치있게 만들 수 있는 행동노선이 있다면, 그는 봉사활동을 할 유인을 갖게 되는 것이다. 봉사활동의 여러 대안 사이의 선택은 이와 똑같은 추론에 근거를 두게 된다.⁷⁵⁾

이런 논의는 자원봉사자들이 이기적이라거나 개인적 이득의 기회가 보여야만 자원봉사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의 경우 자원봉사는 천교에 대한 열망이나 남에게 봉사할 필요를 느끼는 것과 같은 감정적 요인에 의해 동기유발 될 수도 있다. 여기서 사용된 논거는 자원봉사활동이 수단적 활동으로서 유용하게 분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들의 환경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요인을 밝힐 수 있으며, 사람들이 자원봉사하게 되는 유인에 대한 공공정책의 가능한 효과도 밝힐 수 있다. 만약 심리적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사이의 선택, 자원봉사활동의 다양한 형태 사이의 선택은 일의 결과로서 어떤 바람직한 상태를 초래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기여가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달려 있다. 즉, 자율방범활동을 하므로써 범죄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들의 자율방범활동이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그들은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자율방범 활동을 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커뮤니티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각된 효능감과 그리고 이런 노력의 능률성에 대해 정부의 정책과 정부기관의 구조가 어떤 영향력을 갖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게 된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이러한 이론은 집단구성원들이 공동의 일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것의 기대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개인적인 계산에 기반을

75) Richard C. Rich, *op. cit.*, pp. 67-68.,

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위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핵심적 질문은 어떻게 이런 개인적인 계산이 자원봉사의 참여를 가져오게 하는가의 문제이다. 개인적 가치는 자원봉사활동하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을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정부와 자원봉사부문의 공유영역을 이해하는 데 가장 유용한 것은 개인의 비용/편익 계산에 대한 정부 구조의 영향이다.⁷⁶⁾

동네 주민들은 자신들의 노력을 잘 조정만 하게 되면 그들 자신의 지역사회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개선시켜서 이득을 볼만한 것이 많이 있다. 그들은 보다 좋은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으며, 범죄율과 화재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물리적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로 그들 자신의 활동을 통해 그들 동네에서 이용 가능한 생활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⁷⁷⁾ 그러나 이런 노력은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내에서 보다 나은 상황을 확보하려는 각 시민들의 노력의 효과성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제공해 주는 다른 시민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충분한 기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아무런 제도적 메카니즘이 없는 경우에, 시민들은 자신들의 기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유사한 노력의 결핍 때문에 낭비되어질 수 있다고 두려워 하기 때문에 비활동적으로 남게 된다. 구역의 클럽과 같은 협회가 노력을 시작하고 조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경우에도 시민들은 주민들의 결합된 자원들이 분계의 기대성 때문에 혹은 구역 주민들의 제한된 자원 때문에 지역사회의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데 부적절할 것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남게 될 수도 있다.⁷⁸⁾

만약, 주민들이 쓰레기로 꽂 차있고 쥐가 득실거리는 빈터를 함께 깨끗이 청소

76) Richard C. Rich, op. cit. p. 68.

77) M. A. Crenson, (1978), "Social Networks and Political Processes in Urban Neighborhood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22 (August 1978), pp. 578-594.

78) T.D. J. O'Brien, *Neighborhood Organization and Interest-Group Process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5.

² Richard C. Rich,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to the Study of Neighborhood Organiz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4(November 1989), pp. 559-592.

를 한다면,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청소를 하는 데 기여를 했든 않든 관계 없이 그 결과로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향유하게 된다. 공동생산으로부터 생기는 편익의 이런 집합적 양상은 자발적으로 조직된 공동생산 활동이 일반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만연되어 있는 똑같은 무임승차의 문제를 극복해야 만 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시민들은 자원봉사활동의 편익이 비용을 능가하도록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만들 만큼 충분하게 다른 사람들이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공동생산의 잠재적 의의를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달 절차를 조직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이런 확신감 형성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것은 시민 활동의 조정을 위한 준거틀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서비스 전달 담당자들이 시민들을 지원한다고 언약함으로써 시민들로 하여금 공동생산적 노력이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도록 격려하게 될 것이다. 공동생산의 노력을 조직화하고자 하는 주민조직(community association)이 지방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과 지원을 받게 되고, 서비스 담당자들이 시민들이 주도하는 활동에 부응할 수 있는 행정적 재량을 갖고 있는 소위 '동네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전달체제(neighborhood - based service delivery)'의 형태를 통해서 공동생산은 가장 촉진된다.⁷⁹⁾ 재정적으로 압박받는 지방정부는 바람직한 동네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에서 구조적 개혁을 통한 정책실험을 할 강한 유인을 틀림 없이 갖게 될 것이다.

제 4 절 경찰서비스 전달상의 시민참여의 영향 요인과 결과

1. 시민참여의 영향요인

오늘날 범죄발생은 날로 늘어 가고 범죄의 양상도 계속 심각해져 가고 있어 그 만큼 범죄 예방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부가 범죄 예방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79) Richard C. Rich, "Interaction of The Voluntary and Governmental Sectors: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Coproduction of Municipal Services", *Administration & Society*, Vol.13 No.1 (May 1981), p. 69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주택가의 주민들은 범죄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42.8%인데 비해서,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은 50.2%, 상가 및 유흥가 지역 주민들의 경우는 27.8%, 그리고 공장지대의 주민들은 50%가 별로 범죄가 생기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역의 거주지 특성에 따라 범죄발생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아파트나 공장지대는 범죄발생이 일반주택가보다 적게 발생하며, 일반주택가는 상가나 유흥가보다도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주지 특성에 따른 범죄발생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해 볼 때, 유흥가지역이나 상가지역에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경찰의 순찰활동이나 자율방법활동이 이러한 객관적인 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주지 특성 요인을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발생 정도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특히, 소득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다음 <표 30>은 주민들의 소득수준별 동네의 범죄발생 정도를 분석한 것이다.

<표 30> 소득수준별 동네의 범죄발생정도

| 내 용 | 전혀 발생 하지 않았다 | 별로 발생 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약간 많이 발생했다 | 아주 많이 발생했다 | 계 |
|------------------------|-----------------|-----------------|-----------|---------------|---------------|------------|
| 70만원 이하 | 11(11.2) | 32(32.7) | 24(24.5) | 27(27.6) | 4(4.1) | 98(10.0) |
| 7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30(6.7) | 181(40.3) | 134(29.8) | 96(21.4) | 8(1.8) | 449(45.7) |
| 15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 23(7.4) | 95(30.4) | 102(32.7) | 72(23.1) | 20(6.4) | 312(31.8) |
|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4(5.8) | 28(40.6) | 20(29.0) | 12(17.1) | 5(7.2) | 69(7.0) |
| 300만원 이상 | 9(16.7) | 20(37.0) | 15(27.8) | 8(14.8) | 2(3.7) | 54(5.5) |
| 계 | 77(7.8) | 356(36.3) | 295(30.0) | 215(21.9) | 39(4.0) | 982(100.0) |

$\chi^2 = 31.06486$ D.F. = 16 Sign. = .0132

하고 있으나 범죄예방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기 자신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활동을 펴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다양한 성격을 띠고 있어 그 효과가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도 있고 적어도 한 동네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방법활동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방법활동에도 차이가 나며, 동시에 그 효과도 다르게 된다. 따라서 우리가 경찰서비스 전달상의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의 영향 요인과 그 결과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시민참여의 개인적이고 소극적인 형태로서는 앞에서 논의한 바 처럼 시민들의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잠금장치, 방법등, 경보장치, 비상벨 등을 설치하는 것, 가스총이나 방범봉과 같은 방범장비를 소지하는 것, 자녀에 대한 방법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 그리고 귀가자녀의 안전을 위해 마중 나가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개인의 주택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도시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히 방법등이나 경보장치, 그리고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사실, 사회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만큼 중요한 변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이와 같은 방법기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을 것이다. 아울러 범죄의 피해경험과 그 지역의 범죄 발생 정도도 이러한 방법기기의 설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방법장비의 소지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방법장비의 소지는 연령이나 성별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동시에 직업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범죄의 피해경험, 동네의 범죄발생정도, 사회경제적 특성 등은 자녀에 대한 방법예방교육과 귀가하는 자녀의 마중과 같은 개인적 소극적인 방법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범죄가 전혀 생기지 않는다면 방법교육이나 자녀의 마중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지역에 산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활동에는 차이가 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녀의 수나 연령 등 가족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수상한자에 대한 신고와 범죄피해에 따른 즉각적인 신고는 개인적으로 이루어 지지만, 경찰과의 교호작용이 있으며, 신고활동의 효과가 언제나 있는 것도 아니

며, 동시에 신고한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러한 신고활동은 경우에 따라 신고자에게 협박이나 보복 등의 불이익도 따르게 된다. 따라서 신고 활동을 하는 개인이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비용과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신고가 범죄검거에 효과적이며, 이것은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와서 결국 시민 전체의 안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신고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반면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범인검거에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경찰이 신고를 유용한 정보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혹은 신고에 따른 신분노출의 위험이 있어 개인의 안전에 위협이 발생하게 된다면 시민들은 결코 신고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⁸⁰⁾ 또한 신고의 편익은 간접적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도 신고에 따른 직접적인 보상제도의 실시를 통해서 신고활동의 유인을 마련하고 있다.

끝으로, 이러한 신고활동은 그 사회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 즉, 범죄의 발생은 그 중요성에 관계 없이 신고를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으면, 시민들은 범죄 피해이나 수상한 자의 목격에 따라 곧바로 신고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신고 문화는 나라에 따라 다르며, 뉴질랜드나 호주와 같은 나라는 특히 신고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범죄예방을 위한 이웃간의 대책협의와 주민공동으로 경비원을 고용하는 등 집단적이며 소극적인 방범활동은 편익이 집단에게 공동으로 나타나는 특성을 갖고 있으나 경찰과의 교호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느냐 아니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느냐와 같은 거주형태와 같은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서로 잘 아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경비원 고용은 공동으로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참여자가 확정되며, 편익도 비교적 분명하게 공유한다. 그러나 방범을 위한 이웃

80) 1996년 10월 11일자 동아일보의 사회면을 통해 '경찰의 뺑소니조작의혹'을 제기한 목격자가 정체불명의 협박전화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크게 보도된 바 있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신고전화를 하고 난 후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범죄신고와 제보를 꺼리게 된다.

간의 대책협의 등은 협의에 참여하거나 하지 않은 편익을 공유할 수 있으며, 동시에 참여에 따른 시간의 손실과 같은 비용과 그리고 참여를 통해 별로 기여할 수 없다는 효과성에 대한 인식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범죄발생 정도일 것이다.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떤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살인사건이나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가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지역의 방법활동을 위해서는 경찰은 물론 주민들도 대책협의를 하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주거 형태와 사회경제적 특성, 범죄발생정도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적극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찰서비스의 공동생산은 주민자율방법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시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의 안전 증진을 위한 시민들의 방법활동이기 때문에 일종의 자조활동(self-help)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네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참여하지 않는 가구에서는 대신에 참여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불하도록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주민자율방법활동은 분명히 자조활동의 성격만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참여하지 않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경비를 지불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면 그 동네에서 보면 주민자율방법활동은 분명히 자원봉사활동(voluntary activity)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율방법활동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자율방법활동은 비용은 참여자인 자율방법대원들이 부담하게 되며, 반면에 편익은 자신에게만 돌아오기 보다는 지역 주민전체에게 돌아가는 집합재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자율방법활동은 참여자들이 그 활동에 대한 비용과 효과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즉, 주민들이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범죄피해이나 그 지역의 범죄발생을 줄일 수 있거나 혹은 지역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감을 느끼고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주민들이 주민자율방법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참여하는 사람들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편익을 공동으로 향유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무임

승차자로 남으려고 하는 성향도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편익과 그들이 얻게되는 다양한 편익에 따라 이들의 활동도 달라 질 것이다. 즉,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그들은 주민이나 시민 상호 간의 친목 도모, 경찰과의 좋은 관계 유지, 사회적 인정감, 혹은 자기실현 등의 가치를 얻고자 하는 경우 그들이 참여함으로써 실제 이러한 가치를 얻게 된다면 이들의 활동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동기유발요인들은 개인의 자율방법활동에 참여여부나 정도를 결정하는 영향요인 혹은 원인 변수가 된다.⁸¹⁾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주민자율방법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시민들이 주민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며,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주민자율방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긴요한 과제이다. 아울러 주민자율방법활동이 과연 효과가 있는가를 규명하고 효과가 있다면 시민들에게 자율방법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려는 경찰의 홍보활동도 중요할 것이다. 물론 효과성이 없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도 규명해야 할 것이며, 그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 시민참여가 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인 공동생산은 서비스의 객관적 수준으로서의 투입, 활동, 산출, 결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주관적인 서비스 수준인 시민들의 안전감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⁸²⁾ 앞에서도 언급한 바처럼 개인적으로 방법시설이나

81) 개인의 사회적 행위를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지만 개인의 의식적 동기와 의향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비록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가치가 행위보다 나중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행동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목적원인론적 설명(teleological explanation)이라 한다. 강신택, 사회과학의 연구의 논리:정치학 행정학을 중심으로, (서울: 박영사, 1995), p. 173.

상비를 강화하거나 혹은 방범견을 기르는 것, 방범교육을 강화하는 것, 자녀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마중 등의 개인적 소극적 공동생산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개인의 주거형태 등과 결합하여 시민들의 범죄피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 아울러 범죄로부터의 안전감과 나아가서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⁸²⁾ 아파트지역이나 연립주택의 주민들이 수위나 공동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은 경찰의 순찰활동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곧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주택가의 경우나 아파트지역에서 동네의 치안문제와 관련한 대책협의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공동의 노력은 그 지역의 범죄 발생이나 범죄의 피해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주민들의 범죄로부터 안전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범죄피해 및 범죄 발생의 신고, 수상한자의 신고 등은 경찰이 범죄 단서를 포착하거나 혐의자의 신변을 확보하는 등 사건의 초동수사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므로 경찰의 범인 체포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범죄신고 활동은 범인들에게 체포의 위협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여 잠재적인 범법자의 범죄행위 억제 효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많은 강력범죄 수사과정에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제보가 범인 체포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공동생산인 주민자율방범활동은 범죄발생, 주민들의 범죄피해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주민들의 안전감과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자율방범활동이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오래 전에 신문에 보도된 바 있듯이 읍지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기동순찰대를 조직하여 청소년선도와 방범활동을 위해 매일 밤에 특정 노선에 따라 순찰한 결과 각종 범죄나 청소년 탈선행위가 크

82) Mark S. Rosentraub and Karen S. Harlow, "Public/ Private Relations and Service Delivery: The Coproduction of Personal Safety", *Policy Studies Journal*, Vol.11, No.3 (March 1983), pp. 445-457.

83) 김원 (역), 도시관리론, (서울:법문사,1983), p. 45. Robert W. Poole, Jr. *Cutting Back City Hall*, (New York: Universe Books, 1981).

게 줄어들었다고 한다.⁸⁴⁾ 이와 같은 공동생산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수준, 특히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관계는 언제나 선형의 관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즉,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관련하여 중간층이 다른 계층보다 공동생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소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공동생산은 서비스의 객관적 수준에 영향을 미쳐 서비스 배분의 형평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⁸⁵⁾

이러한 시민참여가 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공동생산인 시민참여 요인 외에도 서비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들 변수들은 혼란변수이나 허위변수로 작용하여 공동생산과 서비스 결과 사이의 관계를 과다하게 나타내거나 혹은 과소하게 나타내게 된다.⁸⁶⁾ 따라서 이러한 변수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들 변수들을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수들 중에서 특히, 개인의 서비스 경험과 정치적 태도는 주민들의 경찰서비스 만족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⁸⁷⁾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경찰과의 공무원의 접촉, 예를 들면 불심검문이나 과출소로의 연행 경험 등은 서비스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변수의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 언제나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Brown과 Coulter의 연구에서 경찰과의 접촉경험은 경찰서비스의 만족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⁸⁸⁾ 이와는 달리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정부에 대한 태도

84) 경북 월성군 건천읍에서 1984년 2월에 주민 16명이 기동순찰대를 조직하여 1개 조 3명씩 몇 개의 조를 편성하여 밤 10시부터 순찰을 하였다고 한다. 김인, 공공서비스 배분의 결정요인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p.36.

85) Mark S. Rosentraub and Elane B. Sharp, "Consumers as Producers of Social Services : Coproduction and the Level of Social Services", *Midwest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Vol.14 (June,1980), pp. 105-118.

86) 노화준, 정책평가론, (서울:법문사, 1991), pp. 185-187.

87) Elinor Ostrom, Rodger B. Parks, Stephen L. Percy and Gordon P. Whitaker, "Evaluating Police Organization", *Public Productivity Review*, (Spring 1979), p. 4.

88) Karin Brown and Philip B. Coulter,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of Police Service Delive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3, (Jan./Feb. 1983), p. 54.

변수는 많은 연구에서 경찰서비스의 만족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분석되고 있다.⁸⁹⁾ 시정부가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성이 높다고 믿고, 아울러 시정부의 활동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치적 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보는데, 이 때 정치적 효능감은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⁹⁰⁾ 그러나 다른 서비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이러한 태도가 서비스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⁹¹⁾

89) Mark S. Rosentraub and Lyke Thompson, "The Use of Surveys of Satisfaction for Evaluations", *Policy Studies Journal*, Vol.9 (Summer 1981), pp. 990 - 998.

90) R. Fitzgerald and Robert T. Durant, "Citizen Evaluations and Urban Management: Service Delivery in an Era of Protes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40(Nov./Dec. 1980), pp. 584 - 594.

91) Mark S. Rosentraub and Lyke Thompson, "Bureaucratic Discretion and Surveys of Citizen Satisfaction", in Richard C. Rich, (ed.) *Analyzing Urban Service Distributions*, (Lexington:D.C. Heath and Company, 1982), p.180.

제 3 장 각국의 주민자율방범제도

제 1 절 미국의 주민자율방범활동

1. 미국사회와 자율방범활동

미국은 서구의 산업화된 여러 국가에 비해 심각한 범죄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범죄발생의 문제는 대도시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여 대도시에서는 거리에서도 범죄피해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결코 안전하지 않다.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범죄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범죄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다양한 방범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 중 많은 것은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예방활동은 국가범죄예방위원회(National Crime Prevention Council: NCPC)의 등장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다. NCPC에 의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범시민적인 범죄예방활동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연방정부와 법무성은 NCPC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⁹²⁾ 이와 같이 시민들의 범죄예방활동에의 참여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최근 LA를 위시한 대도시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란 개념을 통해서 경찰과 시민의 동반관계를 형성하므로써 범죄라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서비스 전달에 시민참여의 문제는 이러한 개념에 대한 고찰과 함께 여러 가지 자율방범활동의 제도와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92) 이진중, “범죄예방과 민간인 참여: 제2절 각국의 실태”, (재)한국범죄방지재단, 범죄 예방과 범죄인 교화, 1995, p.44.

2.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과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안전을 증진시키고 자신들의 동네에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함에 따라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위한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경찰국장, 경찰서장, 그리고 다른 경찰간부들은 정향, 조직,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그들이 봉사하고 있는 지역사회에 편익을 줄 수 있게 될 것인가를 평가하고 있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다양한 철학적 그리고 실천적 접근방법을 포괄하고 있으며,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다.⁹³⁾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전략은 관련 지역의 수요와 반응에 따라 다르게 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과 고려 요인들은 모든 지역사회경찰활동에 공통적인 것이 된다.

지역사회경찰활동협회가 내린 정의에 의하면,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지역사회 동맹관계와 문제해결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범시행을 맡고 있는 리더들이 그들의 조직의 정책과 관행을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 이유들은 지난 25년 간의 경찰활동과 경찰조사의 역사와, 지역의 성격에서의 변화,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와 폭력의 특징에서의 변화 등이다. 과거에 맞던 경찰활동의 전략은 더 이상 오늘날 효과적이지는 않다. 과거의 경찰활동의 전략을 통해서 증진된 안전감, 안전, 그리고 복지등의 요구되는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여러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의 급박한 필요가 있다는 데 실무자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미국에서의 범죄수준과 성격 그리고 미국 사회의

93) 최근 미국의 로스앤젤레스(LA)시에서는 「지역사회경찰자문위원회」(Community-Police Advisory Board : C-PAB) 연차 총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1996년에 개최된 2차 총회에서 미국 법무성의 사정지원국(Bureau of Justice Assistance)이 재정지원하여 지역사회경찰협회(Community Policing Consortium)에 의해 준비된 연구보고서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해(Understanding Community Policing)」가 소개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의의와 핵심적인 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함께 세미나에서 토론하고 있다. Bureau of Justice Assistance, *Understanding Community Policing: A Framework for Action*, (August 1994), NCJ 148457, Monograph p. 1-2.

변화하는 성격은 경찰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많은 도시에서는 불법약물, 갱의 폭력, 살인, 강도, 폭력 등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역사회경찰활동에서 찾으려고 한다.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이란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지역사회와 경찰의 공동의 노력(collaboration)이다. 경찰은 더 이상 법과 질서의 유일한 수호자가 아니다.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동네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활동적인 하나의 결사체가 되었다. 이것은 광범위한 합의를 갖고 있다. 범죄 통제와 예방에 대해 넓게 보는 견해, 문제해결과정에 있어서 커뮤니티 구성원을 보다 활발한 참여자로 만드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강조, 커뮤니티 경찰활동에 있어서 순찰경찰관의 중추적 역할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조직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지역사회 구성원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찰조직에 의해 지원되는 동네순찰경찰관이 커다란 도움을 준다. 커뮤니티 구성원은 그들의 관심사를 얘기하고 조언을 해주며, 그들의 관심사를 전달하기 위해 행동을 취하게 된다. 건설적인 동반관계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창의성, 이해, 그리고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⁹⁴⁾

만약 우리가 범죄를 억제하고 보다 활력있는 동네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커뮤니티를 소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커뮤니티에서 의미있는 동반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냉담과 불신의 장벽을 해소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나, 신뢰는 커뮤니티의 경찰과 시민의 동반관계를 구성하고 분쇄해결을 하는 데 있어 기본을 이루는 가치이다. 신뢰는 경찰이 커뮤니티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기초가 될 것이며, 나아가 좋은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경찰과 시민 사이의 신뢰 없이는 효과적인 경찰활동이란 불가능하다.

성공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 전략의 토대는 경찰과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밀접하고 상호 호혜적인 연계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두 가지 보완적인 핵심적

94) *ibid.*, p. vii.

요소 즉, 지역사회와의 동반자 관계(community partnership)와 문제해결이다. 지역사회와의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찰은 지역사회와 적극적인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며, 범죄통제와 예방을 보다 잘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를 포함시켜야 하며, 커뮤니티의 구성원의 가장 시급한 관심사를 해결하는 데 지역사회의 지원과 경찰의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문제해결은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관심사가 발견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발전되는 과정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은 경찰이 더 이상 권위가 없다거나 법과 질서의 유지라는 가장 중요한 의무가 좌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경찰에게 상당한 짐을 덜어주게 된 것이다. 지방정부, 학교, 사회기관, 교회집단, 사업가 등 커뮤니티 내에 살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발전할 책임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의 목표는 동네 내의 문제의 특징을 주의깊게 검토함으로써 그리고 적절한 문제 해결책을 적용함으로써 범죄와 무질서를 줄이는 것이다. 순찰경찰에 책임을 지울 지역사회는 작아야 하며, 잘 정의된 지리적 구역이어야 한다. 효과적인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순찰경찰과 지역사회 구성원 사이의 적극적인 접촉을 최적화시키는 것에 달려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중요성은 LA 외에도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도 역시 강조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New York의 지역사회경찰활동이다. 1990년 이후 New York시의 Brown경찰서장은 경찰 혼자 범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경찰은 시민들과 함께 일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모든 시의 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지역사회경찰활동을 적극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만성적인 범죄를 각 동네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제도는 동네 주민들에 의한 신뢰와 협동을 가져오게 하고 개별 경찰관의 직무만족을 증진시키는 부가적인 이득을 가져오게 된다고 했다.

New York시에서는 1명 이상의 경찰관이 각 동네에 배치되어 주민들의 범죄에

방과 질서유지,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911시스템은 지역사회경찰활동과 통합되어 있어서 구급요청이 아닌 전화(non-emergency calls)는 그들이 배치된 동네의 사람들, 문제, 그리고 이슈들을 잘 아는 그 지역 사회의 공무원이 다루게 된다. 이제 New York시에서는 시민들과 경찰관들이 지역사회경찰활동에 있어서 동반자가 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 시전역이나 폭넓은 기반에서 문제를 다룰 타당한 이유가 없다면 경찰은 작은 관할구역 수준으로 분권화되게 된다. 경찰관들은 동네 주민들, 상인들이나 청년들을 알고 지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 결과 1991년에 New York주의 다른 도시들과 미국의 대부분의 다른 주의 도시들에서는 범죄가 증가하였지만 New York시에서 모든 범죄자수가 36년만에 처음으로 감소되었다.

3. 구역감시와 이웃감시 프로그램

미국의 도시 내에서 감시활동(watch)을 통해서 자율방법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에도 다양한 이름이 붙여지고 있으며, 이들에는 약간의 성격 상의 차이가 있다. 가장 보편적인 형태를 띠는 시민들의 자율방법활동은 구역감시(Block Watch)와 지역사회감시(Community Watch)이다. 전자는 구역을 중심으로 하는데 비해서 후자는 지역사회전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활동양상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구역감시는 흔히 이웃감시(Neighborhood Watch)로 불리기도 한다. 이런 자율방법활동은 지역주민들에게 범죄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들의 활동을 조직화 하여 개인의 안전은 물론 동네의 안전을 기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이웃에 대해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것이 범죄예방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동네 주민들이 서로 잘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이상한 사건이나 사람들의 출현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다. 이웃감시활동은 주로 감시(watch or surveillance)활동에 의존하며, 이들의 감시는 일정한 운영규칙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구역감시방법조직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주민이나 차량에 대한 식별력을 활용하여 방법활동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감시(Community Watch)방법조직과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구역감시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집을 떠나지 않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감시와 다르다. 주민은 의심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경찰의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그들의 집을 떠나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구역감시방법조직은 프로그램을 감독하고 주민과 경찰의 교량 역할을 담당할 조정책임자를 선임한다. 구역은 통상 거리, 도로, 지역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보통이며, 지역사회는 몇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이들 각 구역마다 구역장이 선출되는 데, 그는 이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모집하고 정보를 전달하고 주민들을 관리하고 조정책임자와의 연락을 담당하며, 구역지도를 개발하고 배부하는 일을 맡고 있다. 구역감시방법조직은 범죄행위나 그러한 혐의가 있는 사람 혹은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경찰에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구역장에게 신고한다. 신속하게 연락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⁹⁵⁾

구역감시활동은 통상적으로 20-30가구가 참여하는 정도의 작은 규모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조직구성원 전체가 모이는 모임을 갖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참여자들을 모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규적인 모임과 회보 발간이다. 자율방법활동의 하나로서 구역감시프로그램이 갖는 장점은 프로그램의 방법이 간단하며,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사정에 맞추어서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시민들 상호간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시간과 재정적인 지출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커다란 장점이다.⁹⁶⁾

이러한 이웃감시의 구체적인 사례 중의 하나로서 들 수 있는 것은 Missouri 주의 St. Peters시의 Neighborhood Watch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에게

95) 오부근, “공동생산과 주민의 행정의식”, 한국행정학보, 제29권 제3호, 1995, p. 665.

96) 이진중, 전계서, p. 44-45.

자신들의 동네에서 수상한자의 행위를 목격하게 되면 경찰에 적절히 신고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자신들의 집에 도둑이 잘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웃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훈련과 그리고 여러 가지 토픽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함께 만나고 있다.⁹⁷⁾

4. 지역사회감시(Community Watch)프로그램과 수호천사제도(Guardian Angels)

New Castle County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사회감시프로그램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된다. 지역의 치안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방법 활동에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다. 지역사회감시프로그램은 평소 잘 아는 주민이나 차량에 대한 주민들의 식별력을 방법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시민이 자신들의 거주지역을 계획적으로 순찰함으로써 경찰의 순찰을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감시기능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역사회감시단은 제2의 경찰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찰의 눈과 귀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들은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사건에도 개입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받는다. 따라서 이들은 순찰 중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더라도 어떤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이들을 체포하거나 연행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들은 감시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며, 만약 의심스러운 행위자를 목격하면 경찰에 알리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그들은 순찰 중 무기의 휴대는 절대 금지된다.

이 제도의 운영을 위해 조정자(coordinator)와 스케줄위원회(schedule committee)의 위원이 회원 중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된다. 조정자는 경찰로부터 적절한

97) Missouri주의 ST. Peters 경찰서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이웃감시(Neighborhood Watch) 외에 상가감시(Business Watch), 지역사회경찰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여기서 상가감시는 범죄예방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 회의 상가를 지원해주기 위해 긴분화된 활발한 훈련과 범죄위험관리활동을 결합한 것이다. 잠재적인 범법자를 의기소침하게 하기 위해 현지 안전감시와 특수 신호체계가 결합되어 사용된다. (St. Peters Police Department, 1020 Kimberly, St. Peters, MO 63376) 출처: 웹사이트(<http://www.win.org/city/pubsaf/gen-pubs.htm>)

정보를 받아서 주민에게 배포하는 등 주로 경찰과 주민간의 교량역할을 담당한다. 스케줄위원회는 주로 자원봉사자의 모집 관리 그리고 순찰계획을 작성·관리한다.”⁹⁸⁾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의 Eureka시 경찰은 자원방법순찰단을 구성하여 그 지역사회의 순찰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은 경찰서장의 일반적인 지침하에 유니폼을 입고 순찰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상가지역과 주택가를 순찰하게 된다. 순찰대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그들은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순찰자원봉사대는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체포행위도 하지 않는다. 그들은 통상적으로 두명이 한조가 되어 비법집행인력(non-law enforcement personnel)으로서 일하게 된다.

이러한 시민들의 순찰활동을 통한 지역사회와 자용방법 활동을 펴는 미국의 대표적인 자원봉사단체는 수호천사(Guardian Angels)이다. 이 단체는 전국적인 규모로 조직되어 있으며, 소수민족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 원래, 뉴욕시의 지하철 내에서의 안전을 위해서 이 조직이 결성되었으며, 미국 내에서 60개의 지부와 5,000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다. 이 조직의 주요한 목적은 순찰하는 지역의 폭행, 강간, 강도 등의 각종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여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 외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을 교육시킴으로써 범죄에 대한 시민의 자각을 향상시키는 것, 범죄예방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를 조장하는 것,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것 등의 목적을 갖고 있다.

수호천사의 회원지원자에 대하여 일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선별 가입토록 하고, 모든 조직원들은 입회시 3개월간의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순찰 중 약물복용이나 음주금지, 무기휴대금지 등의 금지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들이 순찰활동 중에 수행하는 일들을 보면, 범죄예방 외에도 길안내, 경찰 호출, 만취자에 대한 도움, 노약자 및 어린이 보호, 버스탑승자나 거리를 횡단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⁹⁹⁾

98) 오부단, 전계서, p. 664.

99) 치안연구소 편집반, 전계서, p. 31.

이들이 수행하는 임무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¹⁰⁰⁾

<표 1> Eureka 자원방법순찰단의 임무 내용

| | 내 용 |
|---|--|
| 1 | *자동차 순찰이나 도보 순찰 배정 |
| 2 | *휴가중 안전 확인 수행 |
| 3 | *주거지역이나 상가의 재산 안전 확인/감시 수행 |
| 4 | *학교 운동장 부근의 학교 순찰보조 |
| 5 | *특정 공원에서 공원순찰 수행 |
| 6 | *필요시 교통통제나 군중통제를 위한 경찰관 보조 |
| 7 | *퍼레이드, 페스티벌, 그리고 휴가철과 같은 특별 기간 동안 높은 가시성을 위한 보도순찰 |
| 8 | *지시를 받은 경우 범죄현장 봉쇄 |
| 9 | *도시 내의 위험하거나 특별한 상황, 예를 들면 차정지 표지판 분실, 교통 신호등이나 건널목 신호등의 작동불능 등의 보고 등이다. |

수호천사는 다른 시민순찰조직이나 이웃감시활동조직과는 달리 전국적인 규모로 운영되고, 빈민지역 젊은이들의 참가율과 소수인종의 구성비율이 상당히 높은 점이 특징이다. 또한 수호천사는 경찰의 눈과 귀가 되는 감시와 신고역할보다는 직접 범죄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압하려 하고, 정부의 자금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한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수호천사는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민들은 수호천사가 있을 때 보다 안전감을 느낀다고 하며, 수호천사의 구성원들의 범죄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은 수호천사가 그 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욕구를 건전한 방법으로 충족시키게 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¹⁰¹⁾

100) 출처: (<http://redwood.northcoast.com/~eurekapd/evp.htm>)

101) 이진봉, 전계서, p.46.

5. 자원봉사 감시팀(Volunteer Surveillance Team)

Colorado주의 Lakewood 시는 경찰서가 법집행, 수사, 그리고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 구역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세 개의 혁신적인 프로그램인 자원봉사 감시팀(Volunteer Surveillance Team), 갱벽낙서범 시행 및 근절팀(Gang Graffiti Enforcement and Eradication Team), 피해자 지원팀(Victim Assistance)을 개발하였다.

Denver의 교외에 있는 Lakewood는 대도시 지역에 공통적인 법시행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와 교외지역이 섞여 있다. 보고된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갱의 폭력이 도시에 만연되어 있었고 자원은 교착상태에 있거나 혹은 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하는 것보다는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다. 게다가 ‘주 조세제한입법(State tax limitation legislation)’은 지방정부에게 요구되는 세수를 증액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Lakewood 경찰서는 범죄피해자 돕기, 갱벽낙서범 시행 및 근절, 민간감시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기로 정했다.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에 경찰관들이 그 토대를 마련했다.

자원봉사 감시팀(Volunteer Surveillance Team)은 지역사회 내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위험이 따르지 않는 과업을 수행한다. 이 과업은 범죄예방과 범법자들을 발견하는 것을 돕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서의 수요에 기초를 두고 작성된 일일파견활동(deployment)의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감시팀이 언제 어디에서 활동할 것인가가 결정된다. 어떤 계획된 일이 있는 날에는 팀 구성원들이 그날 예상할 수 있는 일어날 일에 대해 자세히 듣기 위해 경찰서에 함께 모인다. 그 날 일이 끝날 때에 운영반장은 각자로부터 얻었던 정보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경찰서는 휴대용 경찰무선기를 장착한 자동차 안에서 일하는 2명이 한 팀인 자원봉사자들을 일하러 내보낸다. 그들은 범죄행위가 발생할 것 같은 장소를 관찰하며, 그들이 관찰한 것을 서류로 작성하며 직접 경찰서의 담당자에게 범죄행위를 보고한다. 만약 회원이 범죄나 체포의 중요한 목격자가 되면 그들은 모든

경찰 보고서에 포함되게 된다. 게다가, 자원봉사자들은 경찰 승용차에 경찰관과 동승한다. 동승하는 동안, 자원봉사자는 부가적인 감시자로서만 일한다.

자원봉사 감시팀 회원들은 혐의자와의 대결, 추적, 혹은 체포를 하지 못하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다. 그들은 말쑥하고 점잖게 차려 입어야 한다. 팀회원들은 관계자가 아닌 사람과 운영에 대해 토론해서는 안되며, 감시활동을 통해서 얻은 정보에 대해 엄격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규칙은 팀회원들이 총, 칼, 순찰본, 끈봉과 같은 무기나 혹은 수갑을 포함하는 어떠한 경찰장비도 사전에 허가 없이 휴대해서는 안된다. 방어용 화화스프레이는 적절하게 이용하는 훈련을 받은 자원봉사자만 휴대할 수 있다. 8시간 이내에 술을 마신 자원봉사자는 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경찰관들은 부적합 지원자들을 선별해내고 자원봉사자가 그들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엄격한 선발과정을 고안했다. 이 프로그램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은 경찰서의 경찰관이나 혹은 시민경찰학교 졸업자에 의해 추천받아야 한다. 이들은 경찰서의 간부에 의해 수행되는 면담을 포함해서 부가적인 선발과정을 거쳐야 한다. 시민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자 할 때 경찰서는 철저한 배후조사를 실시한다.

경찰은 자원봉사 감시팀의 회원에 대한 훈련에서 범주의 요소, 관찰 지각대상, 주차시행, 주의주기, 갱활동, 약물거래, 그리고 무선기 이용과 절차 등과 같은 주제를 다룬다. 그들은 어떤 지역을 감시하는 것, 감시결과 보고서 작성, 무선기 이용과 절차에 대해 실습한다. 그들은 범죄행위를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실습도 한다. 감시팀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시민경찰학교에서 훈련을 마쳐야 한다.¹⁰²⁾

102) 9주간 운영되는 시민경찰학교(Citizen's Police Academy)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구성원에게 경찰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 즉 기본 법규, 순찰 절차, 약물, 비행수사, SWAT, K-9, 경찰관의 생존, 화재경보, 체포 통제, 그리고 빌딩 수색 등을 다룬다. 그 학교는 시민들에게 지역사회 내에서의 경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보다 깊은 이해를 하게 하며, 졸업자들은 흔히 자원봉사감시팀, 갱낙서범 근절팀, 희생자 지원팀 등 세 개의 자원봉사프로그램 중의 하나를 통해 경찰서를 지원하게 된다.

Lakewood 경찰서의 자원봉사프로그램은 커뮤니티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일하는 경찰의 장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경찰력을 증진시키고 경찰관들에게 한정된 예산으로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해 준다. 자원봉사자들과 경찰관들의 공동의 노력은 그 도시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자원봉사감시팀은 모든 시민들에게 커뮤니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들은 법시행의 의무와 책임을 지는 데 상당한 융통성을 제공했다. 경찰관들은 그들의 기술과 훈련을 요하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 있고, 반면에 자원봉사자들은 보다 일상적인 기능과 서비스 활동을 다루게 된다. Lakewood의 경험은 헌신과 창의와 노력을 가지면 자원봉사프로그램은 자신들의 커뮤니티에 굉장한 편익을 제공하도록 고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6. 범죄정보보상(Crime Stoppers) 프로그램

「범죄정보 보상 프로그램」은 1976년 미국 뉴멕시코주의 한 지역에서 처음 실시한 이래 급속히 확대되어 1985년에 약 700개의 프로그램이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급속히 확산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매우 실용적인 범죄통제 전략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범죄를 검거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 특히 범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주민이 제공한 정보에 의해 혐의자를 검거하게 된다면 신고자는 현금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신고에 대한 익명성이 보장됨으로 인해 보복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범죄정보보상 프로그램의 결과로 1985년말까지 92,339건의 중대사건이 해결되었고, \$562,219,373어치의 장물이 원상회복되었고 약물이 몰수되었다.¹⁹³⁾

이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언론 등 대중매체,

193) 치안연구소 편집반, 21세기범죄와 대응방향, 치안정책연구, 제6호, 1996, p. 35.

지역사회, 경찰 등을 동원하고 있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 일반적인 운영상황, 성과 등에 대해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여 범죄신고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교육시키고 있다. 따라서 범죄정보 보상 프로그램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 대중매체, 경찰 등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요소들의 노력과 협력이 중요하다.¹⁰⁴⁾

7. 시민경찰학교(Citizen's Police Academy)

시민경찰학교는 범죄예방에 있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경찰-시민 동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소정의 시민교육을 목표로 경찰이 운영하는 제도로서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Eureka시, 콜로라도주 Lakewood시 등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제 시민들은 범죄란 지역사회의 문제이지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Eureka시에서는 지역사회 지향의 경찰활동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지향의 경찰활동을 위한 하나의 목표로서 Eureka지역에서의 시민경찰학교(Citizen's Police Academy)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학교는 북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처음이며, 범죄예방에 있어서 경찰과의 동반관계를 강화시키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학교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첫째, Eureka지역의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순찰과 다른 시민자원봉사자 임명을 위한 시민 교육이며, 둘째, 이웃감시프로그램에서 리더쉽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 훈련이며, 셋째, 오늘날 경찰서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육상의 기회와 경험의 제공이다. 시민경찰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40시간 이상의 소정의 훈련에 참석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경찰학교는 현직경찰관과 경찰관으로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경찰학 강사의 훈련을 받고 자격을 갖춘 직원들에 의해 운영된다. 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과목은 경찰 윤리, 현대사회에서의 경찰의 역할, 순찰의 절차, 경찰관의 안전, 경찰력(force)의 사용, 특수무기와 전술, 범죄수

104) 이진중, 전계서, 46-47.

사, 범죄현장관리, 갱, 교통관리, 고도소 관리, 응급치료와 공유자원관리분야에서의 자격요건 등이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신청자들이 경찰서 직원들에게 실시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약간 수정한 배경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동시에 시민들이 이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8. Chicago 지역개발운동과 범죄예방

1932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도 시카고의 18개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카고 지역개발운동은 지역주민들과 교회, 노동조합, 기업, 스포츠클럽 등 기존의 사회조직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활동을 이끌어 가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통합하고, 조직화하여 범죄 및 비행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이 운동은 사회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면서 사회가 해체되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규범이 약화되고 통제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부산물로서 범죄가 나타나게 된다는 1920~30년대의 소위 시카고학파의 사회해체론을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¹⁶⁵⁾

시카고 지역개발운동의 관리자들은 프로그램을 실시할 지역을 고려함에 있어서 체포율, 기소율, 소년시설에의 구금정도 등의 여러 기준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비행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이주민이나 흑인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들이었고 영아사망, 결핵, 정신질환의 비율이 높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지역 등이었다. 지역이 선정되고 난후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 지역사회의 지도자들과 노동조합과 같은 기존의 조직들과 함께 지역사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조직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지역 내의 공원시설을 활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개발 후원하였고, 건강관리, 교육환경개선, 법률관련

165) 치안연구소 편집반, 전제서, p. 35.

지원활동 등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비행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지역 내의 비행청소년집단에 레크리에이션활동을 전담할 근무자를 파견하였다. 레크리에이션은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스포츠와 개인경기를 통해 공격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배양해 주려는 것이다.¹⁰⁶⁾

이 운동의 실시로 지역사회의 외관상의 모습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버려진 공터나 폐허가 된 빈집들이 정비되었고 가로등 추가설치, 상점의 간판교체 등을 통해 거리의 모습이 말끔히 정리되었다. 아울러, 비행발생율도 상당히 감소되어 운동이 추진되지 않은 다른 지역사회에서는 비행발생율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비해 지역사회개발운동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시작되기 직전인 1932년에는 1,000명당 60명이던 것이 지역개발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1942년에는 1,000명당 20명으로 감소하였다.

제 2 절 일본의 주민자율방범활동

1. 일본사회와 낮은 범죄발생율

일본은 서구의 여러나라에 비해서 인구당 범죄발생율이 낮고, 또한 범인검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다. 범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교번제도(交番制度)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사회가 세계에 유례가 드물 정도로 시민들 사이에 동질성이 높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가진자나 못 가진자나, 지배자나 일반백성이나, 특히 의식주에 있어서 이치덕 차별이 적은 나라라는 드물다고 한다. 특히 시골의 리(里)나 도시의 동(洞)과 같이 한 마을 주민 사이의 일체감은 더욱 강한 것으로 예로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마을의 약조나 관례를 어기거나 마을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가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마을로부터 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이 일

106) 상계서, pp. 35--36.

지원활동 등을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캠페인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비행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지역 내의 비행청소년집단에 레크리에이션활동을 전담할 근무자를 파견하였다. 레크리에이션은 건전한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스포츠와 개인경기를 통해 공격성을 해소하고 공동체의식을 배양해 주려는 것이다.¹⁰⁶⁾

이 운동의 실시로 지역사회의 외관상의 모습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버려진 공터나 폐허가 된 빈집들이 정비되었고 가로등 추가설치, 상점의 간판교체 등을 통해 거리의 모습이 말끔히 정리되었다. 아울러, 비행발생율도 상당히 감소되어 운동이 추진되지 않은 다른 지역사회에서는 비행발생율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비해 지역사회개발운동이 실시된 지역에서는 시작되기 직전인 1932년에는 1,000명당 60명이던 것이 지역개발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던 1942년에는 1,000명당 20명으로 감소하였다.

제 2 절 일본의 주민자율방범활동

1. 일본사회와 낮은 범죄발생율

일본은 서구의 여러나라에 비해서 인구당 범죄발생율이 낮고, 또한 범인검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다. 범죄율이 낮은 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교번제도(交番制度)가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일본사회가 세계에 유례가 드물 정도로 시민들 사이에 동질성이 높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가진자나 못 가진자나, 지배자나 일반백성이나, 특히 의식주에 있어서 이치덕 차별이 적은 나라라는 드물다고 한다. 특히 시골의 리(里)나 도시의 동(洞)과 같이 한 마을 주민 사이의 일체감은 더욱 강한 것으로 예로부터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마을의 약조나 관례를 어기거나 마을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가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이거나 마을로부터 엄한 제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이 일

106) 상계서, pp. 35--36.

본사회의 범죄발생율을 낮게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검거율이 높은 것은 관계자 및 주민들이 신고도 잘 하거나와 수사력이 훌륭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일본의 경찰은 일반시민들의 지문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검거율이 높은 것은 일본의 도도부현 경찰조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도도부현 경찰본부를 중심으로 할거주의 형식으로 편제되어 있어 폐해가 있다고는 하나 이것이 역으로 서로의 경쟁심을 부추겨 검거율을 높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반시민들의 치안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고 한다. 이것은 비단 국내에서만 아니라 타지역이나 외국으로 여행을 떠날 때에도 언제나 치안 분세에 관심을 표명한다고 한다.¹⁰⁷⁾ 일본의 경우 지역사회의 시민자율방법활동과 직장단위로 실시되는 자율방법활동은 순수한 민간차원의 자율방법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부분 경찰의 지원을 받거나 적어도 경찰의 협조를 얻어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지역주민과 기업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의한 풀뿌리적인 지역안전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의 참가자는 주부, 연장자, 청소년, 기업의 종업원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¹⁰⁸⁾ 이러한 맥락 아래 일본의 주민자율방법활동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제도를 고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방법협회 및 방법련락소의 활동

가. 방법협회

대부분의 방법협회는 경찰의 요청에 의해 형성되어졌으며,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이나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 단위에는 방법협회연합회(예컨대, 재단법인 전국방법협회연합회)가 설립되어 있다. 이 협회에서는 마을 지도자들이 교대로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방법협회의 구성원들은 자

107) 이와 같은 일본의 치안과 관련한 일본사회의 기본적인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일본 동경 대학교 법학부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재호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작성한 것이다.

108) 日本 警察廳, 警察白書, 1996, p. 80--85.

신들의 거주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범죄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이처럼 방법협회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을 위협하게 하는 범죄사고와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방법협회는 지역안전을 위한 지역주민활동의 중심적인 담당자로서 지역의 실정에 따라 「지역안전뉴스」를 발행함과 동시에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포스터를 제작하고 붙이거나 혹은 전단을 배포하는 공공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범죄예방, 청소년 비행 방지, 각성제 등 약물남용방지, 풍속환경정화 등의 제반활동을 경찰과 협력하여 펼치고 있으며, 범죄예방책에 대해 경찰에 건의하기도 한다. 어쨌든, 방법협회는 그들의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¹⁰⁹⁾

이 연합회의 자금은 현단위 협회회원과 기업체의 회비,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중앙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단위 협회는 지방정부로부터 약간의 자금을 조달받고 있다. 전국방법협회연합회와 각 도도부현(都道府縣: 한국의 광역시 도에 해당)방법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경찰청의 협력하에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사로는 매년 10월에 10일 동안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전국방법운동, 전국소년유도대회 및 검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나. 방법연락소

방법연락소는 지역주민의 지역안전활동의 거점으로서 범죄예방조직의 발단조직이다. 이것은 한 지역사회 내에서 민간주도적이고 자발적인 범죄예방활동의 기반으로 설립된 것이다. 1987년 말에 총 791,163개의 방법연락소가 설치되어 있어 50가구당 1개의 방법연락소가 만들어진 셈이었으나, 1994년 말 현재에는 전국에 614,162개소의 방법연락소가 설치되어 평균 71세대 당 1개소가 설치되어

109) 경찰과 방법협회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전국방법협회연합회 사무국 상을 통상적으로 경찰청의 퇴직고위간부가 맡고 있는 점에도 기인할 것이다. 게다가 경찰은 협회를 강화시키고, 그리고 사적이고 독립적인 활동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있다.

방범연락소는 작은 사건이나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며 방범좌담회의 개최, 지역 주민의 요망을 수렴, 방범협회 등이 작성한 자료의 배포 등의 활동을 통해 주민과 경찰의 연락선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¹⁰⁾

3. 직장방범활동과 교통안전협회

가. 직장단위방범조직

방범협회는 지역사회 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조직인데 반해 직장단위의 방범조직은 직장 내에서 사적 기반을 갖춘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형성된 사적인 자원봉사조직이다. 이런 유형의 조직은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업자 집단, 특히 범죄의 피해자가 쉽게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직장에서의 범죄예방조직은 안전을 확립하고, 방범시설을 개수하고, 고용인들 사이에 범죄예방을 격려하고, 그리고 사고와 사건을 보고함으로써 경찰과 협력할 책임을 지고 있다. 오늘날 같이 복잡하고 극히 발전된 사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찰은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그 기업에 적합한 전문적 조언이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직장에서 방범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그들의 활동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방범협회의 활동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범죄의 피해를 입기 쉬운 업종과 범죄에 이용되기 쉬운 업종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방범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직장규모 방범단체가 결성되어 있다. 1994년 말 일본 국내에 결성된 직장 단위의 자율방범단체의 현황을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110) 정승호, 지역공동치안전략에 관한 연구, 논문집(경찰대학), (제14집, 1994), p. 377.

〈표 2〉 일본 직장 단위 자율방범단체 현황

| | 총수(단체) | 전당포, 고물상 | 부동산관계 등 | 금융기관 등 | 유흥시설 |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계 | 상점회 | 교통관계기관 | 자동차등판매수리 | 위험물판매 등 | 기타 |
|-----------|--------|----------|---------|--------|------|------|--------|-----|--------|----------|---------|-----|
| 都道府縣單位團體數 | 564 | 40 | 16 | 64 | 175 | 18 | 9 | 43 | 45 | 41 | 41 | 72 |
| 市町村單位團體數 | 1,238 | 75 | 30 | 50 | 391 | 109 | 42 | 91 | 39 | 69 | 240 | 102 |

출처: 日本 警察廳, 警察白書, 1996, p. 83.

위의 표에서 보면 도부현 단위로 결성된 직장단위방범단체의 수는 564개이며, 이 중에서 유흥시설과 관련한 직장에서 가장 많이 결성되어 있으며, 그외에 금융기관, 교통관계기관, 그리고 전당포 및 고물상 등의 순으로 많이 결성되어 있다. 시정촌 단위로 결성된 직장단위방범단체의 수는 역시 유흥시설과 관련한 직장에서 결성된 단체의 수가 391개로서 가장 많고 그 외에 위험물판매업소, 숙박시설 등의 순으로 많이 결성되어 있다.

나. 금융기관의 자율방범활동

1994년의 금융기관 대상 강도사건의 인지건수는 153건으로, 1993년에 비해 13건이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사회적인 반향이 크고, 모방되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금융기관과의 연락회의의 개최와 방범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 외에 방범설비, 관리체계의 충실을 위해 금융기관의 방범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기준으로 (재)일본방재통신협회 등과 협력하여 방범지도를 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방범설비 설치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경찰에서는 더욱 방범설비의 설치를 가속화시키기로 하고 있다.

또한 과거에 무인현금자동인출기 등의 현금을 노린 절도 사건이 다발하여 방법설비의 설치에 대한 순찰을 강화함과 함께 설치자, 관리자, 제조회사, 경비업자 등을 포함하는 연락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나아가, 현금자동인출기(CD) 등의 방법기준을 책정하여 관계기관과 단체에 대해 방법대책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다. 슈퍼마켓 및 편의점의 방범활동

심야 슈퍼마켓 대상 강도사건의 발생건수는 1990년 61건, 1991년 93건, 1992년 127건, 1993년 145건, 1994년 193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경향이다.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지방으로 파급되는 경향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현단위, 경찰서 단위의 직장규모방법조직의 결성을 촉진하고, 업계전체의 방법의식을 고양함과 함께, 각 점포의 구성, 영업시간, 근무체제, 방법설비 등을 점검하는 등 방법지도를 하고 있다. 또한 사건발생시에 정확한 대응 요령에 대해 강도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점원 등을 대상으로 지도하고 있다.

라. 교통안전협회

교통안전협회는 방법협회처럼 시민들의 자율적인 시민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원봉사활동단체이다. 이 협회는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양시키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게 하며, 아울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교통경찰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는 교통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거나 교통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은 지역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오카야마현에서는 매년 두 번씩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이 캠페인을 통해 학교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피레이드, 라디오 및 텔레비전을 통한 홍보, 운전자들 대상으로 한 홍보물의 배포 등의 활동을 벌인다.¹¹¹⁾

111) 아킨중, 전개서, p. 48-49.

4. 지역안전활동에 대한 경찰의 지원활동

경찰에서는 지역주민의 가까이 있는 범죄나 사고에 대해 각 현장 등에 따른 발생 상황 파악과 피해실태의 자료수집, 분석 등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지역안전활동 추진에 기여하는 지역안전정보로서 지역주민과 방법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지역주민의 지역안전활동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경찰활동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피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순찰활동에 동행케 하는 등의 공동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지역주민이 하는 지역안전활동의 내용 방법에 대해 방법협회의 전문적 입장에서 조언을 하는 「방법활동어드바이저」를 1995년 3월 현재 전국 22부현의 경찰본부, 경찰서에 총 64명을 배치하고 있다. 나아가, 자치단체 등과도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지역안전활동의 중심이 되는 방법협회 방법연락소 등 민간방법조직체제 강화와 지역주민의 지역안전활동을 위한 원조 등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파출소와 경찰서는 각 상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그 외에 경찰서와 경찰분부는 시민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담창구를 마련해 두고 있다. 경찰조직은 수직적 관계인 소위 '타테와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어디서 상의할 곳을 찾지 못하고 단지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런 점을 고려하여, 경찰은 상담부서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통합된 수준에서 그들의 서비스를 개선시키고 있다. 경찰은 상담실과 전화와 같은 시설을 비치해 두고 상담경찰관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배치해 두고 그리고 그 시설을 개선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방법 상담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범죄예방, 비상시의 초기 구급, 위협의 예방 등과 같은 범죄예방관련업무, 금전문제, 토지와 주택 전세문제, 물건의 거래 등과 같은 시민관련 업무, 유산과 같은 사적 문제, 혹은 부모-자식 관계, 결혼, 이혼, 빈곤 등과 같은 가족관련 업무 등을 들 수 있다.

경찰은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고충들을 상담해 주는데, 경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조언을 제공할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다른 행정기관에 맡겨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들도 문제의 성격이나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연결될 사람을 소개해 준다든지, 사건을 기관에 이송한다든지 하는 적절한 방안을 취하고 있다. 일본 지역사회의 이러한 경찰활동의 성격은 오늘날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제 3 절 영국의 자율방범활동

1. 영국의 범죄예방활동과 안전도시운동(Safer Cities Program)

가. 영국의 범죄예방활동

영국은 원래 1970년대까지 범죄예방분야의 발전에 별 진전이 없었으나, 1970년대 이후 범죄예방의 책임소장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면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종전까지는 범죄예방이 전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이것은 경찰의 배타적인 임무가 아니라 개인, 기업, 지방정부, 자원봉사조직들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견해가 생겨나면서 범죄예방활동은 다기관접근방법(multi-agency approach)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986년에 범죄건수와 범죄의 공포가 지방정부, 사기업, 경찰, 그리고 자원봉사기관들의 활동들에 의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정부직원으로 5개의 지방정부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정부안전도시프로젝트(Government's Safer Cities Projects)는 그 중 하나로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개 도시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4개의 프로젝트는 스코트랜드에서 이미 착수되었다. 목적은 지방의 커뮤니티가 그들 자신의 방범활동을 고안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북부아일랜드에서 정부에 의해 재정지원되고 있다.¹¹²⁾ 각 프로젝트는 지방의 기관에서 차

112) 웹사이트 (<http://www/elibrary.com/getdoc.cgi?id>) 참조. Embassy of the United Kingdom, Washington DC, United Kingdom: Justice and the Law in Britain, Countries of the World, 01-01-1991.

따라 연결될 사람을 소개해 준다든지, 사건을 기관에 이송한다든지 하는 적절한 방안을 취하고 있다. 일본 지역사회의 이러한 경찰활동의 성격은 오늘날 미국의 지역사회에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제 3 절 영국의 자율방범활동

1. 영국의 범죄예방활동과 안전도시운동(Safer Cities Program)

가. 영국의 범죄예방활동

영국은 원래 1970년대까지 범죄예방분야의 발전에 별 진전이 없었으나, 1970년대 이후 범죄예방의 책임소장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가 초래되면서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종전까지는 범죄예방이 전적으로 경찰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이것은 경찰의 배타적인 임무가 아니라 개인, 기업, 지방정부, 자원봉사조직들을 포함하는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견해가 생겨나면서 범죄예방활동은 다기관접근방법(multi-agency approach)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1986년에 범죄건수와 범죄의 공포가 지방정부, 사기업, 경찰, 그리고 자원봉사기관들의 활동들에 의해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해 정부직원으로 5개의 지방정부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다.

정부안전도시프로젝트(Government's Safer Cities Projects)는 그 중 하나로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개 도시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4개의 프로젝트를 스코트랜드에서 이미 착수되었다. 목적은 지방의 커뮤니티가 그들 자신의 방범활동을 고안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한 프로젝트들이 북부아일랜드에서 정부에 의해 재정지원되고 있다.¹¹²⁾ 각 프로젝트는 지방의 기관에서 차

112) 웹사이트 (<http://www/elibrary.com/getdoc.cgi?id>) 참조. Embassy of the United Kingdom, Washington DC, United Kingdom: Justice and the Law in Britain, Countries of the World, 01-01-1991.

출되고, 내무성이 재정지원 해 주는 조정역에 의해 뒷받침되는 지방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원래, 영국의 국가방범프로그램은 범죄예방에 관한 장관회의(Ministrial Group on Crime Prevention)에 의해 검토된다. 1988년에 시작된 범죄소탕캠페인(Crack Crime Campaign)과 같은 전국홍보캠페인(National publicity campaign)들은 정부프로그램들의 정규적인 모습들이다. 내무성의 범죄예방부서(Home Office's Crime Prevention Unit)는 지방의 정부기관들이 범죄예방책을 마련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 Scotland에서는 방범위원회가 전국홍보활동을 관장하고 있다.

경찰서 방법과에서 지원해주는 지방의 방범위원회들이 범죄문제를 발견하고, 범죄문제를 공개화시키고, 재화와 장비에 표식을 하고, 그리고 안전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기금을 증액시킴으로써 범죄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방범위원회들은 England와 Wales에 74,000개의 이웃감시단(neighbourhood watch schemes)을 설립하는 데 깊이 관여하였다. Scotland에는 1,100개의 감시단(watch schemes)이 있다.

1988년에 독립적인 국가방범조직인 Crime Concern이 발족되었는데, 이 조직은 방범위원회와 이웃감시단과 같은 지방의 솔선수범적인 사업들(local initiatives)을 격려하고, 그리고 방범활동에 기업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발족되었다. Scotland에서는 Crime Concern이 1989년에 발족되었다.

나. 잉글랜드의 안전도시운동(Safer Cities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와 주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범죄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범죄예방활동의 전개를 통해서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도시운동은 내무성의 범죄예방부서가 주도하여 지방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하여 도시지역에서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려는 포괄적인 활동이다. 이 프로그램을 위해 내무성은 각 지역에 약 25만 파운드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지역조직간의 협력, 자문, 전문가의 조언을 제공해 주고 있다. 안전도시운동은 정기적으로 전국안전도시회의 및 세미나를 개

회하여 범죄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지역사회의 경험들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매년 범죄예방주간을 설정하여 안전도시운동이 전개되는 각 지역에서의 범죄예방활동을 소개하고 홍보하며, 각종 전시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¹¹³⁾

각 지역에서의 안전도시운동은 지방정부의 대표와 함께 거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s), 경찰, 보호관찰기관, 지역사회조직, 소수인종조직, 기업 및 경영주 등 여러 집단이 함께 공동으로 수행한다. 운영위원회는 범죄예방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지역내의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과의 협조를 구하고, 전개되는 활동을 확인하고 평가하며 자원과 재원의 사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 등 지역내의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모든 활동의 핵심적인 결정을 전적으로 맡고 있다.

안전도시운동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내의 정확한 범죄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더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범죄문제를 파악한 후 범죄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를 위하여 지역별로는 상이한 구체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한다. 안전도시운동으로는 가정과 집포, 공공건물 등의 보안상태 개선, 가로조명 개선, 자동차범죄 감소를 위한 조치, 청소년 선도활동, 인종차별 감소를 위한 조치, 여성이나 노인과 같은 범죄취약인구집단지원, 약물남용방지활동 등의 범죄예방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다.¹¹⁴⁾

잉글랜드의 안전도시운동은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사회범죄예방활동으로서 도시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쇠퇴를 반전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이다. 이 운동의 활발한 수행에 힘입어 이와 유사한 범죄예방활동이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 이웃 감시제도(Neighbourhood Watch)

113) 치안연구소 편집판, 전계서, p.36-37. 이 내용은 에스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1996년에 발간한 「소득 1만불 시대의 한국사회의 변화와 대응」 중 일부를 발췌수북한 것임.

114) 치안연구소 편집판, 전계서, p. 37.

영국의 이웃감시제도는 미국으로부터 도입된 것인데, 그 역사가 얼마되지 않았다. 영국 최초의 이웃감시조직은 1982년에 Cheshire시의 Mollington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을의 범죄예방 담당 경찰관은 공공집회에서 이웃감시조직을 제안하였고 마을주민들의 만장일치에 의해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 마을의 이웃감시프로그램은 미국의 제도에 의존하였으며 그 내용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주민들이 수상한 사람들을 감시하고, 유용한 정보를 경찰에 제보하는 것이다. 둘째, 장물을 신고하는 것이다. 셋째, 덧문과 창문을 잠그는 것을 통하여 가정 내의 물리적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영국의 이웃감시제도에 대해 컴퓨터웹사이트에서 소개하기도 한다. 컴퓨터의 웹사이트에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일반시민들이 자신의 가족과 자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시민들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자신들의 가정과 집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한다. 자신들의 지역에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으며, 경찰과 공동으로 일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자신들의 동네주위나 밖에서 단지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관 하더라도 도울 수 있다고 한다. 어느 누구든 크든 작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웃감시제도는 어떤 구역내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예방을 돕고 자신의 동네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한다. 이웃감시는 어떤 지역에서는 집감시(Home Watch)로도 알려져 있지만 둘은 유사한 정책노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서로서로를 보살피 주고 동네를 감시한다는 똑같은 아이디어에 따라 만들어졌다.

이웃감시단의 규모는 지역과 사람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다르다. 그들은 강도, 풍속사범(Vandalism)이나 기타 경범죄 같은 지역의 관심사에 목표를 맞추고, 이런 문제들을 다룰 방안을 찾는다. 개별 회원들 그 제도 내에서 자신들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시민들은 위원회 위원이나 심지어 한 집단의 조정역마저 될 수도 있으며, 시민들의 역할이 단지 이웃이 외출했을 때 그 집을 감시해주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이 제도는 경찰과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으며 경찰은 지방의 문제에 대해 자

문과 정보를 제공해 준다. 잘 운영되는 제도는 지방의 범죄발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한다.¹¹⁵⁾

영국의 이웃감시조직의 수는 1982년 7월에 1개에서 1990년에는 66,500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 이웃감시조직의 일반적인 절차는 하나의 모임을 조직하여 유인물을 나누어 보고 지역사회문제에 대해 토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모임의 형성과 더불어 지역의 대표역할을 할 사람을 선출하게 된다. 대표자의 역할은 새로운 구성원을 모집하며, 경찰과 접촉하고, 경찰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자금조달은 지방경찰부서와 조직구성원들의 합작으로 이루어진다. 영국의 이웃감시 프로그램은 특히 범죄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 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1990년대의 중요 과제라고 한다.¹¹⁶⁾

그런데, 이웃감시제도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가 자주 제기되기도 한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범인검거가 어려운 영국의 상황을 빗대어 '영국에서의 범인들은 자신들의 침대에서 편히 잘 수 있다'고 혹독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영국의 내무성 장관인 Michael Howard가 얼마 전에 제시한 민간 순찰대안이 범인들을 체포하는 데 별로 도움을 줄 것 같지가 않다고 한다. 경찰과 내무성관료들은 아직도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되어야 하는가와 관련한 세부사항들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경찰처럼 이웃감시단들은 순찰대들이 합법화된 자경단체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극소수가 순찰에 임하게 될 것 같다고 한다. 북부 런던에서 50개의 감시단을 조정하고 있는 Peter Loyd는 "그것은 우리가 들어본 것 중 가장 미진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다른 유형의 민간인 순찰은 어느 정도 일반화되고 있다. Durham에 있는 어떤 지방의회가 거리순찰을 하는 11명의 고용인들을 해고 했다. 런던에 있는 민간경비회사인 Bristol과 Coventry가 지불의지가 있는 동네에 순찰을 해 주고 있다. 그

115) <http://www.crime-prevention.org.uk/home-office/guide/community/watch.ht>

116) 이길중, 견제서, p.50.

러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사기업들은 별로 규제받지 않는다. 한 회사는 최근에 유죄판결받은 강도를 고용했다. 이웃감시단은 스스로 범죄예방에 있어서 지역사회를 교육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아마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1980년에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온 이래 5백만 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115,000개의 감시단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를 줄였다는 확고한 증거가 없다. Cambridge 대학 범죄학 강사인 Trevor Bennett 씨가 감시단이 있는 지역 2개, 감시단이 없는 지역 2개, 총 4개의 지역을 연구한 결과 그는 감시단이 없는 2개의 지역에서도 감시단이 없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범죄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왜 감시단이 실패하는가? 만약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들이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스스로 덜 감시할 것이다. Barnett씨는 자기가 조사한 감시단의 반이상의 회원들이 수상한 사건들을 감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극소수만이 회합에 참여했으며, 그들의 재산에 표시를 했다고 한다. 역으로, 중산층 구역의 창문에 붙여진 이웃감시의 스티커는 범죄발생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지만, 강도들에게 누가 부자인가를 대충 골라 놓았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순찰은 아마 잘 안될지 모른다. 경찰은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들이 의심하면 누구든 체포할 수 있지만, 시민들은 단지 명확한 증거가 있는 현행범만을 검거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의 수상한 행동을 단지 목격한다면 이웃감시단은 경찰을 불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웃감시단이 그곳에 있다하더라도 경찰이 그 현장에 나타날 때 그 범인은 언제나 도망치게 된다는 것이다. 민간순찰단은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운영되어 왔다. 미국의 법무성의 연구에 따르면, 순찰단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느끼게 하는 반면, 그들은 범죄를 조금 밖에 줄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웃감시단이 큰 효과를 가지고 오지 못할 것이라고 Economist Paper의 논설에서 비판하기도 했다.¹¹⁷⁾

117) 1994 by Economist Newspaper, NA Inc. Clinton, Bill—Christopher, Warren—al, et, Watch out.... Vol. 330, Economist, 01—22—1994, p.62.

3. 거리 감시제도(Street Watch)

거리감시제도는 위에서 고찰한 이웃감시제도와 비슷한 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의 하나로써 실시되고 있지만 몇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웃감시 범죄예방 활동은 통상적으로 사람들의 집 주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거리감시활동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 지역의 경찰과 지역의 사람들과 합의해서 구성원들이 구체적인 노선을 설정하고 선정된 구역을 규칙적으로 걷는다. 거리감시단은 아무런 경찰력을 갖지 않은 일반시민이다. 만약 그들이 의심스러운 어떤 점을 발견하면 그들이 하도록 요구된 것은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이다. 거리감시단은 교통수단을 제공해 주거나 길에서 부족해줌으로써 환자를 도와 줄 수 있다. 집단은 자원봉사자들의 명부를 갖고 있고 경찰과 협의해서 자문, 지도, 및 지원해 주는 조정자에 의해 운영된다. 거리감시는 그 구성원들이 그들 동네밖에 있을 때와 부근에 있을 때 그들의 지역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를 줄일 수 있다.

거리감시를 위한 일단의 지침이 경찰과 협의하에 만들어져 있다. 시민들은 이러한 지침을 경찰서에서 구할 수 있다. 이 지침들은 일단의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 지침은 거리감시단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도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그 지침은 ‘보고, 듣고, 그리고 보고하라, 그러나 한 번 시도하지는 마라, 그리고 언제나 법의 범위 내에 있어라’라고 가르치고 있다.¹¹⁸⁾

이러한 거리감시제도나 혹은 이웃감시제도 외에 상가감시제도와 농가감시제도, 보트감시제도 등이 있다. 사실, 감시는 주거하는 이웃에게 한정하지는 않는다. 상가감시(Business Watches)는 변화가와 상업지역에서 아주 효과적인 수 있다. 농가감시(Farm Watches)는 농부들로 하여금 서로서로의 가축과 기계들을 감시하도록 격려할 수 있다. 보트감시(Boat Watches)는 해양과 항구의 안전을 크게 개선할 수도 있다.

118) 영국의 거리감시제도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crime-prevention.org.uk/home-office/guide/community/watch.htm>

제 4 절 기타 외국의 자율방범활동

1. 캐나다의 자율방범활동

가. 지역사회인식프로그램

캐나다에서는 지역사회 인식 프로그램(Community Awareness Programs)으로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하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으로서 구역부모(Block Parent), 구역감시(Block Watch), 이웃감시(Neighborhood Watch), 그리고 인식번호색인(Operation Identification)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구역부모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100만명 이상이 가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그들의 집 창문에 어린이, 어른, 그리고 노인들이 비상시에 언제나 그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창문에 특별한 마크를 부착하고 있다. 구역부모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의 거리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안전한 도피처로 제공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로써 경찰이 인정한 어른들이다. 구역부모프로그램은 전체코뮤니티의 참여를 요구하며, 그 지역의 학교 이사회, 서비스클럽, 그리고 경찰에 의해 후원되고 있다.

구역감시프로그램은 지방경찰에 의해 관장되는 범죠평방 프로그램이다. 목적은 주민들이 범죠평방을 위하여 이웃주민들을 조직하는 데 돕기 위한 것이다. 주민들 사이에 공식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연락망을 형성하고, 그들 동네의 재산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수상한 활동을 경찰과 서로서에게 보고할 것을 언약하는 것이다. 구역감시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는 구역감시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는 비건할 만한 구역에 비해 범죠평방이 40%나 적게 발생한다고 한다. 이렇게 효과적이고 잘 조직화된 이웃범죠평방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는 지방경찰에 연락하면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이웃감시프로그램은 동네 주민들이 서로서로 잘 알도록 하고 그들 지역사회 내에서 정상적인 활동 패턴을 장려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수상한 활동을 곧바로 알 수 있도록 경찰이 조직한 지역사회 인식프로그램이다. 시민들이 동

내를 알도록 하고,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각 주민들은 안전 개선과 관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웃감시 프로그램은 주민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 주며, 주민 각자와 동네주민들은 어떠한 수상한 활동이라도 재빨리 발견할 수 있으며, 그것을 경찰에 빨리 신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인식번호색인 프로그램은 이웃감시 및 구역감시 프로그램들과 밀접히 관련된 것인데, 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귀중한 재산에 식별을 위해 자신들의 자동차 운전면허번호(우리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능을 함)를 새기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그 표식은 가장 바깥의 표면에 표시하는 조각기(engraver)로 이루어진다. 거의 모든 품목이 유리표식방식이나 보석세공가들의 표식방법 등을 이용하여 표시될 수 있다. 귀중품을 확인한 후에, 귀중품 목록을 작성하고 모든 귀중품의 일련번호를 통해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이 제도는 강도에게 체포될 가능성을 높혀 위험을 주기 때문에 강도들이 개인의 집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시민들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경우에도 업무를 크게 편리하게 해 준다. 인식번호색인제를 실시하게 되면 경찰은 컴퓨터를 통해서 전국은 물론 국제적으로 즉각적인 연락을 취할 수 있다. 수초 내에 이 체제는 어떤 적절히 표시된 품목에 관한 신분 보고서를 제시해 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문제가 되는 품목이 도둑맞았는지 아닌지와 정당한 소유주의 이름을 경찰에 알려 주게 된다.¹¹⁹⁾

나. 캐나다의 범죄정보보상제도(Crime Stoppers)

캐나다에서 Crime Stoppers는 지난 25년에 걸쳐 생겨난 가장 효과적인 법시행 프로그램이다. 그것은 법시행기관, 언론매체, 대중 사이의 협력에 의존하는 비영리조직이다. Kingston과 그 인근지역에서의 Crime Stoppers제도에 대한 커뮤니티의 지지는 정보전문가, 경찰, 그리고 프로그램의 후원자들로부터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원래, New Mexico의 Albuquerque에서 주유소에 강도가 들어와서 한 대학생이 죽었다. 6주간의 수사후에도 경찰은 어떠한 단서도 찾지 못했다. 경찰수사관인

:19) <http://www.citytel.net/rcmp/comap.htm>

Greg MacAleese는 만약 대중이 범죄에 관한 새로운 보도를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하게 되면 범인을 체포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민이 이 뉴스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Greg MacAleese는 역시 옳았다. 이 방송이 보도된 그 다음 날 어떤 사람이 경찰에 전화연락을 해 왔다. 그 정보는 경찰이 혐의가 있는 두 사람을 체포하게 하는 데 충분했다. 그 뉴스가 보도된 지 72시간 내에 경찰은 살인사건을 해결했다. 이것이 Crime Stoppers 제도가 시작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캐나다에서 Crime Stoppers는 1982년 이래 70,000건 이상을 해결했으며, 200만 달러어치 이상의 장물과 마약물을 찾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40,000명이상이 체포되었다. Ontario주의 Kingston에서 Crime Stoppers는 1988년에 시작되었으며, 1988년 이후 Kingston과 인근지역의 Crime Stoppers는 464건의 범인을 체포했으며, 1,263건의 신고가 들어 왔고, 690건을 처리했다. 회복시킨 재산가치는 2,471,585달러이며, 회수한 마약의 값어치가 9,366,085달러나 된다. Kingstone 전체에서 범죄정보보상제도를 통해 보상금으로 지급한 돈이 79,100달러였다.¹²⁰⁾ 이와 같은 Crime Stoppers는 캐나다의 여러 도시에서 다양한 조직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 Prince Rupert Crime Stoppers를 컴퓨터 웹사이트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범죄정보보상제도(Crime Stoppers)는 경찰, 언론매체, 그리고 그 지역의 시민 사이의 협력에 의존하는 비영리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이미 발생한 강력범죄, 일어날 범죄, 찾고 있는 사람의 소재 등에 관한 정보를 경찰에 제보해 주도록 시민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의 정보가 이 기준에 맞고, 그 결과 체포를 하게 된다면, 범죄정보보상제도는 여러분이 경찰에 정보를 전해줄 수 있는 방식을 알려줄 것이며, 여러분의 신분을 절대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익명으로 지불됩니다. 보상금은 여러분의 정보에 따라 \$50에서 \$1000입니다. 이 제도는 체포와 유죄판결을 약성의 조건으로 하는 다른 보상 프로그램과는 달리, Crime Stoppers는 단지 체포만 하면 보

120) <http://www.kingstons.net/~crime/>

상금을 지불합니다. 보상금 수령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은 극히 줄어듭니다. 미리 정해진 위치에서 code 번호에 의해 신분이 확인되면 보상금은 여러분에게 전달 될 것입니다. 경찰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간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통전화 627-stop(7867)에 전화를 걸게 되면, 여러분은 Crime Stoppers 담당자와 앞으로의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시켜줄 특별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전화는 추적되거나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증인으로 시도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모르게 될 겁니다 Crime Stoppers가 자선단체로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증은 면세이다.¹²¹⁾

다. 자전거 순찰(Bike Patrol)

캐나다의 Windsor대학 경찰은 자동차가 접근할 수 없는 캠퍼스의 내부에 대해 가시성(visibility)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1994년에 자전거순찰프로그램은 그 순찰관의 일원이 되겠다고 서명한 8명의 경찰로 시작했다. 이들 경찰관들은 자전거 운영에 관한 고속도로 교통법규와 함께 자전거의 안전운행을 다루는 8시간의 훈련을 받았다. 더 이상의 훈련은 균형잡기, 도로 언덕 오르기, 급히 회전하고 멈추기 등을 포함한다. 자전거순찰대의 대원은 등에 '경찰'이라 적힌 노란색의 방한자켓과 밝은 줄무늬가 있는 셔츠와 나이키의 검은 조깅화, 자전거 장갑, 엉덩이에 백, 자전거 헬멧 등을 언제나 착용한다. 자전거순찰은 물대 어떤 장소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것은 수상한 자에게 조용히 접근하는 동안 그 상황을 알아보는 장점을 준다. 그런 경찰들은 커뮤니티 내에서 잘 어울리고 그리고 공공관계나 위급시에 곧바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스타일의 경찰활동 개념 모델이 채택된다.¹²²⁾

2. 네델란드의 자율방범활동

네델란드에서는 매년 범죄율이 증가함에 따라 한밤의 안전 문제가 정치적 주

121) Prince Rupert Crime Stoppers는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정보보상제도이다.
<http://www.citytel.net/comp/crimestophers>.

122) <http://www.windsor.ca/police/bike.htm>

요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따라 네델란드 정부는 범죄문제에 대한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83년 퇴토프위원회가 일단의 전문가들에 의해 구성되었으며, 이들은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권고하였다. 첫째, 범죄예방을 위한 정부의 활동을 보다 강화시킬 것, 둘째, 같은 지역 내에서 기관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시킬 것, 셋째, 범죄예방활동에 일반시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시킬 것 등이다. 퇴토프위원회의 이런 권고안이 발표되고 정부가 범죄예방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자 범죄예방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범죄예방 전담기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에 힘입어 시민들의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Botton, Wiles, 그리고 Skogan 등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네델란드의 주거형태가 범죄문제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즉, 정부보조로 건축된 서민용 주거지역은 대체로 고층건물인 경우가 많은데 이 지역에서는 부조리, 범죄, 집세체불 등의 문제가 극심하였다. 이에 대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방식으로 접근하여 보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램에다 친목활동과 감시의 개념을 추가시켜 새로운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Delf시에서는 첫째, 청소년선도위원회들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새로운 오락시설을 마련하였다. 둘째, 건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건물의 청결상태를 감독할 관리원 7명을 임명하였다. 셋째, 건물을 감독하기 편하게 만들고, 건물출입의 통제를 강화시켜 기물과괴를 방지하고자 했고, 넷째, 주거단위를 핵가족 주거용으로 개조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밀집을 분산시키려고 했으며, 다섯째, 모든 계획과 절차는 반드시 주민과 상의한 후에 시행하였다. 이처럼 Delf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이웃감시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역과 Delf시 전역의 범죄발생율을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 시행 초기에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지역이 범죄발생율이 높다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범죄발생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¹²³⁾

123) 이진중, 전게서, 51-52.

제 4 장 경찰서비스 전달상의 시민참여 실태 분석

제1절 부산지역 경찰자율방범조직의 현황과 운영실적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자율방범활동에는 여러 정부기관과 다양한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참여하는 기관은 크게 본다면 검찰, 경찰, 그리고 일반행정기관인 자치단체이다. 법무부 산하의 검찰은 범시행기관으로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¹²⁴⁾ 검찰은 학교폭력 예방지도, 상담지도, 보호관찰, 취업알선, 재정지원, 의료지원, 그리고 범죄없는 아시안게임의 진행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실, 범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만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124) 검찰 산하의 민간자원봉사단체가 다양하게 결성되어 서로 유기적인 연계체계 없이 활동해 왔으나 1995년 6월 12일 공포된 법무부 훈령 제363호 “범죄예방자원봉사기본규정” 및 법무부 보호 61300-69호인 “법무부 민간자원봉사자 통합 관련 세부조치 사항” 등에 의거 동일 유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법무부 민간자원봉사자인 소년선도위원, 보호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을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통합작업을 추진하여, 동년 8월 30일 범죄예방위원회 부산지역협의회 조직구성안 및 정관안을 확정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부산시장, 법원장, 검사장, 교육감, 경찰청장, 국세청장, 부산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등이 고문으로 위촉되며, 사무국, 6개의 분과위원회, 지구협의회를 두며 의결기관으로서 총회와 이사회를 두고 있다. 지구협의회에는 11개의 구협의회 외에 여성회, 대학생회, 교직원회 등을 두고 이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자율방범활동은 본 연구의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기로 한다.

1. 경찰의 협력단체 조직현황과 운영실적

경찰과 관련한 부산지역의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은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이 총괄하고 있으며, 방범기획과가 주무부서이다. 지방경찰청 산하에 13개의 경찰서가 있으며,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 경찰협조단체가 있어 이들 기관을 통해 시민들은 경찰서비스 전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찰협조단체로서는 경무과가 관장하는 치안자문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는 경찰치안 행정에 대한 시정개선 또는 발전적 사항에 대해 건의하도록 되어 있어 경찰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전형적인 공동공급(coprovision)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비해 방범과가 관장하는 협조단체로서는 지역의 방범활동 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지역주민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펴는 방범자문위원회, 청소년 선도, 소년·소녀 가장돕기, 양로원 등 불우시설 돕기 등의 활동을 펴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그리고 각 파출소 단위로 조직하여 마을어른들 중 학식이나 덕망이 있는 분을 향장으로 추대하여 방범활동 및 도덕규범을 위반하는 주민들에 대한 계몽활동을 전개하는 향장제도가 있다. 교통과가 관장하는 협조단체로는 교통홍보를 위한 교통캠페인 전개 및 교통관련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선진질서위원회, 각 파출소 단위 관내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직 후 교통정리활동을 펴는 녹색어머니회,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교통정리 및 계몽활동을 펴는 기동거리정화위원회, 택시운전기사 중 모범운전자들이 구성하여 교통정리 및 계몽활동을 펴는 모범운전자회가 있다. 이 외에 거동이 수상하거나 간첩으로 의심이 가는 자들을 신고토록 계몽 및 홍보활동을 펴는 보안지도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각 파출소별로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선진질서위원회, 방범자문위원회, 향장이 있다.

이와 같은 경찰협력단체 운영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부산의 한 경찰서 산하의 협조단체별 인원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부산 ○○경찰서 산하협조단체 현황(1996. 10. 15)

| 구분 기능별 | 명 칭 | 인원(명) | 비 고 |
|----------------|-----------|-------------------|--------------------------------|
| 경 무 과 | 치안자문위원회 | 31 | 전반적 사항 |
| 방 법 과 | 방법자문위원회 | 25 | |
| | 청소년지도위원회 | 28 | |
| | 향 장 | 22 | 파출소단위 향장 회장을 경찰서 향장으로 함 |
| 교 통 과 | 선진질서추진위원회 | 22 | |
| | 녹색어머니회 | 17 | 파출소 단위 회장을 경찰서 회원으로 함 |
| | 기동거리정화위원회 | 26 | 자생단체로 스스로 조직 후 교통과에 통보 운영함 |
| | 모범운전자회 | 361 | " |
| 보 안 과 | 보안지도위원회 | 22 | |
| 각 파출소 (18개) | 자율방법대 | 각 파출소별 로 조직 운영 | 자생단체로 스스로 조직 후 파출소 방법활동 지원 보조함 |
| | 녹색어머니회 | | |
| | 선진질서추진위원회 | | |
| | 방법자문위원회 | | 운영사항은 위 경찰서 운영 사항과 동일함 |
| | 향 장 | | |

이 외에도 보안과에 소속된 팔각회와, 한국자유총연맹 00구지부(00구)가 있다. 이처럼 경찰 산하에 다양하고 많은 협조단체가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경찰활동의 다양성을 나타내 주는 한 측면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하여 경찰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보호받고자 하는 측면도 있다. 사실, 경찰은 방법활동을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삼고 있지만, 그 외에도 청소년 선도와 지도, 교통정리 및 계몽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의

다양성은 이들 조직의 실제적인 활동이 뒷받침되어야만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조직들의 활동이 유명무실하거나 아주 미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권보호 등을 위한 유착 가능성마저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어 하루빨리 경찰협조단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언론으로부터 받고 있다.¹²⁵⁾

위의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모범운전자회를 제외하면 각 위원회별로 20~40명의 회원이 있다. 위의 협력단체회원들의 명부를 통해서 회원의 직업을 분류해 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부산지역 경찰협력단체 회원의 직업별 현황

| 경찰서 | 직업 | 약사 |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한)의사 | 제조업 | 상업 | 회사원 | 가사 | 기타 | 계 |
|-----|-----------|----|---------|--------|-------|-----|----|-----|----|----|-----|
| | | 부 | 치안자문위원회 | 1 | 0 | 4 | 1 | 25 | 0 | 0 | 0 |
| 부 | 방법자문위원회 | 0 | 0 | 0 | 2 | 15 | 7 | 0 | 0 | 1 | 25 |
| 경 | 청소년지도위원회 | 1 | 0 | 0 | 0 | 13 | 12 | 1 | 0 | 1 | 28 |
| 찰 | 향장 | 0 | 1 | 0 | 0 | 0 | 6 | 3 | 0 | 12 | 22 |
| 서 | 녹색어머니회 | 0 | 0 | 0 | 0 | 0 | 0 | 0 | 17 | 0 | 17 |
| | 선진질서추진위원회 | 0 | 0 | 0 | 2 | 17 | 2 | 2 | 0 | 0 | 23 |
| | 보안지도위원회 | 1 | 0 | 0 | 1 | 19 | 0 | 1 | 0 | 0 | 22 |
| 총 계 | | 3 | 1 | 4 | 6 | 89 | 27 | 7 | 17 | 14 | 168 |

*기타: 무직, 불기입, 시민단체활동, 축산업

위의 표에서 보면 치안자문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 약사, 한의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나 그래도 대부분의 회원들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방법자문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선진질서추진위원회, 보안지도위원회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녹색어머니회의 경우에만 조직의 성격상 전 회원이 가정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회사원들의 경우에도, 실재는 이들이 맡고 있는 직책이 전무나 상무 등 고위직이며,

125) 부산국제신문, 1996년 10월 19일, 22면.

따라서 이들은 실제 부친의 사업을 맡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청소년 지도위원회의 경우 회사원과 약사 1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제조업이나 상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실, 청소년지도위원 활용 지침에 보면, 지도위원의 자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법무부의 직원, 사회복지기관의 지도원, 각급 교원 등 청소년 관계기관의 직원, 종교인 및 건전한 서클회원 등의 청소년 관계단체의 회원,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등 지역사회의 유지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서 산하의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대부분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인이거나 혹은 요식업 및 각종 자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어서 과연 이들만으로서 청소년지도를 잘 할 수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경찰협력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로서만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원회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주로 제조업이나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은 경찰들이 이들을 주로 위촉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며, 또한 각 위원회가 명칭과 명목상의 기능은 다르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상에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¹²⁶⁾ 어쨌든, 공직자들이나, 종교단체의 종교인, 각종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의 회원, 각급학교 교원 등도 참여하여 함께 치안문제를 논의하거나 구체적인 활동을 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¹²⁷⁾ 이런 관점

126) 부산영도경찰서 치안자문위원회 회원수첩을 보면, 치안자문위원회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두고 있다. 즉, “본회는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경찰치안행정에 대한 시정개선 또는 발전적인 사항을 건의하고 위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실행사업으로서 경찰 치안행정에 대한 지원사업과 회원상호 간의 친목사업을 들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보면 치안자문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수행하거나 해야 하는 사업이 불분명하여, 회원들간의 친목단체의 성격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되면 치안위원회라는 조직은 경찰 주변에 있는 소위 관련단체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며, 일반시민들의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방법자문위원회나 선진질서추진위원회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27) 경찰 산하의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경우에도 대부분 회사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었으나 최근 범죄예방자원봉사연합회로 통합하면서 신규 회원을 많이 위촉하였는데, 특히 이 중에서 학교폭력분과위원회와 보호관찰분과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교원들을 신규로 많이 위촉해 두고 있다.

에서 본다면, 경찰협력단체의 조직을 정비하거나 개편할 때 신규회원으로서는 이들의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참여를 보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앞으로 자원봉사연합회와 연계하여 이들의 신청을 받고 경찰이 이들의 배경조사를 한 후 위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협력단체들의 인적 구성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위원들이 바쁘고, 이들의 활동이 형식화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을 경찰의 중간관리층의 한 간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¹²⁸⁾

“.....위원으로 위촉된 자들이 주로 공사다망한 지역유지들이어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파출소 및 일선실무자들과 접촉, 의견교환이 이루어져야 협조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월례회 때에 겨우 한 번 정도 참여하며, 이나마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급실무자들의 반감을 사기도 한다. 게다가 이들 단체들이 법적 근거 없이 내부규칙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단체들의 활동을 위한 예산의 지원이 전무하여 이들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그리고 많은 회원들 중 사업상 얼굴내밀기, 교통단속 회피 등의 수단으로 단체에 가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이 기업가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주로 위촉하는 것은 이들 외에는 위원으로 위촉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¹²⁹⁾

경찰은 언론에서 이러한 기사를 보도하기 전인 1996년 9월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자율방범단체 조직 및 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자체적으로 각급 경찰서와 파

128) 이러한 견해는 파출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일선경찰서에 근무하는 중간관리자 면담과정에서 피력한 것이다.

129)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남부경찰서 산하의 선진질서추진의위원회 경우 30명 중 무직과 직업을 밝히지 않은 3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운수 건설회사대표, 부동산업자, 호텔운영, 식당주인 등이다. 게다가, 어떤 유흥업소 업주는 '청소년 지도위원을 받고 있으며, 이것도 단속기관의 눈치를 살피고 경찰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입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출소에 조직정비방안을 지시사항으로 내려보냈다. 이 공문에 의하면 정비대상단체로 들고 있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회, 방법자문위원회, 녹색어머니회, 선진질서추진위원회, 자율방법대, 청년회가 포함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위촉기준으로서는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있고, 경찰활동에 관심이 많은 인사를 엄선하여 위촉하고, 경찰규제 대상업소 경영자, 과립지한 전과자, 현행 위원들 중 상습적인 불참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자 등을 정비대상자로 지목하였다.¹³⁰⁾

어쨌든 경찰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어 많은 사회적 활동을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보호와 규제라는 이중적 성격 때문에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단지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에만 맡겨둘 수는 없고, 경찰의 엄중한 선택에 의해 시민들의 참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규제대상기관이 규제기관의 여러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자율적인 규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다양한 직업 특히, 공직자들과 사회단체, 종교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시에 경찰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경찰의 자율방법대 조직현황과 활동실적

위에서 살펴본 경찰협력단체 중에서 경찰의 방법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체는 자율방법대이다. 이런 자율방법대는 각 통별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파출소의 방법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 자율방법대, 청년회, 파출소 방법자문위원회를 포함하고 있다.¹³¹⁾ 이러한 조직들은 주로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지만 수 경찰서 및 파출소와의 연계도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각 파출소는 구청에

130) 이러한 내용은 경찰 내부자료로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부산지역의 각 경찰서로 내려전달된 공문에 근거한 것이다.

131) 1988년도 8월부터 부산지역의 경우 기존의 방법자문위원회, 청년회 등 각종 단체는 그대로 두고 운영하되 다만 명칭만을 통일하여 "파출소 자율방법대"라 지정하기로 하였다. 조직구성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조직하되, 조직관할과 활동범위를 감안하여 지정인원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 관장하는 이러한 자율방범조직을 기초로 하여 파출소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성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권역별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대원들은 취약지역과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범죄예방활동을 펴고 있다. 아울러 미야, 가출인 등을 찾아주므로써 청소년지도활동도 펴고 있으며, 자체경비, 신고출동, 질서계도를 실시하고 있다.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은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자와,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으며, 경찰규제대상업소 운영자 및 파렴치한 전과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1996년도 2/4분기의 각 경찰서별 주민자율방범대조직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1996년도 2/4분기 자율방범대 조직현황

| 서 구분 | 계 | 중 부 | 동 래 | 영 도 | 동 부 | 부 산 진 | 서 부 | 남 부 | 해 운 대 | 북 부 | 금 정 | 사 하 | 연 산 | 강 서 |
|---------|--------|--------|--------|--------|--------|-------------|--------|--------|-------------|--------|--------|--------|--------|--------|
| 조직수 | 476 | 47 | 22 | 37 | 16 | 103 | 26 | 25 | 26 | 54 | 27 | 43 | 21 | 29 |
| 인원수 | 11,186 | 878 | 538 | 601 | 309 | 1,998 | 628 | 576 | 699 | 1,849 | 794 | 897 | 452 | 967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에 따라서 조직의 수와 참여하고 있는 인원의 수에도 커다란 차이가 난다. 부산진경찰서가 관할하는 지역내의 자율방범대의 조직수는 103개로서 연산경찰서나 동래경찰서 관할 구역내의 자율방범대 수보다 거의 5배나 되고 있다. 참여인원도 거의 4~5배나 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부산진경찰서 관할지역은 상권이 형성된 곳이 많으므로 자연히 주민들 사이에 자율방범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¹³²⁾ 이와 같은 자율방범대의 조직수나 참여인원의 수는 수시로 변하기도 하며, 실제 참여자의 수는 허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자료마다 차이가 나고 있으며,

132) 이와 같은 설명은 부산지역의 한 경찰서 방범계장의 설명에 근거를 둔 것이다.

경찰서나 구청의 담당자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각 경찰서 산하의 자율방법대 현황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경찰서의 자율방법대 조직의 구성을 예시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북부경찰서는 행정구역상 북구와 사상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자율방법조직 54개 총 인원 1,849명은 북구와 사상구 자율방법대 10개, 249명, 북구와 사상구 청년회 조직 25개 1,180명, 북구와 사상구 방법자문위원회 조직 19개 4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¹³³⁾ 이와 같은 자율방법대가 수행한 실적을 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 산하 자율방법대 활동 실적

| 서 별 | 범죄신고건수 | 형사범검거(건수) | | |
|-------|--------|-----------|----|-----|
| | | 계 | 폭력 | 기타 |
| 중부경찰서 | 23 | 3 | 0 | 3 |
| 동래 " | 6 | 13 | 0 | 13 |
| 영도 " | 19 | 34 | 1 | 33 |
| 동부 " | 3 | 4 | 1 | 3 |
| 부산진 " | 64 | 18 | 4 | 14 |
| 서부 " | 29 | 6 | 1 | 5 |
| 남부 " | 37 | 32 | 11 | 21 |
| 해운대 " | 12 | 17 | 4 | 13 |
| 북부 " | 3 | 2 | 0 | 2 |
| 금정 " | 132 | 45 | 8 | 37 |
| 사하 " | 7 | 9 | 4 | 5 |
| 연산 " | 25 | 12 | 2 | 10 |
| 강서 " | 3 | 3 | 0 | 3 |
| 분기계 | 363 | 198 | 36 | 162 |
| 누 계 | 740 | 360 | 70 | 290 |

*위의 표에서 강력범과 절도에 대한 검거건수와 신고 건수가 없으므로 표에서 제시하지 않았음.

출처: 1996년 7월 9일자 부산지방경찰청 「'96. 2/4분기 자율방법대 운영실적 보고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임.

133) 이 자료는 부산지방경찰청에 보고한 부산 북부경찰서의 내부자료에 근거한 것임.

위의 <표 6>에서 보면, 범죄신고건수가 2/4분기에만 363건으로 부산지역에서 자율방범대가 하루 평균 약 4건을 신고하고 있다. 이러한 신고의 내용이 형사범 중 주로 기타 경범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며, 약 4건 중 1건 정도가 폭력에 관한 것이다. 각 관할 경찰서별로 보면, 금정경찰서 관할 주민자율대의 범죄신고건수가 132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부산진경찰서 관할 주민자율대의 범죄신고건수가 64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북부경찰서, 동부경찰서, 그리고 강서경찰서 관할 자율방범대의 경우 범죄신고건수가 겨우 3건에 지나지 않아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범죄신고가 많은 지역에 범죄도 많이 발생하겠지만 다른 주요한 한 가지 이유는 주민들의 범죄발생에 대한 관심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금정구의 경우 자율방범대원들이 사소한 범죄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율방범대원은 순찰 중 현행범의 경우에는 검거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각 경찰서 관할 자율방범대의 형사범검거실적에 위의 표에서 제시되어 있다. 형사범의 검거건수에도 폭력에 관한 것은 남부경찰서의 경우가 11건으로서 가장 많고, 중부, 동래, 북부의 경우 폭력에 관한 검거건수가 전혀 없다. 기타 경범의 경우 금정경찰서(37건), 영도경찰서(33건), 남부경찰서(21건) 등의 순으로 많으며, 북부, 중부, 강서의 경우 형사범 검거건수가 적다. 이와 같이 검거건수에도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 보이는 것은 결국 자율방범대의 적극적인 활동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활동실적에 근거하여 지방경찰청장과 각 경찰서장 명의로 자율방범대 조직과 대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2/4분기의 경우 대원들에게 각 경찰서장의 포상만 있었는데, 해운대의 경우 11명으로 가장 많으며, 전혀 포상을 실시하지 않은 경찰서가 13개 경찰서 중 8개나 된다. 그러나 1/4분기에는 지방경찰청장 명의로 각 경찰서에서 1명을 추천하여 총 13명의 대원에게 포상을 실시했으며, 경찰서장 명의로도 7개의 조직에게 포상을 실시한 바 있다. 이러한 포상의 실시는 대원들의 자긍심과 활동에 대한 인정감을 고취시키는 데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구청산하의 주민자율방범대 운영현황

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은 결국 경찰의 방범활동을 지원하는 주민들의 활동으로서 경찰에서도 이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이들의 활동에 대한 포상도 실시하여 효과성을 진작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각 구청도 주민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조직화시키고 이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1997년 1월 현재 부산광역시 자율방범대의 인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부산광역시 각 구별 자율방범대원 현황

| 구 별 | 계 | 중 구 | 서 구 | 동 구 | 영 도 | 부산 진 | 동 래 | 남 구 | 북 구 | 해운 대 | 사 하 | 금 정 | 강 서 | 연 제 | 수 영 | 사 상 | 기 장 |
|--------|--------|--------|--------|--------|--------|---------|--------|--------|--------|---------|--------|--------|--------|--------|--------|--------|--------|
| 인 원 | 14,035 | 520 | 465 | 540 | 1,210 | 1,076 | 610 | 775 | 519 | 1,488 | 2,051 | 775 | 915 | 498 | 1,473 | 586 | 804 |

출처: 부산광역시 내부 자료를 통해서 작성한 것임

위의 표에서 보면 현재 부산시에서 주민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대원들의 총인원은 14,035명이다. 자율방범대원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사하구 지역으로서 2,051명이며, 그 다음이 해운대구로서 1,488명, 수영구 1,473명 순으로 많다. 이렇게 각 지역마다 자율방범대원의 수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지역의 인구수와 동 수의 차이, 동의 물리적·지리적 특성,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 여러 요인 때문이다. 사하구는 인구수와 동의 수가 아주 많으며, 부산진구의 경우 인구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 내에 상가지역이 밀집해 있으며, 해운대구도 인구수가 많고 동시에 유흥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의 자율방범에 대한 관심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다.

각 구별 자율방범대원들의 소속별 현황을 살펴보면 청년회 회원 5,992명(41.8%), 민방위 대원 2,021명(14%), 바르게 살기 회원 1,789명(12.5%), 새마을운동

134) 이들의 수가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의 인원수와 차이가 나는 것은 경찰의 자율방범대에는 파출소 방범자문위원의 수가 포함되는 반면, 구청 산하의 민방위대나 바르게살기회원, 새마을운동협의회 소속 지도자 등 모두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협의회 소속 지도자가 1,333명(9.3%), 기타 1,680명(11.7%)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에서도 청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등에 소속된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이 두드러져 이들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가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인원은 총 9,114명으로 전체 자율방범대원의 63.7%를 차지하고 있다.¹³⁵⁾ 사실, 이들의 수자만으로는 그들의 활동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의 1996년도 실적을 살펴보면, 주민자율방범대원들은 각 구별로 지정한 우범지역 681개소에 9,148개조의 순찰조를 편성하여 연인원 127,347명이 정기순찰을 실시하여 범죄신고 247건, 범인검거 16차례 28명을 검거하여 경찰에 인도하였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청소년선도 34,457명, 심야업소계도 145,527개소, 기타 활동을 10,010명에게 실시하는 등 다양한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3대시민운동에 총 2,779회 연인원 28,943명이 참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교통질서 11,672회 52,657명, 환경순찰에 6,478회에 38,119명, 기타 사회봉사활동에 1,228회 9,942명이 참여하였다. 끝으로 자율방범대원 중 1,432개대 33,740명이 총 953회에 걸쳐 스스로 교육훈련에도 참여하였다.¹³⁶⁾ 이러한 활동의 구체적인 예로서 수영구 대연2동 청년회 자율방범대는 연말을 맞아 회원 및 임원진을 재정비하고 3개조 14명으로 편성하여 '95. 12. 20부터 '96. 2. 29.까지 운번제로 방범순찰을 실시하였다.¹³⁷⁾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에 필요한 순찰장비인 가스총 389점, 무전기 401점, 방범봉 6,026점 손전등 4,473점, 호각 11,536점, 방한복 4,952점, 기동장비 1,342점

135) 자율방범대원의 수가 1995년 2/4분기에 보고한 수와 커다란 차이가 난다. 예를 든다면, 1995년 2/4분기 때 청년회회원의 수는 7,598명, 민방위대원 4,980명, 바르게살기회원 2,885명 등 총 25,546명이었으나 현재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는 셈이다(부산광역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상황보고(2/4) 참조). 이것은 1996년 말을 기해 자율방범대원의 조직정비기간을 설정하여 형식적으로 등록된 대원을 모두 해촉하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에 한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36) 부산광역시 사회진흥과 자원봉사계 내부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임.

137) 부산광역시 사회진흥과 자원봉사계의 내부자료인 주민자율방범활동운영상황보고 (4/4분기)를 참조하였음.

과 방법초소 등 기타시설 4,167점을 자체부담금, 후원회기부금, 행정기관지원금 등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이러한 자율방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구(군)에서는 자율방법대 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구 동 154개회 1,920명이 활동비와 활동장비를 기탁하였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39,456천원이 된다. 이러한 활동의 구체적인 예로서 서구청장은 구회의실(95.11.30(목) 13:30)에서 지역방법활동에 참여해온 주민자율방법대원 21명에게 장비 7점 945점(2,700천원), 야식비 5,400천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대원 6,383명들과 305회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표창수여 138명, 감사서한발송 3,358명, 기타 모범대원 371명에 대한 산업시찰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 지원금 146,453천원과 민간단체의 지원금 78,911천원으로 방법초소 설치, 위문격려, 간식제공, 장비지원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의 각 구청 산하의 자율방법대의 조직 현황, 활동실적 등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현황이나 활동실적을 통해서만 조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혹은 실제로 이러한 활동이 범죄예방이나 주민들의 안전감 형성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실제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법대에 참여한 주민단체 참여자들, 그리고 일선 파출소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제 2 절 부산시민들의 자율방법활동 참여실태 분석

부산시민들의 방법활동에 대한 참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참여 활동들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집단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경찰과의 협조나 연계를 갖고 이루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개인적 소극적 자율방법활동, 개인적 적극적 자율방법활동, 집단적 소극적 자율방법활동, 집단적 적극적 자율방법활동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활동들은 이론적 고찰에서 검토한 바 있듯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주민들의 주거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된

과 방법초소 등 기타시설 4,167점을 자체부담금, 후원회기부금, 행정기관지원금 등을 통하여 확보하였다. 이러한 자율방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구(군)에서는 자율방법대 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구 동 154개회 1,920명이 활동비와 활동장비를 기탁하였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39,456천원이 된다. 이러한 활동의 구체적인 예로서 서구청장은 구회의실(95.11.30(목) 13:30)에서 지역방법활동에 참여해온 주민자율방법대원 21명에게 장비 7점 945점(2,700천원), 야식비 5,400천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정기관이나 단체에서는 대원 6,383명들과 305회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표창수여 138명, 감사서한발송 3,358명, 기타 모범대원 371명에 대한 산업시찰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또한 행정기관 지원금 146,453천원과 민간단체의 지원금 78,911천원으로 방법초소 설치, 위문격려, 간식제공, 장비지원 등에 지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의 각 구청 산하의 자율방법대의 조직 현황, 활동실적을 고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현황이나 활동실적을 통해서만 조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혹은 실제로 이러한 활동이 범죄예방이나 주민들의 안전감 형성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실제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법대에 참여한 주민단체 참여자들, 그리고 일선 파출소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활동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제 2 절 부산시민들의 자율방법활동 참여실태 분석

부산시민들의 방법활동에 대한 참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참여 활동들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집단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경찰과의 협조나 연계를 갖고 이루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개인적 소극적 자율방법활동, 개인적 적극적 자율방법활동, 집단적 소극적 자율방법활동, 집단적 적극적 자율방법활동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활동들은 이론적 고찰에서 검토한 바 있듯이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주민들의 주거지역의 특성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된

다. 본 절에서는 이들 변수와 각 유형의 자율방범활동의 실태를 관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변수들의 변수목록과 그 측정지표들을 요약한 내용은 〈부록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1. 개인적 소극적 자율방범활동

일반 시민들은 평소에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는 경찰의 기본 임무이기는 하지만 경찰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특히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거주하거나 혹은 그런 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양한 방법조치를 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범죄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방범장비를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 방범교육을 실시하거나 혹은 귀가하는 자녀의 안전을 위해 마중을 나가기도 한다.

다음 〈표 8〉은 부산시민들의 개인적 소극적 자율방범활동의 정도를 분석한 것이며, 이러한 활동에 있어서 자율방범대에 참여하는 시민들과 일반시민들 사이에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표 8〉 부산시민들의 개인적 소극적 방범활동 분석

| 구분 내용 | 일반시민 | | | | 자율방범활동 참여자 | | | | x ² | Sign. |
|---------------|------|-------|------|-------|------------|-------|------|-------|----------------|-------|
| | 한다 | | 안한다 | | 한다 | | 안한다 | | | |
| 1.방범기 기 설치 | 85명 | 10.7% | 709명 | 89.3% | 42명 | 16.1% | 219명 | 83.9% | 4.88602 | .0271 |
| 2.방범장 비 소지 | 28명 | 3.5% | 766명 | 96.5% | 52명 | 19.9% | 209명 | 80.1% | 73.03886 | .0000 |
| 3.자녀방 범교육 | 380명 | 47.7% | 416명 | 52.3% | 150명 | 57.3% | 112명 | 42.7% | 6.76038 | .0093 |
| 6.귀가자 녀 마중 | 264명 | 33.2% | 532명 | 66.8% | 81명 | 30.9% | 181명 | 69.1% | .35742 | .5499 |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시민 794명 중에서 10.7%인 85명은 방법등, 정보장치, 비상벨 등의 방법기기 중에 하나를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89.3%인 709명은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방법기기를 설치한 응답자는 42명으로서 16.1%를 차지한 반면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83.9%인 219명이다. 이와 같이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방법기기를 보다 많이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장비는 훨씬 적은 비율의 응답자만이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조사대상인 일반시민들 중 3.5%인 28명만이 가스종이나 혹은 방법봉과 같은 방법장비를 소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96.5%인 766명은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율방법참여자의 경우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19.9%인 52명이나 되고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방법장비 소지여부와 관련하여 일반시민들과 주민단체 참여자들 사이에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자녀의 방법예방교육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의 일반시민들 중 47.7%인 380명이 자녀의 방법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52.3%이다. 이에 비해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 자녀들에게 방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7.3%인데 비해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42.7%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계적 유의수준 .01에서 이 두 집단 사이에는 자녀들의 방법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의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끝으로, 귀가자녀의 마중과 관련해서 보면, 조사대상의 일반시민들 중 33.2%가 귀가하는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중을 나간다고 응답한 반면, 66.8%는 마중을 나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자율방법활동참여자들의 30.9%는 자녀들의 마중을 나가며 69.1%는 나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서 두 집단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개인적 소극적 주민자율방법활동은 왜 시민들 사이에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이러한 활동의 유무와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인 성별,

연령, 생활수준, 소득수준, 교육수준, 그리고 거주지의 특성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방범등, 경보장치, 비상벨 등의 방범기기의 설치에 있어서는 성별, 연령, 소득, 생활수준, 거주지 유형 등에 따라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가족 중 누구라도 범죄에 피해경험이 있는가의 유무와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방범등, 경보장치, 비상벨 등의 설치는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방범장비의 소지여부는 성별에 따라서는 통계적 차이를 보이나 연령, 소득수준, 생활수준, 거주지유형 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년간 가족 중의 범죄피해 여부도 방범장비의 소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범장비의 소지 여부와 성별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성별에 따른 방범장비 소지 여부 분석

| | 남 자 | 여 자 |
|----------|------------|------------|
| 휴대하지 않는다 | 609(90.0%) | 341(97.4%) |
| 휴대한다 | 68(10.0%) | 9(2.6%) |
| 계 | 677(100%) | 350(100%) |

Chi-Square=17.51572, Sign.=.0000

위의 표에서 보면, 조사대상자 중 남자는 10.0%가 방범장비를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여자는 2.6%만이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성별에 따라 방범장비의 소지 여부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시민들 중에 방범장비를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겠지만 이러한 장비를 집에 비치해 두고 있는 사람들은 10%정도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에 대한 방범교육의 실시 여부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지 특성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 소득, 생활수준은 관련성이 없으며, 연령, 거주지 유형은 자녀들의 방범교육 실시 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녀에 대한 방법 교육의 실시 여부와 연령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연령별 자녀에 대한 방법교육실시 유무 분석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
| 교육안한다. | 50(71.4%) | 184(52.0%) | 140(28.0%) | 97(50.0%) | 29(46.8%) |
| 교육한다. | 20(28.6%) | 179(48.0%) | 189(57.4%) | 97(50.0%) | 33(53.2%) |
| 계 | 70(100%) | 354(100%) | 329(100%) | 194(100%) | 62(100%) |

Chi-Square=20.88824, Sign.=.0003

위의 표에서 보면, 20대의 경우 자녀방법교육을 실시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8.6%에 지나지 않으나 50대의 경우 57.4%나 되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자녀들의 연령과 깊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50대 외에도 30대, 40대, 60대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약 절반 정도가 방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령과 자녀들에 대한 방법교육의 실시 여부 사이에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표 11>은 주민들의 거주유형에 따른 시민들의 자녀에 대한 방법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분석이다.

<표 11> 거주지 유형별 자녀 방법교육 실시 여부

| | 일반주택가 | 아파트단지 | 상가 및 유흥가 | 공장지대 및 기타 |
|--------|------------|------------|-----------|-----------|
| 실시안한다. | 287(49.6%) | 180(53.9%) | 37(44.6%) | 7(25.9%) |
| 실시한다. | 292(50.4%) | 154(46.1%) | 46(55.4%) | 20(74.1%) |
| 계 | 579(100%) | 334(100%) | 83(100%) | 27(100%) |

Chi-Square=9.30132, Sign.=.0255

위의 표에서 보면, 공장지대 및 기타 지역의 주민들이 자녀들의 방법교육에 대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은 자녀들의 방법교육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주택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반 정도의 응답자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거주 유형에 따라 자녀들의 방범교육의 실시유무에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거주지 유형에 따라 동네의 안전성에 차이가 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시민들의 거주지 유형과 시민들의 자녀에 대한 방범교육 실시 유무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서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귀가 자녀의 안전을 위한 마중 여부는 성별, 소득수준, 거주지 유형, 생활수준 등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연령과 시민들의 거주지 유형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가족 중 지난 2년간 범죄에 대한 피해 경험 유무도 자녀의 마중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의 연령과 귀가자녀의 안전을 위한 마중 여부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연령별 귀가 자녀의 마중 여부 분석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
| 마중안나간다 | 53(75.7%) | 262(74.0%) | 195(58.7%) | 130(67.0%) | 43(69.4%) |
| 마중나간다. | 17(24.3%) | 92(26.0%) | 136(41.3%) | 64(33.0%) | 19(30.6%) |
| 계 | 70(100%) | 354(100%) | 329(100%) | 194(100%) | 62(100%) |

Chi-Square=20.82317, Sign.=.0003

* 20대의 경우 가족의 경우를 통해 응답한 것으로 봐야할 것임

위의 분석 표에서 보면, 20대와 30대는 자녀 마중 나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각각 약 24.3%와 26.0%로 나타난 반면 40대는 응답자의 41.3%가 마중나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와 60대는 약 30%로 다시 줄어들고 있다. 이것 역시 자녀들의 연령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40대의 자녀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학교수업 등으로 귀가시간대가 늦어져서 자녀의 안전문제가 부모들에게는 걱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부모들의 연령에 따라 자녀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마중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에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개인적 적극적 자율방법활동

주민들의 자율방법활동 중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면서도 경찰과의 교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있다. 이런 활동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주민들의 수상한자에 대한 신고와 범죄피해에 따른 즉각적인 신고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과 관련하여 부산지역 시민들의 참여정도와 자율방법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 사이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개인적 적극적 자율방법활동 분석

| 구분 내용 | 일반시민 | | | | 자율방법단체 참여자 | | | | x ² | Sign. |
|--------------------|------|-------|------|-------|------------|-------|------|-------|----------------|-------|
| | 한다 | | 안한다 | | 한다 | | 안한다 | | | |
| 수상한 자신고 | 258명 | 32.4% | 538명 | 67.6% | 121명 | 46.2% | 141명 | 53.8% | 15.66691 | .0001 |
| 범죄피 해 즉각 적신고 | 185명 | 23.2% | 611명 | 76.8% | 109명 | 41.6% | 153명 | 58.4% | 32.21140 | .0000 |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 시민들 중 수상한자를 신고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32.4%인데 비해서 안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67.6%이다. 한편 자율방법단체에 참여한 사람들 중 수상한자를 발견하면 신고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46.2%이며,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53.8%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피해에 따른 즉각적인 신고여부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 일반시민들의 경우 응답자 중 23.2%만이 신고한다고 응답한 반면, 자율방법단체 참여자들의 경우 응답자 중 41.6%가 신고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두 집단간에 범죄피해에 따른 신고 여부에 있어서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신고활동은 일반시민과 자율방법단체 주민들간에도 차이가 나지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나게 된다. 먼저,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주민들의 신고활동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과 소득수준에 따라 신고활동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의 연령, 거주지 유형, 생활수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다음 <표 14>는 성별에 따른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 여부를 분석한 것이다.

<표 14> 성별에 따른 수상한 자 신고 여부 분석

| | 남 자 | 여 자 |
|----------|-------------|-------------|
| 신고하지 않는다 | 414(61.1%) | 249(70.7%) |
| 신고 한다 | 264(38.9%) | 103(29.3%) |
| 계 | 678(100.0%) | 352(100.0%) |

Chi-Square=9.04263, Sign.=.0026

위의 표에서 보면, 수상한 자를 목격하는 경우 조사대상 남자들은 38.9%가 신고하는 반면, 여자들은 29.3%만이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집단 간에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 여부는 통계적 유의수준 .005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신고활동과 주민들의 소득수준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것은 다음 <표 15>와 같다.

<표 15>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른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 여부 분석

| | 70만원 이하 |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00만원 이상 |
|-------|------------|----------------------|-----------------------|-----------------------|------------|
| 신고안한다 | 56(56.6%) | 313(68.2%) | 205(64.5%) | 36(52.2%) | 36(64.3%) |
| 신고한다 | 43(43.4%) | 146(31.8%) | 113(35.5%) | 33(47.8%) | 20(35.7%) |
| 계 | 99(100.0%) | 459(100.0%) | 318(100.0%) | 69(100.0%) | 56(100.0%) |

Chi-Square=10.03752, D.F=4, Sign.=.0398

위의 표에서 보면, 가구당 소득수준이 250만원에서 300만원 미만인 시민들이 가장 신고를 많이 하는 반면 70만원이상 150만원 미만의 시민들의 경우 신고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수준 .05에

서 소득 수준에 따라 신고유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나 그 관계가 정의 방향이나 부의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범죄피해에 따른 즉각적인 신고 여부와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거주지 특성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연령, 소득, 생활수준, 거주지특성 등은 관련성이 없으며, 성별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6>은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 후 신고여부와 관련성을 분석한 것이다.

<표 16> 성별에 따른 범죄피해 후 즉각적인 신고 여부 분석

| | 남 자 | 여 자 |
|----------|-------------|-------------|
| 신고하지 않는다 | 463(68.3%) | 285(81.0%) |
| 신고한다 | 215(31.7%) | 67(19.0%) |
| 계 | 678(100.0%) | 352(100.0%) |

Chi-Square=18.09535, Sign=.0000

위의 표에서 보면, 남자는 응답자의 31.7%가 범죄피해 후 즉각적인 신고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자들은 19.0%만이 신고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많이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신고여부에 있어서 두 집단 사이에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범죄피해에 따른 즉각적인 신고 여부나 혹은 수상한자에 대한 신고여부는 시민들의 가족 중 범죄에 대해 피해경험이 있는가의 여부와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 중 지난 2년간 누구라도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된 경험을 갖고 있는가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일반시민들은 응답자 중 74.5%가 없다고 응답한 반면 자율방범활동참여자들은 72.4%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어 두 집단 간에는 가족 중 범죄피해 경험의 유무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가족 중 누군가가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일반시민들의 경우 응답자의 44.7%가 신고를 했다고 응답한 반면, 자율방범대 참여자의 경우 응답자의 54.2%가 신고를 했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에 신고유무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유의수준 .05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족 중 누군가가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시민들이 이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범죄피해 후 신고하지 않는 이유

| 구분 문항 | 일 반 시 민 | | 자율방범단체 참여자 |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경찰이 원상회복 못한다 | 26 | 17.8 | 4 | 11.8 |
| 경찰이 소극적이다 | 54 | 37.0 | 14 | 41.2 |
| 보복의 우려가 있다 | 24 | 16.4 | 2 | 5.9 |
| 사소하거나 귀찮다 | 23 | 15.8 | 14 | 41.2 |
| 명예가 실추된다 | 7 | 4.8 | 0 | 3.4 |
| 기 타 | 12 | 8.2 | 0 | 1.9 |
| 계 | 146 | 100.0 | 34 | 100.0 |

$\chi^2=15.95594$, D.F.=5, Sign.=.0070

위의 표에서 보면, 범죄피해 후에 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로서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경찰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37.0%로서 가장 많고, 그 외에 경찰이 원상회복을 하지 못한다(17.8%)든지 보복의 우려가 있다(16.4%)든지, 사소하거나 귀찮기 때문(15.8%)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율방범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신고하지 않는 이유가 경찰이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41.2%나 되며, 아울러 경찰이 원상회복을 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11.8%를 차지하여 경찰에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53.0%가 되어서 일반시민들의 경우 54.8%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의 경우 그외에도 사소하거나 귀찮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도 41.2%가 되며 보복의 우려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에도 일반시민들과 차이가 나서 두 집단간에 신고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 .0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고 있다.

3. 집단적 소극적 자율방범활동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경찰과의 교호작용 없이 자율방범활동을 벌이는 것으로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이웃간의 대책협의나 주민들이 공동으로 경비원을 고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집단적 소극적 자율방범활동의 실태를 일반시민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 사이에 비교분석한 것은 다음 <표 18>과 같다.

<표 18> 집단적 소극적 자율방범활동 실태분석

| 내용 | 구분 | | 일반시민 | | 자율방범단체 참여자 | | | | x ² | Sign. |
|---------------|-----|-------|------|-------|------------|-------|------|-------|----------------|-------|
| | | | | | 한다 | | 안한다 | | | |
| 범죄예방 대책협의 | 84명 | 10.6% | 712명 | 89.4% | 71명 | 27.1% | 191명 | 72.9% | 41.847 | .0000 |
| 주민공동 경비원고용 | 92명 | 11.6% | 704명 | 88.4% | 15명 | 5.7% | 247명 | 94.3% | 6.749 | .0094 |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시민들중 각종 범죄에 대한 대책을 주민들과 함께 협의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10.6%인 반면,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27.1%로 나타나고 있어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이 훨씬 범죄예방대책 협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 공동 경비원고용의 경우에 있어서는 응답한 일반시민들 중 11.6%가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5.7%밖에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민공동경비원의 고용은 사실 주거의 형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도 주거형태를 감안한 경비원고용과 주민단체 참여여부 사이의 관계를 밝힐 수는 없는 것이다. 어쨌든,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 사이에 집단적 소극적 자율방범활동에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예방을 위한 이웃간의 대책협의 여부와 성별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19>와 같다.

〈표 19〉 성별에 따른 이웃간의 방법대책협의 여부 분석

| | 남 자 | 여 자 |
|----------|-------------|-------------|
| 협의하지 않는다 | 567(83.6%) | 315(89.5%) |
| 협의를 한다 | 111(16.4%) | 37(10.5%) |
| 계 | 678(100.0%) | 352(100.0%) |

Chi-Square=5.99976, D.F=1, Sign.=.0143

위의 표에서 보면, 조사대상의 남자중에서 16.4%는 범죄예방을 위한 이웃간의 대책협의를 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자중에서는 10.5%가 대책협의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두 집단 간에 대책협의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에 다소 차이가 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웃간의 방법대책협의 여부와 연령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20〉과 같다.

〈표 20〉 연령별 이웃간의 방법대책협의 여부 분석

|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
| 협의하지 않는다 | 68(97.1%) | 300(84.7%) | 284(86.3%) | 158(81.4%) | 53(85.5%) |
| 협의를 한다 | 2(2.9%) | 54(15.3%) | 45(13.7%) | 36(18.6%) | 9(14.5%) |
| 계 | 70(100.0%) | 354(100.0%) | 329(100.0%) | 194(100.0%) | 62(100.0%) |

Chi-Square=10.58856, D.F=4, Sign.=.0316

위의 표에서 보면, 이웃간에 방법대책협의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0대가 가장 많은 18.6%인 반면에 20대는 2.9%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30대의 경우 15.3%, 40대의 경우 13.7%, 50대의 경우 18.6%, 60대의 경우 14.5%를 나타내고 있어 이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여하튼 이웃간의 방법대책협이는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이웃간의 방법대책협의 여부와 주민들의 범죄피해 경험 유무 사이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Chi-Square Test를 한 결과는 다음 〈표 21〉과 같다.

〈표 21〉 이웃간의 대책협의 유무와 범죄피해경험 유무간의 관련성 분석

| | 피해경험 있다 | 피해경험 없다 |
|----------|-------------|-------------|
| 대책협의 안한다 | 158명(79.4%) | 745명(86.7%) |
| 대책협의 한다 | 41명(20.6%) | 114명(13.3%) |
| 계 | 199명(100%) | 859명(100%) |

Chi-Square=6.7194, D.F=1, Sign.=.0116

위의 표에서 보면, 지난 2년간 가족 중 누구라도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 중 대책협의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6%이며, 피해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대책협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3.3%로 나타나고 있어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집단의 경우 보다 방법대책협의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 이와 같은 범죄피해경험 유무와 이웃간의 방법대책협의 유부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집단적 적극적 자율방법활동

집단적 적극적 자율방법활동은 주민들이 각종 경찰협력단체에 참여함으로써 경찰과의 교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자율방법활동이다. 이런 활동은 직접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것에서부터 청소년을 선도하는 활동은 물론 방법자문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자문하는 활동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앞 절에서 각종 경찰협력단체의 실태에 대해서 고찰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각 협력단체 참여자들의 참여 이유와 실제적인 활동 실태를 고찰하기로 한다.

다음 〈표 22〉는 부산지역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 결성되어 있는 경찰협력단체 회원들이 각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를 분석한 것이다.

〈표 22〉 시민들의 경찰협력단체 참여 동기분석

| 자율방법단체에 참여하는 이유 | 빈도(명) | 비율(%) |
|-----------------|-------|-------|
| 지역의 안전 | 165 | 64.2 |
| 자녀의 안전한 귀가 | 11 | 4.3 |

| | | |
|--------------|-----|-------|
| 친목도모 | 55 | 21.4 |
| 개인의 성취감과 만족감 | 18 | 7.0 |
| 경찰과의 유대관계 형성 | 7 | 2.7 |
| 기 타 | 1 | 0.4 |
| 계 | 257 | 100.0 |

위의 표에서 보면 집단적 적극적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는 시민 총 257명 중에서 64.2%인 165명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이들의 참여 동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안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자 중 21.4%인 55명은 친목도모를 중요한 참여동기로 삼고 있어 회원 간의 친목도모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¹³⁸⁾ 그외에 봉사활동을 통한 개인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회원은 18명으로서 7.0%로 나타났으며, 자녀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참여한다고 응답한 회원은 11명으로서 4.3%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찰과의 유대관계 형성이 참여의 동기라고 밝히고 있는 응답자는 겨우 7명으로서 2.7%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실제 알려져 있는 것처럼 경찰협력단체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참여 동기가 경찰과의 유대강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조사에서 표명하는 동기와 실제의 동기 사이에 차이가 나기 때문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회원들 중 85.6%가 이러한 협력단체의 표명된 목적, 즉 지역사회 안전증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가장 중요한 참여 동기로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쨌든,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경찰협력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성격보다는 자조(self-help)활동의 성격과 동시에 친교활동으로서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각 협력단체에 따라서 참여자들의 참여 동기가 다르지만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고 있다.

138) 최근 전국의 많은 대학에서 개설하고 있는 최고과정에 등록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들의 가장 중요한 참여동기로서 인간관계 형성이나 친목도모를 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경찰협력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 <표 23>은 부산지역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 결성되어 있는 주민자율방법단체(경찰협력단체)들에 소속된 회원들의 각 단체별 활동의 참여 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면 청년회 회원들의 경우 전체 응답자 118명 중 50명인 42.4%가 1주일에 여러 번 참여한다고 하며, 34명인 28.8%가 1주일에 한 번은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응답자 중 71.2%가 1주일에 한 번 이상 청년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르게살기회원들과 새마을운동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경우도 10명(40.0%)가 1주일에 한 번, 9명(36.0%)이 2주일에 한 번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어 청년회 회원들과 더불어 단체활동에 비교적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방법위원회의 경우 응답자 30명 중 12명(40.0%)이 한 달에 한 번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9명(30.0%)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또한 선진질서 위원회의 경우 응답자 10명 중 4명은 한 달에 한 번, 또 다른 4명은 1주일에 한 번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1주일에 여러 번 참여한다거나 혹은 분기별로 한 번 참여한다고 응답한 회원도 각각 1명이 있다.

<표 23> 주민자율방법단체별 회원들의 참여 빈도

| | 1주일에 여러 번 | 1주일에 한 번 | 2주일에 한 번 | 한달에 한 번 | 분기별로 한 번 |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 계(명) |
|-----------------|---------------|---------------|---------------|---------------|--------------|-------------------|------|
| 청년회 | 50 (42.4%) | 34 (28.8%) | 16 (13.6%) | 14 (11.9%) | 3 (2.5%) | 1 (0.8%) | 118 |
| 방법위원회 | 5 (16.7%) | 4 (13.3%) | 9 (30.0%) | 12 (40.0%) | | | 30 |
|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 10 (40.0%) | 9 (36.0%) | 4 (16.0%) | 2 (8.0%) | | | 25 |
| 선진질서위원회 | 1 (10.0%) | 4 (40.0%) | | 4 (40.0%) | 1 (10.0%) | | 10 |
| 향 장 | 1 (9.1%) | 3 (27.3%) | 2 (18.2%) | 5 (45.5%) | | | 11 |

| | | | | | | | |
|--------------------------------------|--------------|---------------|---------------|---------------|--|-------------|----|
| 청소년 지도위원회 | 2 (5.6%) | 12 (33.3%) | 6 (16.7%) | 12 (33.3%) | | 4 (11.1) | 36 |
| 녹색어머니회 | 1 (5.3%) | 2 (10.5%) | 10 (52.6%) | 6 (31.6%) | | | 19 |
| 모범운전자회, 보안위원회, 라이온스클럽, 자유연맹 | 1 (14.3%) | 1 (14.3%) | 2 (28.6%) | 3 (42.9%) | | | 7 |
| 기 타 | | 2 (66.7%) | 1 (33.3%) | | | | 3 |

Chi-Square=98.15126, D.F=40, Sign.=.0000

*모범운전자회, 보안위원회, 라이온스클럽, 자유연맹 등의 회원들은 조사대상자의 수도 적었지만 응답자의 회수비율이 극히 낮아 함께 분석하였음.

향상의 경우 전체 응답자 11명 중 5명(45.5%)은 한달에 한번, 2명(18.2%)은 2주일에 한 번, 3명(27.3%)은 1주일에 한 번, 그리고 1명(9.1%)은 1주일에 한 번 참여한다고 응답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경우 1주일에 한 번과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각각 12명(33.3%)로 가장 많고, 2주일에 한 번이라고 응답한 사람 6명(16.7%), 거의 차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도 4명(11.1%), 일주일에 여러번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2명(5.6%)으로 나타났다. 또한 녹색어머니회의 경우 2주일에 한 번 참여한다고 응답한 회원이 10명(52.6%)으로서 가장 많으며, 한 달에 한 번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6명(31.6%)으로서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수가 너무 적어 분석결과의 신뢰성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조직에 대한 깊은 분석을 위해서는 조사대상자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보다 많은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3명:42.9%)이나 2주일에 한 번(2명:28.6%) 정도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기타 위원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다. 이러한 참여 빈도는 참여단체에 따라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⁹⁾

어쨌든 위의 분석을 통해서 보면, 구청에 소속된 청년회, 바르게살기, 새마을협의회 등에 소속된 회원들은 비교적 자주 참여하는데 비해서 경찰 산하의 위원회에 소속된 회원들은 평균적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덜 자주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같은 위원회라도 개인에 따라서 참여 빈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참여자의 연령이나 성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각 단체의 성격이나 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 단체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측면의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참여자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분석해 보는 것은 이들 단체 활동의 활발한 정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한 측면이 될 것이다.

다음 <표 24>는 경찰의 자율방범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각 단체에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가를 스스로 평가한 것이다.

<표 24> 각종 자율방범단체회원들의 참여의 적극성 정도

| | 아주 적극 적이다 | 약간 적극 적이다 | 보통이다 | 약간 소극 적이다 | 아주 소극 적이다* | 계(명) |
|-----------------|--------------|--------------|-----------|--------------|---------------|------|
| 청년회 | 52(44.4%) | 33(28.2%) | 28(23.9%) | 4(3.4%) | | 117 |
| 방법위원회 | 8(26.7%) | 14(46.7%) | 8(26.7%) | | | 30 |
|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 8(32.0%) | 9(36.0%) | 8(32.0%) | | | 25 |
| 선진질서위원회 | 2(20.0%) | 6(60.0%) | 1(10.0%) | 1(10.0%) | | 10 |
| 향 장 | 4(36.4%) | 4(36.4%) | 3(27.3%) | | | 11 |
| 청소년지도위원회 | 5(13.9%) | 16(44.4%) | 12(33.3%) | 3(8.3%) | | 36 |

139) 분할분석표(cross table)의 각 셀의 빈도가 5이하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각 카 테고리를 몇 가지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 원래의 분류 표대로 제시하여 설명하였다.

| | | | | | | |
|--------------------------------------|----------|----------|----------|----------|--|----|
| 녹색어머니회 | 8(42.1%) | 4(21.1%) | 6(31.6%) | 1(5.3%) | | 19 |
| 모범운전자회, 보안위원회, 라이온스클럽, 자유연맹 | 1(14.3%) | 4(57.1%) | 1(14.3%) | 1(14.3%) | | 7 |
| 기 타 | 2(66.7%) | | | 1(33.3%) | | 3 |

Chi-Square=35.92219 D.F=24 Sign.=.0558

‘아주 소극적이다’ 항에 가입한 회원은 없음.

위의 표에서 보면, 청년회 회원들의 경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자는 52명으로서 전체의 44.4%에 이르며,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자는 33명으로서 전체의 28.2%에 이르고 있다. 방범위원회의 경우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자는 8명(26.7%),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자는 14명(46.7%)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했거나 혹은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합하면 73.4%에 달하고 있어 청년회의 경우와 비슷하다.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회원들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32.0%인 8명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반면 36.0%는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선진질서위원회의 경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자는 2명(20.0%),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자는 6명(60.0%)으로 나타나고 있어 아주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다른 단체의 경우에 비해 다소 낮으나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선진질서위원회의 경우에도 참여자들이 비교적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향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전체 응답자 중 72.8%가 아주 적극적이거나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경우 58.3%만이 아주 적극적이거나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어머니회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19명 중 8명(42.1%)으로 나타났으며, 약간 적극적으

로 참여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이 21.1%로 나타나 아주 적극적이거나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63.2%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은 녹색어머니회의 경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 모범운전자회, 보안위원회, 자유연맹, 라이온스클럽 등의 경우에도 아주 적극적이거나 약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71.4%에 달하고 있다. 끝으로, 모든 단체에서 아주 소극적으로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으며, 각 자율방범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활동의 적극성 정도에 있어서는 단체 사이에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다.

각 자율방범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이 자율방범단체들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한 것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5>와 같다.

<표 25> 각종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정도 평가분석

| | 아주 활발하다 | 약간 활발 하다 | 보통 이다 | 별로 활발 하지 않다 | 전혀 활발 하지 않다 | 계(명) |
|--------------------------------------|------------|----------------|-----------|----------------------|----------------------|------|
| 청년회 | 59(50.0%) | 36(30.5%) | 19(16.1%) | 4(3.4%) | | 118 |
| 방범위원회 | 8(26.7%) | 15(50.0%) | 6(20.0%) | 1(3.3%) | | 30 |
|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 11(44.0%) | 9(36.0%) | 5(20.0%) | | | 25 |
| 선진질서위원회 | 4(40.0%) | 4(40.0%) | 2(20.0%) | | | 10 |
| 향 장 | 4(36.4%) | 4(36.4%) | 3(27.3%) | | | 11 |
| 청소년지도위원회 | 7(19.4%) | 11(30.6%) | 11(30.6%) | 6(16.7%) | 1(2.8%) | 36 |
| 녹색어머니회 | 8(42.1%) | 5(26.3%) | 5(26.3%) | 1(5.3%) | | 19 |
| 모범운전자회, 보안위원회, 라이온스클럽, 자유연맹 | 2(28.6%) | 2(28.6%) | 2(28.6%) | 1(14.3%) | | 7 |
| 기 타 | 1(33.3%) | 1(33.3%) | 1(33.3%) | | | 3 |

Chi-Square=36.06817 D.F=32 Sign.=.2840

위의 표에서 보면 청년회의 경우 응답자 중 50.0%(59명)가 청년회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30.5%(36명)는 약간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회원들은 청년회가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운동협의회의 경우에도 80.0%가 아주 활발하거나 약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방법위원회의 경우 응답자의 76.7%, 선진질서위원회의 경우 응답자의 80.0%, 향장의 경우 응답자의 72.8%가 자신들의 단체가 아주 활발하거나 약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응답자의 50.0%, 모범은전자회, 보안위원회, 자유연맹, 라이온스클럽 등의 경우 57.2%만이 자신들의 단체가 아주 활발하거나 약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자신들의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녹색어머니회의 경우 응답자의 68.4%가 자신들의 단체가 아주 활발하거나 약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단체의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소속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도를 평가한 것에는 유의수준 .05 수준에서 단체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각 자율방법단체에 따라 이들의 활동의 활발성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몇몇 단체를 제외하면 회원들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경찰의 각종 자율방법단체들은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제 5 장 자율방법활동이 경찰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참여 활성화 대책

제 1 절 경찰서비스 결과와 시민들의 특성

방법활동과 관련한 경찰서비스의 결과는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피해과 그 지역의 범죄발생 정도 등의 객관적 서비스 결과와 그리고 시민들의 안전감과 경찰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감 등의 주관적인 서비스 결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경찰서비스 결과와 시민들의 특성간의 관련성을 고찰하고 아울러 서비스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함께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다원회귀분석의 기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1. 객관적서비스 결과

지난 2년간 가족 중 누구라도 범죄에 피해된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범죄피해경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범죄피해는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지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 먼저, 시민들의 범죄피해경험을 거주지 특성과 관련시켜 분석하면 다음 <표 26>과 같다.

<표 26> 거주지 특성에 따른 범죄피해경험 분석

| 내 용 | 범죄 희생 경험이 있다 | 범죄 희생 경험이 없다 | 계 |
|----------|--------------|--------------|------------|
| 일반 주택가 | 121(23.9) | 385(76.1) | 506(56.1) |
| 아파트 단지 | 44(15.1) | 248(84.9) | 292(32.4) |
| 상가 및 유흥가 | 27(34.6) | 51(65.4) | 78(8.6) |
| 공장지대 | 4(15.4) | 22(84.6) | 26(2.9) |
| 계 | 196(21.7) | 706(78.3) | 902(100.0) |

$\chi^2 = 17.26655$ D.F. = 3 Sign. = .0006

위의 표에서 보면, 지난 2년간 가족 중 누구라도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당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응답자 902명 중 196명으로서 21.7%에 해당하며, 피해경험이 없는 사람은 706명으로서 78.3%에 해당한다. 이들을 거주지 유형과 관련시켜 보면, 일반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중 범죄에 피해된 경험이 있는 사람은 506명 중 121명으로서 23.9%인데 비해서 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292명 중 44명으로서 15.1%를 차지한다. 또한 상가나 유흥가에 사는 사람들은 78명 중 27명인 34.6%가 피해경험이 있으며, 공장지대의 경우 26명 중 4명인 25.4%가 피해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시민들의 범죄피해는 거주지에 의해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죄피해경험은 성별, 교육수준, 연령, 소득수준, 생활수준 등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범참여자들 사이에 각종 범죄의 피해경험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시민들의 범죄피해경험

| 내 용 | 일반시민 | | 자율방범 참여자 | |
|--------------|------------|---------|------------|---------|
| | 피해경험 없다 | 피해경험 있다 | 피해경험 없다 | 피해경험 있다 |
| 단순절도 | 737(92.6) | 59(7.4) | 237(90.5) | 25(9.5) |
| 야간주거 침입절도 | 779(97.9) | 17(2.1) | 250(95.4) | 12(4.6) |
| 폭 행 | 769(96.6) | 27(3.4) | 253(96.6) | 9(3.4) |
| 청소년폭력 | 778(97.7) | 18(2.3) | 252(96.2) | 10(3.8) |
| 강 도 | 788(99.0) | 8(1.0) | 261(99.6) | 1(0.4) |
| 살 인 | 796(100.0) | 0(0.0) | 262(100.0) | 0(0.0) |
| 강 간 | 795(99.9) | 1(0.1) | 262(100.0) | 0(0.0) |
| 차량도난 | 791(99.4) | 5(0.6) | 259(98.9) | 3(1.1) |
| 기타경범 | 770(96.7) | 26(3.3) | 247(94.3) | 15(5.7) |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시민들의 경우 지난 2년간 가족 중 누군가가 단순절도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7.4%인데 비해서 자율방범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9.5%로서 약간 높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에도 일반시민들의 경우 2.1%가 피해를 당했지만 자율방범단체참여자들의 경우 4.6%로서 다소 높다. 그러나 강도의 경우 일반시민은 응답자 796명 중 8명이나 경험하여 시민들 중 약 100명에 한 명 꼴로 피해를 경험하였는데,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의 경우 전체응답자 260명 중 1명만이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0.4%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의 범죄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두 집단 사이에 각종 범죄의 발생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경찰서비스의 객관적 결과로서 각 지역의 범죄발생정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범죄발생의 정도는 흔히 경찰에 보고된 범죄수사철을 통해서 조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범죄가 보고 되지도 않고 특히 이러한 자료를 통해 분석단위에 맞게 특정지역에 어느 정도의 범죄가 발생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 작업을 요한다.¹⁴⁰⁾ 따라서 각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범죄가 많이 생기는가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여 이를 통해서 각 지역의 특성과 관련시켜 분석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음 <표 28>은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동네에 범죄가 어느 정도 많이 발생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140) 경찰의 수사종결철을 통해 특정지역명이나 거리명에 발생한 범죄건수를 행정단위로 확인하여 각 통 단위로 범죄발생건수를 작성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방대한 분류작업이 소요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범죄발생 정도를 분석한 논문이 있다. 김인, 공공서비스 배분의 결정 요인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학박사학위논문, 1986.

〈표 28〉 동네의 범죄발생정도 분석

| 문항 | 구분 | 일 반 시 민 | | 자율방범단체 참여자 | |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 | 72 | 9.3 | 9 | 3.5 |
|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 | | 301 | 38.9 | 75 | 28.8 |
| 보통이다 | | 204 | 26.4 | 103 | 39.6 |
| 약간 많이 발생했다 | | 169 | 21.8 | 60 | 23.1 |
| 아주 많이 발생했다 | | 28 | 3.6 | 13 | 5.0 |
| 계 | | 774 | 100.0 | 260 | 100.0 |

$\chi^2=26.47074$ D.F.=4 Sign.=.0000

위의 표에서 보면, 자신의 동네에 지난 1년간 범죄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일반시민들의 경우 9.3%인데 비해서 자율방범대의 참여자들은 경우 3.5%로 나타났으며,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일반시민의 경우 38.9%인데 비해서 자율방범대는 28.8%로 나타나서 일반시민들이 사는 동네에 범죄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범죄가 아주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자율방범대에 참여한 사람들의 동네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정도를 거주지 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9〉와 같다.

〈표 29〉 거주지 유형별 범죄발생 정도

| 내 용 | 별로 발생 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많이 발생 했다** | 계 |
|----------|------------------|-----------|---------------|-------------|
| 일반주택가 | 245(42.8) | 174(30.4) | 154(26.9) | 573(100.0) |
| 아파트 단지 | 164(50.2) | 93(28.4) | 70(21.4) | 327(100.0) |
| 상가 및 유흥가 | 22(27.8) | 27(34.2) | 30(38.0) | 79(100.0) |
| 공장지대 | 11(50.0) | 8(36.4) | 3(13.6) | 22(100.0) |
| 계 | 442(44.2) | 302(30.2) | 257(25.7) | 1001(100.0) |

$\chi^2=17.41630$ D.F.=6 Sign.=.0079

*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와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를 합친 것임.

** '약간 많이 발생했다'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를 합친 것임.¹⁴¹⁾

141) 위의 표에서 원래의 카테고리대로 χ^2 -test검정을 하니 빈도수가 5이하인 셀이 너무 많아 rule of five의 문제가 생기므로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셀을 합쳐 분류의 카테고리를 재조정했다.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주택가의 주민들은 범죄가 별로 생기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42.8%인데 비해서, 아파트 지역의 주민들은 50.2%, 상가 및 유흥가 지역 주민들의 경우는 27.8%, 그리고 공장지대의 주민들은 50%가 별로 범죄가 생기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역의 거주지 특성에 따라 범죄발생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아파트나 공장지대는 범죄발생이 일반주택가보다 적게 발생하며, 일관주택가는 상가나 유흥가보다도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거주지 특성에 따른 범죄발생 정도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결과를 고려해 볼 때, 유흥가지역이나 상가지역에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경찰의 순찰활동이나 자율방법활동이 이러한 객관적인 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주지 특성 요인을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범죄발생 정도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특히, 소득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다음 <표 30>은 주민들의 소득수준별 동네의 범죄발생 정도를 분석한 것이다.

<표 30> 소득수준별 동네의 범죄발생정도

| 내 용 | 전혀 발생 하지 않았다 | 별로 발생 하지 않았다 | 보통이다 | 약간 많이 발생했다 | 아주 많이 발생했다 | 계 |
|------------------------|-----------------|-----------------|-----------|---------------|---------------|------------|
| 70만원 이하 | 11(11.2) | 32(32.7) | 24(24.5) | 27(27.6) | 4(4.1) | 98(10.0) |
| 70만원 이상 - 150만원 미만 | 30(6.7) | 181(40.3) | 134(29.8) | 96(21.4) | 8(1.8) | 449(45.7) |
| 15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 23(7.4) | 95(30.4) | 102(32.7) | 72(23.1) | 20(6.4) | 312(31.8) |
|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4(5.8) | 28(40.6) | 20(29.0) | 12(17.1) | 5(7.2) | 69(7.0) |
| 300만원 이상 | 9(16.7) | 20(37.0) | 15(27.8) | 8(14.8) | 2(3.7) | 54(5.5) |
| 계 | 77(7.8) | 356(36.3) | 295(30.0) | 215(21.9) | 39(4.0) | 982(100.0) |

$\chi^2 = 31.06486$ D.F. = 16 Sign. = .0132

위의 표에서 보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들인 월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상인 사람들 중 16.7%가 자신들의 동네에는 전혀 범죄가 생기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사람들인 70만원 이하인 사람들 중 11.2%가 자신들의 동네에는 전혀 범죄가 생기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에, 그 사이의 집단의 경우에는 전혀 범죄가 생기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3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자신들의 동네에 범죄가 약간 많이 발생했다(14.8%)거나 아주 많이 발생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3.7%)을 합하면 18.5%인데 비해서 70만원 이하의 경우 31.7%,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경우 23.2%,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의 경우 29.5%,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24.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주민들이 인식한 바에 따르면, 각 소득계층에 따라 그들의 동네에 범죄가 발생하는 정도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주관적인 서비스 결과

다음으로 경찰의 주관적인 서비스결과는 주민들이 경찰서비스의 결과와 관련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범죄로부터의 안전감과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을 주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결과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 거주지역의 특성, 서비스활동상의 특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요인과의 관련성을 개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가. 동네의 안전성

동네의 안전성은 거주지의 범죄로부터 안전성이라는 측면은 캄캄하게 통행할 때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시민들이 거주하는 동네의 안전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거주지의 범죄 안전성 정도 분석

| 구분 분항 | 일 반 시 민 | | 자율방범단체 참여자 |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아주 안전하다 | 43 | 5.4 | 12 | 4.6 |
| 약간 안전하다 | 159 | 20.2 | 59 | 22.5 |
| 보통이다 | 326 | 41.3 | 112 | 42.7 |
| 약간 안전하지 못하다 | 195 | 24.7 | 63 | 24.0 |
|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 66 | 8.4 | 16 | 6.1 |
| 계 | 789 | 100.0 | 262 | 100.0 |

$\chi^2=2.23347$ D.F.=4 Sign.=.6929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시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5.4%이며, 약간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0.2%인데 비해서 약간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4.7%이며,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8.4%이어서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비슷하다. 이런 현상은 자율방범대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두 집단간에도 동네의 안전성에 있어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인식하는 안전성은 주민들의 생활수준과도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주민들의 생활 수준에 따라 주민들이 인식하는 동네의 안전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은 다음 〈표 32〉와 같다.

〈표 32〉 생활수준별 동네의 안전성 인식의 차이 분석

| 내 용 | 매우 안전하다 | 약간 안전하다 | 보통이다 | 약간 안전하지 못하다 |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 계 |
|------|----------|-----------|-----------|-------------|-------------|-------------|
| 하류층 | 17(10.1) | 34(20.1) | 62(36.7) | 45(26.6) | 11(6.5) | 169(16.8) |
| 중하류층 | 14(3.5) | 81(20.2) | 182(45.4) | 95(23.7) | 29(7.2) | 401(39.9) |
| 중류층 | 10(2.7) | 80(21.6) | 156(42.0) | 95(25.6) | 30(8.1) | 371(36.9) |
| 중상류층 | 10(15.4) | 15(23.1) | 18(27.7) | 14(21.5) | 8(12.3) | 65(6.5) |
| 계 | 51(5.1) | 210(20.9) | 418(41.6) | 249(24.8) | 78(7.8) | 1006(100.0) |

$\chi^2=36.88828$ D.F.=12 Sign.=.0002

*위의 표에서 상류층의 카테고리가 없는 것은 응답자 중 자신이 상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다.

위의 표에서 매우 안전하다거나 약간 안전하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중상류층의 경우 38.5%이며, 중류층은 24.3%, 중하류층은 23.7%, 하류층은 30.2%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안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상류층과 하류층에 많고 중간층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다. 한편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중상류층의 경우 33.8%, 중류층의 경우 30.9%, 중하류층은 33.7%, 하류층은 33.1%로 나타났다. 불안하게 느끼는 비율에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어쨌든, 소득계층에 따라 자신들의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있어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동네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주민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주민들의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른 동네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것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소득수준별 동네의 안전성 인식에 대한 차이 분석

| 내 용 | 매우안전 | 약간안전 | 보 통 | 약간불안전 | 매우불안전 | 계 |
|-----------------------|----------|-----------|-----------|-----------|---------|------------|
| 70만원 이하 | 12(12.1) | 18(18.2) | 39(39.4) | 23(23.2) | 7(7.1) | 99(9.9) |
|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6(3.5) | 94(20.5) | 204(44.5) | 114(24.9) | 30(6.6) | 458(45.9) |
|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12(3.8) | 70(22.2) | 118(37.3) | 86(27.2) | 30(9.5) | 316(31.7) |
|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3(4.3) | 19(27.5) | 32(46.4) | 10(14.5) | 5(7.2) | 69(6.9) |
| 300만원 이상 | 9(16.4) | 9(16.4) | 17(30.9) | 14(25.5) | 6(10.9) | 55(5.5) |
| 계 | 52(5.2) | 210(21.1) | 410(41.1) | 247(24.8) | 78(7.8) | 997(100.0) |

$$\chi^2 = 39.64882 \quad D.F. = 16 \quad \text{Sign.} = .0009$$

위의 표에서 보면,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주민들의 비율을 보면 70만원이하의 경우 12.1%이며, 300만원 이상의 경우 16.4%인데 비해서 그 중간 그룹의 경우 그 비율이 월등히 낮다.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하거나 약간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70만원이하는 30.3%,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경우 24.0%, 1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경우 26.0%,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의 경우 31.8%, 300만원 이상의 경우 32.8%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소득이 높거나 낮은 집단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동네가 비교적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중간 그룹의 경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70만원 이하인 경우 30.3%,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31.5%, 150만원이상 250만원 미만의 경우 36.7%,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21.7%, 300만원 이상의 경우 36.4%로 나타나서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불안하게 생각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각 소득 계층에 따라 자신들의 동네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들이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 범죄로부터 어느 정도로 안전한가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정리한 것은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생활수준별 야간귀가의 안전성 비교

| 내 용 | 매우안전 | 약간안전 | 보통이다 | 약간불안전 | 매우불안전 | 계 |
|------|---------|-----------|-----------|-----------|-----------|-------------|
| 하류층 | 4(2.4) | 22(13.0) | 55(32.5) | 61(36.1) | 27(16.0) | 169(16.9) |
| 중하류층 | 4(1.0) | 62(15.7) | 127(32.1) | 144(36.4) | 59(14.9) | 396(39.5) |
| 중류층 | 9(2.4) | 47(12.6) | 109(29.3) | 143(38.4) | 64(17.2) | 372(37.1) |
| 중상류층 | 9(13.8) | 13(20.0) | 16(24.6) | 15(23.1) | 12(18.5) | 65(6.5) |
| 계 | 26(2.6) | 144(14.4) | 307(30.6) | 363(36.2) | 162(16.2) | 1002(100.0) |

$$\chi^2=44.42441 \quad D.F.=12 \quad \text{Sign.}=.0000$$

위의 표에서 보면, 중상류층의 경우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13.8%로서 다른 계층에 비해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그 외의 계층들은 서로 비슷하며,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하거나 약간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합하면 중상류층은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33.8%를 차지하며, 나머지 계층은 거의 15~16%를 나타내고 있다.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중상류층은 41.6%인데 비해 중류층은 55.6%, 중하류층은 51.3%, 하류층은 52.1%로 나타나서 중상류층의 주민들 중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01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귀가시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에는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다음 <표 35>는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 성별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감에 대한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표 35> 성별에 따른 야간귀가의 안전성 비교

| 내 용 | 매우안전 | 약간안전 | 보통이다 | 약간불안전 | 매우불안전 | 계 |
|-----|---------|-----------|-----------|-----------|-----------|-------------|
| 남 자 | 19(2.8) | 96(14.3) | 213(31.7) | 255(37.9) | 89(13.2) | 672(65.9) |
| 여 자 | 8(2.3) | 50(14.4) | 100(28.7) | 114(32.8) | 76(21.8) | 348(34.1) |
| 계 | 27(2.6) | 146(14.3) | 313(30.7) | 369(36.2) | 165(16.2) | 1020(100.0) |

$\chi^2=13.07396$ D.F.=4 Sign.=.0109

위의 표에서 보면, 야간 귀가시에 매우 안전하거나 약간 안전하다고 응답한 남자들의 비율은 17.1%이며 여자들의 비율은 16.7%로 나타나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으며, 동시에, 전혀 안전하지 못하거나 약간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남자들은 51.1%이며, 여자들의 경우는 54.6%로 나타나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남자들의 경우 13.2%인데 비해 여자들의 경우는 21.8%로 나타나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야간 귀가시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주거유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는 <표 36>에 제시되어 있다.

<표 36> 거주지 유형별 야간귀가의 안전성 인식 비교

| 내 용 | 매우안전 | 약간안전 | 보통이다 | 약간불안전 | 매우불안전 | 계 |
|--------|---------|-----------|-----------|-----------|-----------|-------------|
| 일반주택가 | 13(2.3) | 79(13.8) | 173(30.3) | 212(37.1) | 94(16.5) | 571(56.4) |
| 아파트단지 | 11(3.3) | 58(17.5) | 105(31.7) | 100(30.2) | 57(17.2) | 331(32.7) |
| 상가및유흥가 | 1(1.2) | 5(6.0) | 25(30.1) | 42(50.6) | 10(12.0) | 83(8.2) |
| 공장지대 | 1(3.7) | 2(7.4) | 13(48.1) | 10(37.0) | 1(3.7) | 27(2.7) |
| 계 | 26(2.6) | 144(14.2) | 316(31.2) | 364(36.0) | 162(16.0) | 1012(100.0) |

$\chi^2=23.70498$ D.F.=12 Sign.=.0223

이 표에서 보면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20.8%로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주택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로서 그 비율이 16.1%이며, 공장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상가 및 유흥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각각 11.1%와 7.2%로서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밤늦게 귀가시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라 시민들이 인식하는 안전성에 대한 비교 분석한 것은 <표 37>에 제시되어 있다.

<표 37> 소득수준별 야간귀가의 안전성 인식 비교

| 내 용 | 매우안전 | 약간안전 | 보통이다 | 약간불안전 | 매우불안전 | 계 |
|-----------------------|---------|-----------|-----------|-----------|-----------|------------|
| 70만원 이하 | 3(3.1) | 16(16.3) | 34(34.7) | 36(36.7) | 9(9.2) | 98(9.9) |
|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7) | 62(13.6) | 144(31.5) | 175(38.3) | 73(16.0) | 457(46.0) |
|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7(2.2) | 44(14.0) | 100(31.8) | 107(34.1) | 56(17.8) | 314(31.6) |
|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4(5.8) | 13(18.8) | 21(30.4) | 23(33.3) | 8(11.6) | 69(6.9) |
| 300만원 이상 | 8(14.5) | 6(10.9) | 8(14.5) | 18(32.7) | 15(27.3) | 55(5.5) |
| 계 | 25(2.5) | 141(14.2) | 307(30.9) | 359(36.2) | 161(16.2) | 993(100.0) |

$$\chi^2=58.20067 \quad D.F.=16 \quad \text{Sign.}=.0000$$

위의 표에서 보면,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300만원 이상인 주민들의 경우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14.5%인데 비해서 나머지 그룹들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다. 그런데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도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주민들의 경우에 가장 높아 그 비율이 60.0%가 된다. 이에 비해 70만원 이하 그룹의 경우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45.9%이며,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54.3%로 나타났으며, 1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경우 51.9%, 2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경우 44.9%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야간에 귀가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인식에서 있어서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은 여러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으나 순찰활동과 범인검거와 관련한 측면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측면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일반시민들은 순찰활동이나 범인 검거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듣는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경찰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나 불만이라는 어떤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경찰서비스에 대한 태도는 서비스 자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1) 순찰활동에 대한 만족감

먼저,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일반시민들과 주민단체 참여자 사이에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8>과 같다.

<표 38> 자율방범단체 참여 여부에 따른 경찰 순찰활동의 만족도 비교

| 문항 | 구분 | 일 반 시 민 | | 자율방범활동 참여자 | |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아주 만족한다 | | 37 | 4.7 | 21 | 8.0 |
| 약간 만족한다 | | 106 | 13.5 | 58 | 22.1 |
| 보통이다 | | 310 | 39.6 | 112 | 42.7 |
| 약간 불만이다 | | 184 | 23.5 | 57 | 21.8 |
| 아주 불만이다 | | 90 | 11.5 | 9 | 3.5 |
| 모르겠다 | | 56 | 7.2 | 5 | 1.9 |
| 계 | | 783 | 100.0 | 262 | 100.0 |

$$\chi^2 = 36.52790 \quad D.F. = 5 \quad \text{Sign.} = .0000$$

위의 표에서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만족도를 보면 아주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응답자 783명중 37명인 4.7%로 나타났으며, 약간 만족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06명인 13.5%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아주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응답자 262명 중 21명으로서 8.0%, 약간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 58명으로서 22.1%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의 만족자들의 비율이 18.2%인데 비해 자율방법활동 참여자들의 경우 30.1%로 나타나서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불만을 느낀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에 있어서도 일반 시민들에 비해 자율방법활동 참여자들의 비율이 훨씬 적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자율방법활동의 참여는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높여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들이 경찰의 순찰활동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거나 혹은 경찰의 순찰활동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태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태도가 경찰 전반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구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만족감과 주민들의 생활 수준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생활수준별 경찰 순찰활동에 대한 만족도

| 내 용 | 아주만족 | 약간만족 | 보통이다 | 약간불만 | 아주불만 | 계 |
|------|----------|-----------|-----------|-----------|----------|------------|
| 하류층 | 15(9.7) | 28(18.1) | 75(48.4) | 32(20.6) | 5(3.2) | 155(16.5) |
| 중하류층 | 18(4.8) | 57(15.2) | 159(42.5) | 105(28.1) | 35(9.4) | 374(39.8) |
| 중류층 | 12(3.4) | 59(16.9) | 150(42.9) | 82(23.4) | 47(13.4) | 350(37.2) |
| 중상류층 | 10(16.4) | 11(18.0) | 21(34.4) | 12(19.7) | 7(11.5) | 61(6.5) |
| 계 | 55(5.9) | 155(16.5) | 405(43.1) | 231(24.6) | 94(10.0) | 940(100.0) |

$\chi^2 = 37.61027$ D.F. = 12 Sign. = .0002

위의 표에서 보면, 중상류층의 경우 순찰활동에 대해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16.4%인데 비해서 중류층은 3.4%, 중하류층은 4.8%, 하류층은 9.7%가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아주 불만이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중류층이 13.4%로서 가장 높고, 중상류층의 경우 11.5%, 중하류층은 9.4%, 하류층은 3.2%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상류층은 아주 만족을 느끼는 사람도 많은 데 비해서 아주 불만을 느끼는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으며, 중류층의 경우 아주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적은데 비해서 아주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처럼 시민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만족감이나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의 순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거주지 유형별로 분석하면 다음 <표 40>과 같다.

<표 40> 거주지유형별 경찰 순찰활동의 만족도 비교

| 내 용 | 아주만족 | 약간만족 | 보통이다 | 약간불만 | 아주불만 | 계 |
|----------|---------|-----------|-----------|-----------|----------|------------|
| 일반주택가 | 26(4.8) | 88(16.2) | 236(43.5) | 146(26.9) | 46(8.5) | 542(57.0) |
| 아파트단지 | 25(8.2) | 51(16.7) | 119(39.0) | 68(22.3) | 42(13.8) | 305(32.1) |
| 상가 및 유흥가 | 5(6.3) | 11(13.9) | 36(45.6) | 19(24.1) | 8(10.1) | 79(80.3) |
| 공장지대 | | 4(16.0) | 19(76.0) | 2(8.0) | | 25(2.6) |
| 계 | 56(5.9) | 154(16.2) | 410(43.1) | 235(24.7) | 96(10.1) | 951(100.0) |

$\chi^2 = 25.89234$ D.F. = 12 Sign. = .0111

위의 표에서 보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중 아주 만족을 느끼거나 약간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을 합하면 24.9%로서 일반주택가의 경우 21.0%, 상가 및 유흥가의 경우 6.3%에 비해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36.1%)은 거의 비슷하게 많다. 이러한 차이는 아파트, 일반주택가, 상가 및 유흥가 사이에 주민들의 만족이나 불만은 커다란 차이가 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장지대의 경우 만족과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고 76.0%나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의 순찰활동이 보통이라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민들의 거주지 유형에 따라 순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5

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경찰의 범인수사 및 체포활동에 대한 만족감

경찰의 범인 수사 및 체포에 대한 만족감은 실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신문이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범인검거활동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도 있고, 직접 경험하거나 이웃의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형성할 수도 있으며, 경찰전반에 대한 태도가 그대로 형성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러한 태도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까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주민과 자율방법참여자 사이에 차이가 나타내, 소득수준, 학력 등의 요인에 의해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경찰의 범인검거활동과 관련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일반시민과 자율방법대 참여자 사이에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것은 다음 <표 41>과 같다.

<표 41> 자율방법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경찰의 범인검거활동 만족도 비교

| 분류 | 구분 | 일반 시민 | | 자율방법활동 참여자 | |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 아주 만족한다 | 26 | 3.3 | 12 | 4.6 |
| | 약간 만족한다 | 99 | 12.7 | 50 | 19.2 |
| | 보통이다 | 349 | 44.8 | 104 | 39.8 |
| | 약간 불만이다 | 152 | 20.8 | 69 | 26.4 |
| | 아주 불만이다 | 81 | 10.4 | 17 | 6.5 |
| | 모르겠다 | 62 | 8.0 | 9 | 3.5 |
| | 계 | 779 | 100.0 | 261 | 100.0 |

$\chi^2=19.38309$ D.F.=5 Sign.=.0016

위의 표에서 경찰의 범인 수사 및 체포와 관련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보면, 일반시민들의 경우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779명 중 26명으로 3.3%이며,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779명 중 99명으로서 12.7%에 이르고 있어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16.0%이다. 이에 비해 자율방법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주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 261명 중 12명인 4.6이며,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61명 중 50명으로서 19.2%로 나타나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23.8이다. 또한 아주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에 있어서도 일반시민들의 경우 10.4인데 비해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6.5%로 나타나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은 경찰의 범인 검거 및 체포와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에 비해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경찰의 범인 수사 및 체포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표 42)와 같다.

〈표 42〉 소득수준별 경찰의 범인검거활동 만족도 비교

| 내 용 | 아주만족 | 약간만족 | 보통이다 | 약간불만 | 아주불만 | 계 |
|-----------------------|---------|-----------|-----------|-----------|----------|------------|
| 70만원 이하 | 4(4.8) | 14(16.7) | 43(51.2) | 16(19.0) | 7(8.3) | 84(9.1) |
|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7(4.0) | 64(15.0) | 204(47.9) | 104(24.4) | 37(8.7) | 426(46.3) |
|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1(3) | 49(16.8) | 136(46.7) | 69(23.7) | 36(12.4) | 291(31.6) |
|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2(3.0) | 10(15.2) | 28(42.4) | 20(30.3) | 6(9.1) | 66(7.2) |
| 300만원 이상 | 8(14.8) | 7(13.0) | 18(33.3) | 15(27.8) | 6(11.1) | 54(5.9) |
| 계 | 32(3.5) | 144(15.6) | 429(46.6) | 224(24.3) | 92(10.0) | 921(100.0) |

$$\chi^2 = 37.43942 \quad D.F. = 16 \quad \text{Sign.} = .0018$$

위의 표에서 보면,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경찰의 범인 검거활동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14.8%이며, 약간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13.0%로서 전체 27.8%가 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18.2%,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의 경우 17.1%,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경우 18.8%, 그리고 70

만원 이하의 경우 26.1%로 나타나서 소득 계층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소득이 높음에 따라 만족도가 높거나 혹은 반대로 소득이 높으면 만족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중간층의 만족도가 낮은 소위 U형(reversed bell shape)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불만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70만원 미만의 경우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낮다. 이러한 소득계층간에 경찰의 범인 검거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에 따른 경찰의 범인 검거활동에 대한 만족도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 (표 43)과 같다.

(표 43) 학력별 경찰의 범인검거활동에 대한 만족도 비교

| 내 용 | 아주만족 | 약간만족 | 보통이다 | 약간불만 | 아주불만 | 계 |
|------|---------|-----------|-----------|-----------|----------|------------|
| 초등학교 | 4(8.9) | 5(11.1) | 17(37.8) | 12(26.7) | 7(15.6) | 45(4.8) |
| 중학교 | 8(5.1) | 36(23.1) | 80(51.3) | 22(14.1) | 10(6.4) | 156(16.8) |
| 고등학교 | 15(3.3) | 67(14.7) | 211(46.3) | 124(27.2) | 39(8.6) | 456(49.1) |
| 전문대학 | 3(2.7) | 12(10.6) | 54(47.8) | 25(22.1) | 19(16.8) | 113(12.2) |
| 대학교* | 2(1.3) | 26(16.5) | 73(46.2) | 40(25.3) | 17(10.8) | 158(17.0) |
| 계 | 32(3.4) | 146(15.7) | 435(46.9) | 223(24.0) | 92(9.9) | 928(100.0) |

$\chi^2=35.75214$ D.F.=16 Sign.=.0031

*대학원 졸업자의 비율이 적어 대학졸업자에 포함시켰음

위의 표에서 보면, 경찰의 범인 검거활동과 관련하여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20.0%, 중학교 졸업자의 경우 28.2%,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18.0%, 전문대학 졸업자의 경우 13.3%, 대학졸업자의 경우 17.8%로 나타나서 중학교 졸업자들의 경우 만족자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가장 낮다. 불만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학교 졸업자들의 경우 20.5%,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경우 35.8%, 전문대학졸업자들의 경우 38.9%, 대학졸업자들의 경우 36.1%, 초등학교 졸업자들의 경우 20.4%로 나타나서 주민들의 학력에 따라 만족이나 불만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

는 통계적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전반적인 경찰서비스 만족도

경찰서비스는 다양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경찰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주민들의 특성을 관련시켜 분석한 결과 자율방범활동 참여 여부, 주민들의 거주지 유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자율방범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경찰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하면 다음 <표 44>와 같다.

<표 44> 자율방범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전반적인 경찰서비스 만족도 비교

| 구분 분항 | 일 반 시 민 | | 자율방범활동 참여자 |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아주 만족스럽다 | 20 | 2.5 | 16 | 6.1 |
| 약간 만족스럽다 | 105 | 13.3 | 44 | 16.9 |
| 보통이다 | 335 | 42.5 | 119 | 45.6 |
| 약간 불만이다 | 168 | 21.3 | 61 | 23.4 |
| 아주 불만이다 | 95 | 12.0 | 16 | 6.1 |
| 모르겠다 | 66 | 8.4 | 5 | 1.9 |
| 계 | 789 | 100.0 | 261 | 100.0 |

$$\chi^2 = 28.51542 \quad D.F. = 5 \quad \text{Sign.} = .0000$$

위의 표에서 전반적인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6.1%, 약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16.9%로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23.0%인데 비해서, 일반시민들의 경우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5%이며, 약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13.3%로 나타나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15.8%이다. 또한 자율방범활동 참여자들의 경우 아주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6.1%인데 비해 일반시민들의 경우 12.0%로 나

타나 일반주민들과 자율방범활동 참여자들 사이에 경찰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에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거주지 유형에 따른 경찰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표 45> 거주지 유형별 전반적인 경찰서비스 만족도 비교

| 내 용 | 아주만족 | 약간만족 | 보통이다 | 약간불만 | 아주불만 | 계 |
|----------|---------|-----------|-----------|-----------|-----------|------------|
| 일반주택가 | 13(2.4) | 83(15.6) | 252(47.4) | 128(24.1) | 56(10.5) | 532(56.2) |
| 아파트단지 | 14(4.5) | 49(15.8) | 130(41.9) | 72(23.2) | 45(14.5) | 310(32.7) |
| 상가 및 유흥가 | 5(6.3) | 10(12.7) | 38(48.1) | 19(24.1) | 7(8.9) | 79(8.3) |
| 공장지대 | | 3(11.5) | 21(80.8) | 2(7.7) | | 26(2.7) |
| 계 | 32(3.4) | 145(15.3) | 441(46.6) | 221(23.3) | 108(11.4) | 947(100.0) |

$\chi^2=23.50329$ D.F.=12 Sign.=.0237

위의 표에서 보면,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주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4.5%이며 약간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15.8%로 나타나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20.3%이다. 반면에, 일반주택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2.4%와 15.6%로 나타나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18.0%로서 별로 차이가 나지 않지만 공장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주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으며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3명으로서 그 비율이 11.5%이다. 이런 현상은 불만의 경우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공장지대의 경우 아주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은 없고 약간 불만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이처럼 주민들의 거주지 유형에 따른 경찰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이나 불만에 대한 비율에 있어 차이가 나며 이런 차이는 통계적 유의 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으로,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른 시민들의 전반적인 경찰서비스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소득수준별 전반적인 경찰서비스 만족도 비교

| 내 용 | 아주만족 | 약간만족 | 보통이다 | 약간불만 | 아주불만 | 계 |
|-----------------------|---------|-----------|-----------|-----------|-----------|------------|
| 70만원 이하 | 7(8.2) | 15(17.6) | 43(50.6) | 10(11.8) | 10(11.8) | 85(9.2) |
|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2(2.8) | 58(13.6) | 209(48.9) | 107(25.1) | 41(9.6) | 427(46.0) |
|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 6(2.0) | 51(17.2) | 128(43.2) | 71(24.0) | 40(13.5) | 296(31.9) |
|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1.5) | 10(14.7) | 32(47.1) | 14(20.6) | 11(16.2) | 68(7.3) |
| 300만원 이상 | 6(11.5) | 7(13.5) | 20(38.5) | 17(32.7) | 2(3.8) | 52(5.6) |
| 계 | 32(3.4) | 141(15.2) | 432(46.6) | 219(23.6) | 104(11.2) | 928(100.0) |

$$\chi^2 = 36.72357 \quad D.F. = 16 \quad \text{Sign.} = .0023$$

위의 표에서 전반적인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300만원 이상의 경우 아주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11.5%이며, 약간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13.5%로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이 24.8%로 나타난 반면,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1.5%와 14.7%로 나타나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16.2%로 나타났다. 또한 150만원이상 250만원 미만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2.0%와 17.2%로 나타나서 만족자의 비율이 19.2%,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2.8%와 13.6%로서 만족자의 비율이 16.4%, 70만원 이하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8.2%와 17.6%로 나타나서 만족자의 비율이 25.8%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면 아주 소득이 높은 층과 아주 소득이 낮은 층의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고 소득이 중간층인 경우 만족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전반적인 경찰서비스에 대해 아주 불만스럽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도 3.8%로서 150만원이상 250만원 이하의 사람들의 경우 그 비율이 16.2%로 나타나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경찰서비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앞에서 경찰서비스 결과와 주민들의 특성을 관련시켜 분석하였다. 주민들의 여러 가지 특성이 주민들의 안전감 및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두 변수 간의 관련성은 다른 제3의 변수에 의해 허위적인 관계일 수도 있으며, 혹은 그 관계가 과다하게 분석되었거나 과소하게 분석되었을 수도 있다. 여기서는 이들 변수들을 동시에 관련시켜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에 앞서 모형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주요변수의 신뢰도 분석결과는 〈부록표 2〉에 제시되어 있다.

1. 주민 안전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주민들의 안전감은 그 지역의 범죄발생정도, 시민들의 범죄피해 경험이나 피해정도, 시민들의 각종 유형의 자율방범활동여부, 자율방범단체 참여 여부, 동네 주민단체의 자율방범활동정도, 주민들이 서로 아는 정도, 그리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¹⁴²⁾

여기서 사용된 ‘주민들의 안전감’의 측정값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도’(설문 7번 문항)와 ‘자녀들이 밤 늦게 귀가하는 경우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정도’(설문 8번 문항)를 통해 측정한 평균값이다. 그 지역의 범죄발생정도는 객관적인 측정치를 통해 측정할 수도 있으나 연구의 성격과 규모 때문에 응답자의 범죄발생정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범죄의 피해경험은 설문을 통한 범죄피해경험 유무(설문 문항 2번)를 통해 측정하고, 범죄의

142) 여기서 사용되는 사회경제적 변수는 앞에서 분석한 집단 간의 차이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에서 사회경제적 변수 중 연속적인 변수(예를 들면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라 하더라도 종속변수(예: 안전감과 만족도) 사이의 관계가 선형으로 나타나지 않았는 경우 이들 변수들을 모조변수(dummy variable)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피해정도는 개인이 경험한 각종 범죄에 그 가중치를 고려하여 계산한 값을 통해 측정하였다.¹⁴³⁾ 시민들의 각종 유형의 자율방범활동여부는 설문문항 1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자율방범활동실시 여부의 모조변수를 설정하였다.

동네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정도는 각 구청에서 평가한 것으로서 자율방범활동이 잘 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한 모조변수를 사용한 것이다. 주민들의 친밀성은 주민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정도로서 설문 9번 문항의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변수는 모두 모조변수를 사용하였다. 왜냐하면 앞에서 경찰서비스 결과와 사회경제적 변수 사이의 관련성 분석에서 이들 변수들이 경찰서비스의 결과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은 있으나 선형의 관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주민들의 안전감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들 변수들 사이에 다공선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각 독립변수들 사이의 관련성을 검토하였으나 서로 높은 상관성을 갖는 변수들은 없었다.¹⁴⁴⁾

이들 변수들을 사용하여 주민들의 안전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찾아 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47>이다.

143) 범죄의 가중치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단순절도를 10으로 할 때 야간주거침입절도 20, 폭행 11, 청소년폭력 23, 강도 34, 살인 55, 강간 24, 차량도난 15, 기타경범죄 5로 설정하였다. 김인, 공공서비스 배분의 결정요인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p. 135. 위의 범죄유형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자동차 절도의 가중치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가중치와 단순절도의 가중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144) JY Taro Yamane, *Statistics: an Introductory Analysis* (3rd ed.), New York: Harper International Edition, 1973, p. 1012. 다공선성의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독립변수들이 통계적으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다공선성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사자는 부가적인 자료를 더 구해야 한다.

②노화준, 행정계량분석, (서울:법문사), p. 399.

〈표 47〉 주민 안전감의 영향 요인 분석 (I)

| 변 수 | B | SE B | Beta | P |
|------------------|----------|-------------|---------|-------|
| 거주지유형(공장지대 및 기타) | -.77674 | .36445 | -.08755 | .0336 |
| 성 별 | -.17854 | .07708 | -.09505 | .0210 |
| 주민간의 친밀성 정도 | .22386 | .03823 | .24216 | .0000 |
| 개인의 범죄피해정도 | -.01390 | 5.77406E-03 | -.10170 | .0164 |
| 자율방범활동 부실지역 | -.18448 | .07678 | -.09930 | .0167 |
| 1년간 동네의 범죄발생 정도 | -.30145 | .03864 | -.33254 | .0000 |
| 소득수준(300만원 이상) | .37019 | .16727 | .09119 | .0274 |
| CONSTANT | -7.24644 | 2.28644 | | .0016 |

$R^2 = .25938$, Adjusted $R^2 = .24773$, Sign. = .0000

위의 회귀분석표에서 보면, 주민들의 안전감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민들이 인식하는 지난 1년간의 동네의 범죄발생정도($\beta = -.33254$)이다. 즉, 동네에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안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익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두 번째 중요한 변수는 주민들 간의 친밀성($\beta = .24216$)이다. 즉, 주민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면 지낼수록 안전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세 번째 중요한 변수는 범죄피해정도($\beta = -.10170$)이다. 즉, 보다 심각한 범죄나 보다 많은 건수의 범죄로부터 피해된 경우 안전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방범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의 유무($\beta = -.09930$)이다. 즉, 동네의 주민자율방범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는 그렇지 않은 동네보다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느끼고 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성별($\beta = -.09505$)이다. 즉 여자는 남자보다 안전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라는 변수($\beta = .09119$)이다.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보다 안전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일곱 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공장지대와 기타지역이라는 주거지역 변수($\beta = -.08755$)이다. 즉, 공장지대와 기타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덜 안전하게 느낀다는 것이다. 이상의 여러 변수들을 포함한 회귀모형을 통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감을 25.9% 정도 설명할 수 있다.

2. 주민들의 경찰서비스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경찰서비스의 만족감은 서비스의 객관적인 결과로서 범죄발생정도와 범죄의 피해정도, 개인의 범죄피해경험 유무, 각종 유형의 자율방법활동, 정치적 효능감, 사회경제적 특성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여기서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변수는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바처럼 경찰서비스의 만족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행정기관에 건의하면 반영시켜줄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설문 문항14번)와 시행정의 능률성에 대한 인식(설문 문항 15번), 그리고 정부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설문 문항16번)의 평균 값을 통해 측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경찰서비스 만족감을 설명하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들 변수들 사이에 다공선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각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으나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은 없었다. 경찰서비스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8>과 같다.

<표 48> 경찰서비스 만족감의 영향 요인 분석(I)

| 변 수 | B | SE B | Beta | P |
|------------------------|----------|-------------|---------|-------|
| 개인의 범죄피해정도 | -.01488 | 5.08593E-03 | -.11814 | .0037 |
| 소득수준(7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 -.08903 | .06963 | -.05168 | .2018 |
|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 -.15460 | .06921 | -.08847 | .0261 |
| 정부활동에 대한 주민의 태도 | .45879 | .04946 | .41523 | .0000 |
| 불심검문 및 연행경험(무) | .45133 | .09972 | .17621 | .0000 |
| 거주지 유형(아파트) | -.12721 | .06996 | -.07393 | .0698 |
| 소득수준(300만원 이상) | .35857 | .14574 | .10350 | .0144 |
| 주민 안전감 | .24171 | .03937 | .27121 | .0000 |
| CONSTANT | -7.14188 | 2.02082 | | .0005 |

$R^2 = .47136$, Adjusted $R^2 = .45938$, Sign. = .0000

위의 표에서 보면, 경찰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정치적 효능감($\beta=.41523$)이다. 즉, 정부의 활동이 능률적이고, 자신들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찰서비스가 법시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에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변수가 영향을 중요하게 미치는 것은 미국에서의 연구나 한국에서의 다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¹⁴⁵⁾ 두 번째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주민들의 안전감($\beta=.27121$)이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불심검문 및 연행경험 유무이다($\beta=.17621$). 즉, 불심검문 및 연행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서비스만족에 관한 다른 연구에서는 경찰에 대한 불심검문이나 연행 경험과 같은 요인이 경찰서비스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⁴⁶⁾ 네 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범죄의 피해정도($\beta=-.11814$)이다. 즉, 각종 범죄의 심각성과 건수를 고려해 볼 때 범죄피해지수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145) 1 김인, 공공서비스 배분의 결정요인과 형평성, 서울대학교, 1986. p. 161.

2 Elinor Ostrom, Rodger B. Parks, Stephen L. Percy and Gordon P. Whitaker, "Evaluating Police Organization", *Public Productivity Review*, (Spring 1979). Mark S. Rosentraub and Lyke Thompson, "The Use of Surveys of Satisfaction for Evaluations", *Policy Studies Journal*, Vol.9, (Summer 1981), pp. 990-998.

3 R. Fitzgerald and Robert T. Durant "Citizen Evaluations and Urban Management: Service Delivery in an Era of Protest",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0, (Nov./Dec. 1980), pp.584-594.

4 Mark S. Rosentraub and Lyke Thompson, "Bureaucratic Discretion and Surveys of Citizen Satisfaction", in Richard C. Rich (ed.), *Analyzing Urban Service Distributions*, (Lexington : D.C. Heath and Company, 1982), p.180.

146) 1 김인, 전지방 행정 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구와 포항지역을 중심으로, 지방화와 정책과제, (계명대학교 부설 사회과학연구소, 1986), pp. 155-156.

2 Karin Brown and Philip B. Coulter, 'Subjective and Objective Measures of Public Service Delive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3, (Jan./Feb.1983), pp. 50-58.

로 중요한 변수는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인가 아닌가의 변수 ($\beta=.10350$)이다. 또한 앞서서도 분석된 바처럼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찰서비스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경찰서비스 만족에 관한 위의 연구에서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관계가 선형이라기 보다는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 보다 높거나 낮은 비선형의 관계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거주지역이 아파트인가 아닌가의 변수($\beta=-.07393$)이다. 즉, 주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비해 경찰서비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수준($p.v.=.0698$)이 다소 높다. 그 외의 소득계층으로서 7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의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여러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회귀모형은 경찰서비스의 만족감을 45.9% 설명하고 있어 상당히 설명력이 높다.

집단적 적극적인 자율방범활동인 자율방범단체 참여를 통한 활동이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도 경찰서비스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자율방범단체 참여 여부를 회귀모형에 포함시켜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9>와 같다.

<표 49> 경찰서비스 만족감의 영향 요인 분석(Ⅱ)

| 변 수 | B | SE B | Beta | P |
|------------------|----------|--------|---------|-------|
| 정부활동에 대한 주민의 태도 | .41239 | .03739 | .38254 | .0000 |
| 불심검문 및 연행경험(무) | .43884 | .09120 | .15619 | .0000 |
|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 -.13841 | .05500 | -.08063 | .0121 |
| 동네의 1년간 범죄 발생 정도 | -.04732 | .02925 | -.05749 | .1063 |
| 소득수준(300만원 이상) | .19168 | .10207 | .06190 | .0551 |
| 주민 안전감 | .24027 | .03424 | .26028 | .0000 |
| 주민자율방범단체(미가입) | -.17495 | .05749 | -.09934 | .0025 |
| 범죄피해경험(무) | .09369 | .06655 | .04591 | .1579 |
| CONSTANT | -1.32740 | .18523 | .0000 | |

$R^2=.38792$, Adjusted $R^2=.37991$, Sign=.0000

위의 <표 49>에서 보면,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정치적 효능감과 같은 정부 활동에 대한 태도, 주민들의 안점감, 불심검문 및 연행경험 유무 등의 변수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아울러, 주민자율방법단체 참여 여부는 소득수준, 거주지 유형, 범죄발생정도, 정치적 태도 등 경찰서비스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통계적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9934$). 따라서 집단적 적극적인 자율방법활동인 주민자율방법단체에 참여하는 것은 경찰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갖게 하는 데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제 6 장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 방안 분석

제 1 절 자율방범활동의 정도와 관련 요인 분석

제4장에서 자율방범활동의 실태를 통해 각 유형의 자율방범활동들을 살펴 본 바 있다. 이러한 활동 중 특히 주민자율방범단체의 활동을 통한 자율방범활동이 서비스 결과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5장에서 고찰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율방범단체의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시켜야만 경찰서비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자율방범단체의 자율방범활동(이하에서는 자율방범활동이라 지칭한다)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심도, 주민들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성 등과 자율방범활동의 정도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자율방범활동의 적극성 정도를 잘 설명하는 변수를 찾아 보고자 하며, 끝으로 자율방범단체의 참여자와 시민들이 인식하는 자율방범단체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과 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자율방범단체 참여자와 일반시민들 사이에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심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주민들의 자율방범단체에의 참여 여부와 관련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0>과 같다.

<표 50> 자율방범활동 참여 여부별 주민 자율방범활동 관심도 비교

| 분향 | 구분 | 일 반 시 민 | | 자율방범활동 참여자 | |
|----|-----------|---------|-------|------------|-------|
| | | 빈도(명) | 비율(%) | 빈도(명) | 비율(%) |
| | 아주 관심이 많다 | 133 | 17.2 | 131 | 50.0 |
| | 약간 관심이 있다 | 280 | 36.1 | 78 | 29.8 |
| | 보통이다 | 224 | 28.9 | 40 | 15.3 |

| | | | | |
|-----------|-----|-------|-----|-------|
| 별로 관심이 없다 | 122 | 15.7 | 13 | 5.0 |
| 전혀 관심이 없다 | 16 | 2.1 | | |
| 모르겠다 | | | | |
| 계 | 775 | 100.0 | 262 | 100.0 |

$\chi^2=122.42347$ D.F.=4 Sign.=.0000

위의 표에서 보면, 자율방법활동 참여자들 중에서는 전체 262명 중 131명인 50.0%가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78명인 29.8%는 약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응답자 중 79.8%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반시민들 중 자율방법활동에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 775명 중 133명인 17.2%이며, 약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280명으로서 36.1%로 나타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비율이 53.3%이다. 이러한 비율은 자율방법단체 참여자들에 비해서는 작지만 우리사회의 문화와 전통 등의 분위기와 관련해 본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관심이 아주 없다고 응답한 자율방법대 참여자들은 없으며,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2.1%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법대 사이에는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은 연령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연령별 자율방법대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한 것은 다음 <표 51>과 같다.

<표 51> 연령별 자율방법 활동에 대한 관심도 비교

| | 관심이 많다 | 보통이다 | 관심이 없다 | 계 |
|--------|-----------|-----------|-----------|------------|
| 20대 이하 | 23(34.8) | 21(31.8) | 22(33.3) | 66(6.7) |
| 30대 | 210(60.3) | 87(25.0) | 51(14.7) | 348(35.2) |
| 40대 | 209(63.7) | 76(23.2) | 43(13.1) | 328(33.2) |
| 50대 | 125(66.5) | 46(24.5) | 17(9.0) | 188(19.0) |
| 60대 이상 | 33(55.9) | 17(28.8) | 9(15.3) | 59(6.0) |
| 계 | 600(60.7) | 247(25.0) | 142(14.4) | 989(100.0) |

$\chi^2=31.72387$ D.F.=8 Sign.=.0001

위의 표에서 보면, 자율활동에 대한 관심은 50대와 40대, 30대, 20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내며, 60대도 비교적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20대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령에 따른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은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성별과 관련시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2>와 같다.

<표 52> 성별에 따른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도 비교

| | 아주 관심이 많다 | 약간 관심이 있다 | 보통이다 | 별로 관심이 없다 | 전혀 관심이 없다 | 계 |
|-----|--------------|--------------|-----------|--------------|--------------|-------------|
| 남 자 | 196(29.3) | 239(35.8) | 144(21.6) | 77(11.5) | 12(1.8) | 668(66.1) |
| 여 자 | 63(18.4) | 111(32.4) | 113(32.9) | 52(15.2) | 4(1.2) | 343(33.9) |
| 계 | 259(25.6) | 350(34.6) | 257(25.4) | 129(12.8) | 16(1.6) | 1011(100.0) |

$$\chi^2 = 25.89297 \quad D.F. = 4 \quad \text{Sign.} = .0000$$

위의 표에서 보면, 자율방법활동에 대해 아주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남자들의 비율은 29.3%이며 약간 많다고 응답한 남자들은 35.8%로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남자들은 65.1%인데 비해, 아주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여자들은 18.3%이며 약간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여자들은 32.4%로서 50.8%이다. 이와 같이 성별에 따라서도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에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다. 이것은 자율방법활동이 여자들이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지 모른다. 그러나 자율방법활동에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므로 여자들에게도 깊은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응답자들 중에서 자율방법활동에 아주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 중에 한 명 꼴이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60.2%이다.

자율방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방법 활동에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유인책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

적, 자율방법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들이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와 관련 요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 중에서 주변들의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정도가 중요하다.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와 자율방법단체에 참여하는 정도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것은 다음 <표 53>과 같다.

<표 53>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정도와 활동정도와의 관련성 분석

| 내 용 | 1주일에 여러 번 | 1주일에 한 번 | 2주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분기별로 한 번 | 계 |
|-------|--------------|-------------|-------------|-------------|-------------|------------|
| 아주 많음 | 57(43.8) | 43(33.1) | 16(12.2) | 13(10.0) | 1(0.8) | 130(50.2) |
| 약간 많음 | 9(11.5) | 22(28.2) | 23(29.5) | 21(26.9) | 3(3.8) | 78(30.1) |
| 보 통 | 4(10.3) | 4(10.3) | 10(25.6) | 17(43.0) | 4(10.3) | 39(15.1) |
| 별로 없음 | 1(8.3) | 2(16.7) | 1(8.3) | 7(58.3) | 1(8.3) | 12(4.6) |
| 계 | 71(27.4) | 71(27.4) | 50(19.3) | 58(22.4) | 9(3.5) | 259(100.0) |

$\chi^2=74.15919$ D.F.=12 Sign.=.0000

*내용 중 '전혀 없음'의 항목에는 응답자가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위의 표에서 보면,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경우 1주일에 여러 번 참여한다는 사람들은 130명 중 57명으로서 43.8%를 차지하며, 1주일에 한 번 참여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43명으로서 33.1%를 차지하여 1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한다는 사람들은 76.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관심이 약간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11.5%와 28.2%를 차지하여 39.7%가 1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관심이 보통이거나 혹은 별로 없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욱 떨어지고 있어 자율방법단체에 대한 관심 정도가 자율방법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정도와 자율방법활동에의 참여정도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집단적 집단적인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주변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을 크게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주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자율방법활동은 지역사회의 수준에서 보면 자조적인 활동이나 해당 지역이나 동네의 수준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원봉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경우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민들 상호간에 친밀성이 자원봉사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따라서 주민들의 친밀성과 자율방법활동의 정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주민 상호간의 친밀성 정도와 자율방법활동 정도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4>와 같다.

<표 54> 주민간의 친밀성 정도와 자율방법활동 정도간의 관련성 분석

| 내 용 | 1주일에 여러 번 | 1주일에 한 번 | 2주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분 / 별로 한 번 | 계 |
|-----------|--------------|-------------|-------------|-------------|---------------|------------|
| 매우 친밀함 | 18(32.7) | 19(34.5) | 11(20.0) | 6(10.9) | 1(1.8) | 55(21.2) |
| 약간 친밀함 | 39(28.5) | 41(29.9) | 23(16.8) | 31(22.6) | 3(2.2) | 137(52.9) |
| 보 통 | 7(17.9) | 9(23.1) | 14(35.9) | 7(17.9) | 2(5.1) | 39(15.1) |
| 별로 친하지 못함 | 6(24.0) | 1(4.0) | 2(8.0) | 13(52.0) | 3(12.0) | 25(9.7) |
| 전혀 친하지 못함 | 1(33.3) | 1(33.3) | 1(33.3) | 3(1.2) | | |
| 계 | 71(27.4) | 71(27.4) | 50(19.3) | 58(22.4) | 9(3.5) | 259(100.0) |

$$\chi^2 = 37.19974 \quad D.F. = 16 \quad \text{Sign.} = .0020$$

위의 표에서 보면, 주민들 상호간에 아주 친밀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1주일에 여러 번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32.7%이며, 1주일에 한 번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34.5%로서 1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67.2%인데 비해서, 약간 친밀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그 비율이 각각 28.5%와 29.9%로서 1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8.4%로 나타났다. 주민들 상호간에 별로 친밀하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 1주일에 여러 번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비율이 24.0%인데 비해서 1주일에 한 번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4.0%에 지나지 않아 1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한다는 사람들은 28.0%에 머물고 있다. 한편 주민들 상호간에 전혀 친밀감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3명 중 1명은 1주일에 여러

번, 다른 한 사람은 1주일에 한번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그 빈도수가 너무 적어서 분석결과가 별 의미가 없다. 어쨌든 주민들 상호간에 친밀한 정도와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사이에는 통계적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자율방법활동은 그 효과가 자기 자신에게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협조나 호응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참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들의 호응정도와 자율방법활동 참여 정도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면 다음 <표 55>와 같다.

<표 55> 주민의 호응정도와 자율방법활동 참여 정도간의 관련성 분석

| 내 용 | 1주일에 여러 번 | 1주일에 한 번 | 2주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분기별로 한 번 | 계 |
|----------|--------------|-------------|-------------|-------------|-------------|------------|
| 매우 좋음 | 17(30.9) | 18(32.7) | 11(20.0) | 8(14.5) | 1(1.8) | 55(21.2) |
| 약간 좋음 | 26(34.2) | 23(30.3) | 18(23.7) | 9(11.8) | | 76(29.3) |
| 보 통 | 24(23.8) | 24(23.8) | 16(15.8) | 32(31.7) | 5(5.0) | 101(39.0) |
| 별로 좋지 못함 | 4(15.4) | 5(19.2) | 5(19.2) | 9(34.6) | 3(11.3) | 26(10.0) |
| 전혀 좋지 못함 | | 1(100.0) | | | | |
| 계 | 71(27.4) | 71(27.4) | 50(19.3) | 58(22.4) | 9(3.5) | 259(100.0) |

$$\chi^2 = 28.84240 \quad D.F. = 16 \quad \text{Sign.} = .0250$$

위의 분석에서 주민들의 협조와 호응정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1주일에 여러 번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30.9%이며, 1주일에 한번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32.7%로서 1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63.6%이다. 또한 호응정도가 약간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그 비율이 34.2%와 30.3%로서 1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64.5%로서 호응정도가 매우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호응정도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거나 별로 좋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그 비율은 각각 47.6%와 37.6%로서 호응정도가 매우 좋거나 약간 좋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활동정도와 범죄의 피해 유무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56>과 같다.

<표 56> 범죄피해경험 유무와 자율방범활동 정도간의 관련성 분석

| 내 용 | 1주일에 여러 번 | 1주일에 한 번 | 2주일에 한 번 | 한 달에 한 번 | 분기별로 한 번 | 계 |
|-----|--------------|-------------|-------------|-------------|-------------|------------|
| 있 음 | 13(23.6) | 11(20.0) | 19(34.5) | 9(16.4) | 3(5.5) | 55(21.2) |
| 없 음 | 58(28.4) | 60(29.4) | 31(15.2) | 49(24.0) | 6(2.9) | 204(78.8) |
| 계 | 71(27.4) | 71(27.4) | 50(19.3) | 58(22.4) | 9(3.5) | 259(100.0) |

$\chi^2=12.08607$ D.F.=4 Sign.=.0167

위의 표에서 보면,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1주일에 여러 번 참여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23.6%이며, 한 번 참여한다는 사람들은 20.0%로서 1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43.6%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경험이 없는 사람들의 경우 1주일에 여러 번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28.4%이며, 1주일에 한 번 참여한다는 사람들의 경우 29.4%로서 1주일에 한 번 이상 참여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58.8%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자율방범활동 정도는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 사이에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범죄의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자율방범활동에 보다 자주 참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덜 참여해야 옳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현상의 시간적 선후관계나 시차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따져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그 의미를 밝혀봄으로써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위의 분석결과를 해석해 보면 범죄의 피해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적으며, 자주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범죄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다는 것이다.

한편 범죄의 피해경험 유무와 자율방범단체의 참여 여부와는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7>에 제시되어 있다.

<표 57> 자율방범단체 참여여부와 범죄피해경험 유무와의 관련성 분석

| 내 용 | 일반시민 | 자율방범단체 참여자 |
|---------|-------------|-------------|
| 희생경험 있다 | 185(25.5%) | 55(27.6%) |
| 희생경험 없다 | 541(74.5%) | 144(72.4%) |
| 계 | 726(100.0%) | 199(100.0%) |

$\chi^2 = .27401$ Sign. = .6007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시민들의 경우 지난 2년간 가족중 누구라도 한 사람이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 726명 중 185명으로 나타나서 그 비율이 25.5%이며, 피해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541명으로서 74.5%이다. 또한 자율방범단체 참여자의 경우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응답자 199명 중 55명인 27.6%로 나타나서 일반시민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단순히 자율방범단체에 참여하는 것 여부는 범죄피해과 관련이 없으나 자주 참여하는 정도는 범죄피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것은 범죄피해의 경험을 줄이는 데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 절 자율방범단체 참여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앞에서 자율방범활동 정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여러 가지 변수들은 실제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관계가 허위적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자율방범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율방범활동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앞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자율방범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주요 변수들 즉, 자율방범단체의 효과성 인식정도, 주민들의 호응도, 행정기관의 지원정도, 주민들이 서로 알고 있는 정도를 통해 측정한다.

한편 범죄의 피해경험 유무와 자율방범단체의 참여 여부와는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7>에 제시되어 있다.

<표 57> 자율방범단체 참여여부와 범죄피해경험 유무와의 관련성 분석

| 내 용 | 일반시민 | 자율방범단체 참여자 |
|---------|-------------|-------------|
| 희생경험 있다 | 185(25.5%) | 55(27.6%) |
| 희생경험 없다 | 541(74.5%) | 144(72.4%) |
| 계 | 726(100.0%) | 199(100.0%) |

$\chi^2 = .27401$ $Sign. = .6007$

위의 표에서 보면 일반시민들의 경우 지난 2년간 가족중 누구라도 한 사람이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응답자 726명 중 185명으로 나타나서 그 비율이 25.5%이며, 피해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541명으로서 74.5%이다. 또한 자율방범단체 참여자의 경우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응답자 199명 중 55명인 27.6%로 나타나서 일반시민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단순히 자율방범단체에 참여하는 것 여부는 범죄피해과 관련이 없으나 자주 참여하는 정도는 범죄피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에 자주 참여하는 것은 범죄피해의 경험을 줄이는 데 다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2 절 자율방범단체 참여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앞에서 자율방범활동 정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여러 가지 변수들은 실제 관련성이 있는지 아니면 그 관계가 허위적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자율방범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율방범활동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앞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자율방범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주요 변수들 즉, 자율방범단체의 효과성 인식정도, 주민들의 호응도, 행정기관의 지원정도, 주민들이 서로 알고 있는 정도를 통해 측정한다.

주민들의 친밀도,¹⁴⁷⁾ 범죄의 발생정도, 범죄의 피해 정도, 안전감 등의 변수들이 자율방범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 이들 변수들과 그리고 기타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지 특성 등의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여 자율방범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율방범단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들 변수들 사이에 다공선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각 독립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였으나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은 없었다.

먼저, 자율방범단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 <표 58>에 제시되어 있다.

<표 58> 자율방범단체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 영향요인 분석

| 변 수 | B | SE B | Beta | P |
|-----------------|---------------|-------------|------------|-------|
| 인식된 행정기관의 지원정도 | -.05673 | .05107 | -.06122 | .2678 |
| 인식된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 | -.02334 | .06265 | -.02197 | .7098 |
| 동네의 1년간 범죄발생정도 | .01515 | .05774 | .01520 | .7933 |
| 주민들의 친밀성 | .12300 | .05482 | .12254 | .0258 |
| 개인의 범죄피해 정도 | -6.322006E-04 | 5.68803E-03 | 5.8415E-03 | .9116 |
| 주민들의 호응도 | .21331 | .05598 | .22030 | .0002 |
|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심도 | .49350 | .06212 | .47163 | .0000 |
| 주민들의 안전감 | .06686 | .06831 | .05939 | .3287 |
| Constant | .38490 | 2.24906 | | .8643 |

$R^2 = .36277$ Adjusted $R^2 = .34180$ Sign. = .0000

위의 표에서 보면, 자율방범단체 참여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정도는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47163)으로 나타났다. 즉, 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일수록 자율방범활동단체에서

147) 주민들의 친밀도를 여러 하위 측정치를 통하여 측정하는 것이 측정도구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 바람직하나, 이렇게 하는 경우 설문문항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라는 단일의 측정치를 사용하였다.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한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언명은 지극히 당연하고 동의반복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율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관심사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주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나 호응도(=.22030)이다. 주민들이 자율방범활동에 대해 별로 호응이 없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주민들 상호 간에 친밀감(=.12254)이다. 즉, 주민들이 서로 서로 잘 알고 지내는 동네 주민들일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것은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안전감을 느끼는 데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외의 행정기관의 지원 정도,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 범죄발생정도, 범죄피해정도, 주민들의 안전감 등은 자율방범단체 활동의 참여의 적극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율방범단체 활동의 참여의 적극성을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위의 변수 외에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함께 포함시켜 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59>와 같다.

<표 59> 자율방범단체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의 영향 요인 분석

| 변 수 | B | SE B | Beta | P |
|-----------------|----------|-------------|---------|-------|
| 생활수준(중상류층) | -1.26468 | .53736 | -.13250 | .0196 |
| 교육수준(전문대 이상) | -.18812 | .11039 | -.09493 | .0900 |
| 거주지 유형(아파트) | -.31047 | .13684 | -.12681 | .0245 |
| 주민간의 친밀성 정도 | .11155 | .05948 | .10934 | .0623 |
| 개인의 범죄피해정도 | -.01318 | 9.42044E-03 | -.12191 | .1634 |
| 자율방범 활동에 대한 관심도 | .51866 | .06154 | .48003 | .0000 |
| 주민 안전감 | .11241 | .07083 | .09237 | .1142 |
| 자율방범단체활동의 호응도 | .20304 | .06078 | .19961 | .0010 |
| 범죄피해경험(무) | .48941 | .20976 | .20788 | .0207 |
| CONSTANT | 4.64923 | 3.53347 | | .1898 |

$R^2=.44375$, Adjusted $R^2=.41726$, Sign=.0000

위의 표에서 보면, 자율방범활동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beta=.48003$)이다. 즉, 주민들의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자율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범죄의 피해경험 유무($\beta=.20788$)이다. 지난 2년간 가족들 중 누구라도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피해경험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율방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의 사회적 통념과는 어긋난다. 이것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사회현상을 해석하는 데 생기기 쉬운 오류 때문이다. 즉, 각 변수의 시간적 선후의 관계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으로서, 보다 정밀한 측정이나 혹은 실험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은 범죄피해경험이 적은 집단일수록 자율방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주민들이 자율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일수록 범죄피해의 경험이 적다는 것이다.¹⁴⁸⁾ 세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위의 분석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정도($\beta=.19961$)이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율방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네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인 중상류층 변수($\beta=.13250$)이다. 즉, 주민들중 중상류층은 다른 계층보다 자율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변수는 주민들의 거주지 유형인 아파트지역 변수($\beta=-.12681$)이다. 아파트 지역의 거주자일수록 자율방범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아파트에는 대부분의 경우 공동경비원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방범활동의 필요성을 덜 느끼기 때문일

148) 순찰활동과 범죄발생 사이의 관계를 실태조사하여 분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상이 생긴다. 이론적으로 순찰활동은 범죄발생을 억제한다. 따라서 순찰활동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실제 경찰의 순찰활동과 범죄발생의 정도에 관한 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해 보면, 순찰활동의 β 값은 양(+)의 값이 나타난다. 모형에 따라 해석하면 순찰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범죄가 많이 생긴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료가 사용되어진 것이 일정한 기간 동안의 횡단적 자료이기 때문에 해석을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순찰을 많이 하는 지역은 범죄가 많이 생기는 지역이다. 즉, 범죄가 많이 생길수록 순찰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이다. 김인, 전제논문, 1996, pp. 149-150.

것이다. 그 외에 주민들 상호간의 친밀성도 중요한 변수로서 친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이 높다 (prob. value = .0623). 그 외에 학력, 주민들간의 친밀성, 범죄의 피해정도, 안전감 등의 변수들은 위의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회귀모형이 자율방법활동 참여의 적극성의 정도를 44.38% 설명해 주고 있어 상당히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주민들의 자율방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는 주민들 자신의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인 동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파트지역보다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중상인 경우인 비교적 잘 사는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주민들이 서로 잘 아는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피해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런 참여가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자율방법단체활동의 활성화의 방안 분석

자율방법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 보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방법으로서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도와 각종 관련되는 요인 사이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으며, 실제 이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그 중 한 가지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실제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견해나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통해 활성화의 원인과 대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제 정책 방안이 효과적인가 아닌가도 중요하겠지만 대상 집단으로서 시민들이나 각종 단체 참여자들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의 견해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들이나 각종 단체 참여자들의 견해를 알아 보는 것은 자율방법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것이다. 그 외에 주민들 상호간의 친밀성도 중요한 변수로서 친밀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이 높다 (prob. value = .0623). 그 외에 학력, 주민들간의 친밀성, 범죄의 피해정도, 안전감 등의 변수들은 위의 여러 변수들을 통제하는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 회귀모형이 자율방법활동 참여의 적극성의 정도를 44.38% 설명해 주고 있어 상당히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주민들의 자율방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는 주민들 자신의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중요하며, 다른 사람들인 동네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아파트지역보다는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이 중상인 경우인 비교적 잘 사는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 주민들이 서로 잘 아는 경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피해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이런 참여가 범죄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3 절 자율방법단체활동의 활성화의 방안 분석

자율방법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고 되지 않는 이유를 찾아 보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방법으로서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도와 각종 관련되는 요인 사이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볼 수도 있으며, 실제 이들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그 중 한 가지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실제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견해나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견해를 통해 활성화의 원인과 대책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제 정책 방안이 효과적인가 아닌가도 중요하겠지만 대상 집단으로서 시민들이나 각종 단체 참여자들의 선호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의 견해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들이나 각종 단체 참여자들의 견해를 알아 보는 것은 자율방법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먼저, 위의 여러 가지 분석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만약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 60>과 같다.

<표 60> 자율방범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

| 내 용 | 빈도(%) |
|----------------|-------------|
| 바빠서 시간이 없다. | 55(46.6%) |
| 활동의 효과가 없다. | 11(9.3%) |
| 지원체제가 미비하다. | 27(22.9%) |
| 실제 관심이 없다. | 7(5.9%) |
| 주민들의 협조가 안된다. | 13(11.0%) |
| 활동에 대한 보상이 없다. | 2(1.7%) |
| 기 타 | 3(2.5%) |
| 계 | 118(100.0%) |

위의 표에서 보면, 응답자의 46.6%가 바빠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지원체제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22.9%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9.3%, 주민들의 협조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11.0%나 된다. 또한 자율방범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실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7명으로서 5.9%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전체 응답자의 2.7%를 차지하고 있어 자율방범활동의 보상체계가 커다란 중요성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로서 참여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데 보상체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보면, 참여자들이 시간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이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다른 일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방범활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들의 선발, 훈련, 배치, 감독, 평가 등 세반에 걸친 행정지원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자율방범활동과 같은 자원봉사의 경우 시민들이나 이런 활동의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활동의 효과성이 아주 중요하다.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각 단체의 효과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1>과 같다.

<표 61> 각 단체별 회원들의 효과성 인식 정도 분석

| | 아주 크다 | 약간 크다 | 보통이다 | 별로 크지 않다 | 전혀 크지 않다 | 계(명) |
|--------------------------------------|-----------|-----------|-----------|-------------|-------------|------|
| 청년회 | 34(30.6%) | 49(44.1%) | 22(19.8%) | 6(5.4%) | | 111 |
| 방범위원회 | 3(10.3%) | 5(17.2%) | 19(65.5%) | 2(6.9%) | | 29 |
|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 11(44.0%) | 5(20.0%) | 8(32.0%) | 1(4.0%) | | 25 |
| 선진질서위원회 | 3(30.0%) | 6(60.0%) | 1(10.0%) | | | 10 |
| 향 장 | 3(27.3%) | 4(36.4%) | 3(27.3%) | | 1(9.1%) | 11 |
| 청소년지도위원회 | 5(14.3%) | 11(31.4%) | 15(42.9%) | 4(11.4%) | | 35 |
| 녹색어머니회 | 5(31.3%) | 3(18.8%) | 7(43.8%) | | 1(6.3%) | 16 |
| 모범운전자회, 보안위원회, 라이온스클럽, 자유연맹 | | 4(57.1%) | 2(28.6%) | | 1(14.3%) | 7 |
| 기 타 | 1(33.3%) | 2(66.7%) | | | | 3 |

$\chi^2=68.99522$ D.F.=32 Sign.=.0002

위의 <표 61>에서 보면, 청년회의 경우 응답자 111명 중 30.6%인 34명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44.1%인 49명이 약간 효과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74.7%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새마을운동협의회 소속 회원들의 경우 응답자 중 44.0%가 아주 효과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20.0%가 약간 효과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어 64.0%가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선진질서위원회와 향장에 소속된 회원들의 경우 자신들의 단체의 활동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각각 30.7%와 27.3%로 나타났으며, 약간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각각 60.0%와 36.4%로 나타나서 선진질서위원회의 경우 90.7%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반면, 향장의 경우 63.7%가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방법자문위원회의 경우 29명의 응답자 중 10.3%인 3명 만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17.2%인 5명이 약간 효과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들의 단체의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결국 27.5%에 지나지 않아 청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선진질서위원회, 그리고 향장 회원들과 커다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청소년선도위원회, 녹색어머니회의 경우 자신들의 단체의 활동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각각 14.3%와 31.3%이며, 약간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은 각각 31.4%와 43.8%로 나타나서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회원들의 비율이 각각 45.7%와 75.1%로 이들 두 단체 사이에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모범운전자회, 보안위원회, 라이온스클럽, 자유연맹 등의 경우 아주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없으며, 약간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57.1%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단체의 회원들이 자신들의 단체의 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에 있어 각 단체간에 상당한 차이가 나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의 문항과 관련하여, 각 단체의 활동들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분석한 것은 다음 <표 62>와 같다.

<표 62> 각 단체 활동의 비효과성 원인 분석

| | 빈도 (%) |
|----------------------|-----------|
| 구성원의 소극적인 참여 | 27(26.5%) |
| 구성원의 역할 제약과 장비소지의 제한 | 10(9.8%) |
| 형식적인 단체 운영 | 25(24.5%) |
| 구성원의 능력 부족 | 11(10.8%) |
| 단체와 경찰의 협조체계 미흡 | 11(10.8%) |
| 구성원의 인원수 부족 | 10(9.8%) |
| 부적합한 사람들의 참여 | 5(4.9%) |
| 기 타 | 3(2.9%) |
| 계 | 102(100%) |

위의 표에서 보면, 각 단체의 활동이 비효과적인 이유로서 가장 중요하게 들고 있는 것은 구성원의 소극적인 참여와 형식적인 단체 운영이다. 전자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는 응답자는 27명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26.5%를 차지한 반면, 후자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는 응답자는 25명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24.5%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구성원의 역할 제약, 구성원의 능력 부족, 소속 단체와 경찰의 협조체계 미흡, 구성원의 인원수 부족 등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도 각각 약 10%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보면, 자율방범단체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참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각 단체 운영의 형식성을 탈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각 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청이나 경찰서의 지원정도에 대한 참여자들의 견해를 분석한 것은 다음 <표 63>이다.

<표 63> 각 단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정도 분석

| | 빈도 (%) |
|--------------|-------------|
| 매우 잘 하고 있다. | 29(11.2%) |
| 약간 잘 하고 있다. | 53(20.5%) |
| 보통이다. | 123(47.5%) |
| 약간 잘 못하고 있다. | 42(16.2%) |
| 아주 잘 못하고 있다. | 12(4.6%) |
| 계 | 259(100.0%) |

위의 표에서 보면, 응답자의 11.2%인 29명은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주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주 잘 해 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20.5%인 53명은 약간 잘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47.5%나 되는 많은 사람들은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20.8%는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원체계의 개선의 여지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위의 문항과 관련하여 만약 행정기관이 지원을 잘못해 주고 있다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분석한 것은 다음 <표 64>와 같다.

〈표 64〉 각 단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상의 문제점

| | 기관장 관심부족 | 예산 부족 | 협력체계 미비 | 사기진작 책부재 | 지원계획 미비 | 기타 | 계(명) |
|--------------------------------------|-------------|----------|------------|-------------|------------|---------|------|
| 청년회 | 8(9.5) | 28(33.3) | 23(27.4) | 13(15.5) | 10(11.9) | 2(2.4) | 84 |
| 방법위원회 | 2(13.3) | 3(20.2) | 3(20.0) | 7(46.7) | | | 15 |
|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 4(23.5) | 6(35.3) | 1(5.9) | 2(11.8) | 1(5.9) | 3(17.6) | 17 |
| 선진질서위원회 | | 5(83.3) | 1(16.7) | | | | 6 |
| 향 장 | 1(14.3) | 3(42.9) | 1(14.3) | 1(14.3) | 1(14.3) | | 7 |
| 청소년지도위원회 | | 8(36.4) | 5(22.7) | 5(22.7) | 4(18.2) | | 22 |
| 녹색어머니회 | 2(14.3) | 5(35.7) | 4(28.6) | 1(7.1) | 2(14.3) | | 14 |
| 모범운전자회, 보안위원회, 라이온스클럽, 자유연맹 | | | | 2(66.7) | 1(33.3) | | 3 |
| 기 타 | | | | | 1(100.0) | | 1 |

$\chi^2=57.75921$ D.F.=40 Sign.=.0342, ()은 %임.

위의 표에서 보면, 각 단체 회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경찰서와 구청의 각 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상의 문제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69명 중 58명(34.3%)을 차지하고있어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구청, 경찰, 주민자율방법 대간의 협력체계의 미비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38명(22.5%)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사기 진작 등의 시책부재를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31명(18.3%)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요인은 소속단체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의 부재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20명(11.8%)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관장의 관심 부족을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는 사람들도 17명(10.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찰서와 구청 등 행정기관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로서 다양한 여러 가지 요인을 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예산의 부족과 협력체계의 미비를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절반을 넘고 있다. 따라서 각종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할 때 이러한 측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경찰의 주민단체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에 대해 경찰관들이 평가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다음 <표 65>와 같다.

<표 65> 경찰관들이 평가한 자율방범단체 지원상의 문제점

| 내 용 | 빈도(%) |
|-----------------------------|-----------|
| 기관장의 관심 부족 | 0(0) |
|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부족 | 21(56.8) |
| 구청, 경찰 주민자율방범대 간의 협력체계의 미비 | 0(0) |
| 소속단체 구성원에 대한 사기 진작 등의 시책 부재 | 8(21.6) |
| 소속단체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의 부재 | 8(21.6) |
| 계 | 37(100.0) |

위의 표에서 보면, 자율방범단체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예산의 부족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으며, 이 외에 사기의 진작책 부재, 소속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부재 등을 들고 있다. 경찰관들은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에 비해 특히 예산의 부족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관장의 관심부족이나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상의 문제점은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경찰관들이 내부자로서 처한 입장이 자율방범대 참여자와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어쨌든, 경찰관들은 자율방범단체 지원의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선결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각 자율방범단체의 참여자들에게 만약 정부가 주민단체의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어떤 지원이 바람직하겠는가를 알아 보았다. 이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 66>과 같다.

〈표 66〉 주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방안

| | 활동비의 증액 | 각종장비의 보급과 개선 | 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력 인정 | 활동에 대한 시상 | 전문적인 교육강화 | 기타 | 계 |
|-----------------------------|----------|--------------|------------------|-----------|-----------|--------|-----|
| 청년회 | 22(19.8) | 55(49.5) | 21(18.9) | 3(2.7) | 9(8.1) | 1(0.9) | 111 |
| 방법위원회 | 1(3.6) | 9(32.1) | 7(25.0) | | 10(35.7) | 1(3.6) | 28 |
| 바르게살기, 새마을운동 | 3(12.0) | 14(56.0) | 5(20.0) | 1(4.0) | 2(8.0) | | 25 |
| 선진질서위원회 | 2(20.0) | 3(30.0) | 3(30.0) | | 2(20.0) | | 10 |
| 향 장 | 2(20.0) | 6(60.0) | 1(10.0) | | 1(10.0) | | 10 |
| 청소년지도위원회 | 2(5.9) | 11(32.4) | 10(29.4) | 1(2.9) | 10(29.4) | | 34 |
| 녹색어머니회 | 6(33.4) | 3(16.7) | 4(22.2) | | 5(27.3) | | 18 |
| 모범운전자회, 보안위원회, 라이온스클럽, 자유연맹 | 1(14.3) | 3(42.9) | 2(28.6) | | 1(14.3) | | 7 |
| 기 타 | | 1(33.3) | 1(33.3) | 1(33.3) | | | 3 |

$\chi^2 = 56.25320$ D.F. = 40 Sign. = .0456

위의 표에서 보면, 각종 자율방법단체의 참여자들이 생각할 때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지원해 주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요인으로서 각종 장비의 보급과 개선을 들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42.7%인 105명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자가 들고 있는 항목은 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력 인정으로서 이러한 요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22.0%(54명)이다. 또한 전문적인 교육강화와 활동비의 증액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각각 16.3%(40명)와 15.9%(39명)이다. 그러나 활동에 대한 시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극히 낮은 2.4%(6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각 단체간에도 다소 차이가 나고 있다. 청년회와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및 새마을운동협의회 등의 경우 응답자들은 각종 장비의 보급과 개선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각각 49.5%와 56.0%로 나타나서 평균치보다 더욱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향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서 응답자의 60.0%가 장비의 보급과 개선을 가장 중요한 지원책으로 들고 있다.

그리고 청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및 새마을운동협의회, 향장 등의 회원들은 사회적 경력의 인정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법위원회 소속 회원들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의 강화를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35.7%(10명)나 되고 있다. 이처럼 각 협력단체에 따라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 대해 응답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관들이 평가한 자율방법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67>과 같다.

<표 67> 경찰이 평가한 자율방법활동 활성화 방안

| 내 용 | 빈도(%) |
|---|-----------|
| 활동비의 일부 지원 | 16(38.1) |
| 각종 장비의 보급과 개선 | 11(26.2) |
| 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력을 인정 (예:순경 채용시에 가산점 부여) | 2(4.8) |
| 활동에 대한 시상 확대 | 10(23.8) |
| 전문적인 방법 교육 강화 | 3(7.1) |
| 계 | 42(100.0) |

위의 표에서 보면, 경찰관들은 자율방법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비의 일부 지급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6명으로서 38.1%를 차지하며, 그 외에 장비의 지급은 11명으로서 26.2%, 활동에 대한 시상의 확대를 중요한 활성화 방안으로 보고 있는 응답자는 10명으로서 23.8%로 나타났다. 경찰관들은 활

동비의 증액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순경 채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경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 이것은 이들이 이미 경찰관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요인을 별로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이 자원봉사활동의 하나라면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의 정부의 시책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시책과 관련하여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시책을 묻는 질문에 각 자율방범단체 참여자와 일반시민들은 다음 <표 68>과 같이 응답하고 있다.

<표 68> 자율방범단체 참여 여부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시책

| 내 용 | 빈도(%) | |
|----------------------|------------|-----------|
| | 자율방범단체 | 일반시민 |
| 주민참여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 102(41.1%) | 263(27.5) |
| 혜택이나 보상을 통한 사기 앙양 | 23(9.3%) | 132(13.8) |
|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모집 | 18(7.3%) | 118(12.3) |
|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 44(17.7%) | 97(10.1) |
|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44(17.7%) | 171(17.9) |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체계 확립 | 14(5.6%) | 55(5.7) |
|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 3(1.2%) | 59(6.2) |
| 계 | 248(100%) | 895(100%) |

*일반 시민들의 경우 응답자들이 2개 이상 표시한 것이 많아 이를 모두 포함시켰으며, 기타와 무응답도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위의 표에서 보면,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시책으로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교육을 들고 있는 응답자가 총 248명 중 가장 많은 102명(41.1%)이다. 그 다음으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를 각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각각 44명씩으로서 그 비율도 각각 17.7% 씩으로 나타났

다.¹⁴⁹⁾ 이 세 개의 요인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합하면 76.5%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각종 혜택이나 보상 등을 통한 사기 양양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응답자는 23명으로서 9.3%이며,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모집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8명으로서 7.3%이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 구 등의 행정지원체계의 확립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14명으로서 5.3%이다. 시민들의 경우에도 자원방법단체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펴야 할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서 가장 많은 사람들(263명:29.4%)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주민참여에 대한 홍보교육의 강화를 들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하게 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제고(171명:19.1%)이다. 그러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은 지적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시민들이 아직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을 중요하다고 지적한 사람들이 자원방법단체에 참여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자원방법단체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홍보교육을 강화시키고,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가 펴야 할 가장 바람직한 시책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서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체계, 혜택이나 보상을 통한 사기 양양,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모집 등의 문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시책에 대해 경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 보았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 <표

149)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와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은 사실 비슷한 성격을 띠나 정부의 대시민에 대한 역할과 관련하여 후자는 전자에 비해서 간접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정부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보다는 각종 사회단체나 혹은 언론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각종 시책을 편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 두 항목은 필요에 따라 함께 논의하기도 할 것이다.

69)와 같다.

〈표 69〉 경찰이 평가한 자율방범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시책 분석

| 내 용 | 빈도(%) |
|---|-----------|
|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 | 10(23.8) |
| 각종 혜택이나 보상 등을 통한 사기 양양 | 10(23.8) |
|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모집 (상담창구, 자원봉사 센터의 설치 등) | 0(0) |
| 자원봉사단체(자생적 주민 봉사 소그룹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 13(31.0) |
|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 | 4(9.5) |
| 자원봉사에 대한 시·구·동의 행정지원체계의 확립 | 5(11.9) |
| 봉사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 0(0) |
| 계 | 42(100.0) |

위의 표에서 보면, 경찰관들 중에서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확대를 들고 있는 응답자는 13명으로서 31%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으로 들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23.8%), 각종 혜택이나 보상 등을 통한 사기 양양(23.8%)을 들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시민들이나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과 다소 차이가 나는데 특히, 자생적 주민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색적인 것이다.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경찰관들이 인식하는 것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70〉과 같다.

〈표 70〉 경찰관이 평가하는 주민자율방범활동의 비활성화 이유

| 내 용 | 빈도(%) |
|----------------|---------|
| 자율방범대원의 수적 부족 | 0(0) |
|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성 부족 | 7(23.3) |

| | |
|-----------------------|------------|
| 자율방범대원의 능력 부족 | 1(3.3) |
| 자율방범대 운영의 형식성 | 16(53.3) |
| 자율방범대 운영의 경비 부족 | 6(20.0) |
| 경찰과 자율방범대 사이의 협조체계 미비 | 0(0) |
| 계 | 30(100.0)* |

*42명의 응답자 중에서 자율방범단체가 활성화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찰관만의 분석결과임.

위의 표에서 보면, 자율방범대가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자율방범대의 형식적인 운영이라고 보고 있는 경찰관이 16명으로서 유효한 응답자 중 53.3%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대원들의 적극성의 부족을 들고 있는 응답자가 7명으로서 23.3%를 차지하며, 자율방범대의 경비 부족을 들고 있는 응답자도 6명으로서 20.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경찰관들은 자율방범대의 형식적 운영의 탈피가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의 요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율방범대의 운영의 쇄신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각 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청이나 경찰서의 지원정도에 대한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의 견해를 분석한 것은 다음 <표 71>이다.

<표 71> 각 단체에 대한 행정기관의 지원정도 분석

| | 빈도 (%) |
|--------------|-------------|
| 매우 잘 하고 있다. | 29(11.2%) |
| 약간 잘 하고 있다. | 53(20.5%) |
| 보통이다. | 123(47.5%) |
| 약간 잘 하고 있다. | 42(16.2%) |
| 아주 잘 못하고 있다. | 12(4.6%) |
| 계 | 259(100.0%) |

위의 표에서 보면, 응답자의 11.2%인 29명은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주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아주 잘 해 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20.5%

인 53명은 약간 잘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47.5%나 되는 많은 사람들은 보통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20.8%는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 지원체계의 개선의 여지는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경찰관들이 평가한 경찰의 주민단체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정도를 분석한 것은 다음 <표 72>와 같다.

<표 72> 경찰관이 평가한 경찰의 주민단체 지원정도 분석

| 내 용 | 빈도(%) |
|-------------|-----------|
| 매우 잘하고 있다 | 1(2.4) |
| 약간 잘하고 있다 | 5(11.9) |
| 보통이다 | 14(33.3) |
| 약간 잘 못하고 있다 | 14(33.3) |
| 아주 잘 못하고 있다 | 6(14.3) |
| 모르겠다 | 2(4.8) |
| 계 | 42(100.0) |

위의 표에서 보면, 경찰이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의 지원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찰관의 수는 6명으로서 14.3%인데 비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찰관의 수는 20명으로서 47.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찰이 자율방범활동을 잘 지원해 주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의 방안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시민들에게 이러한 활동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인책은 개인에 따라 선호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어떤 유인책이 효과적인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떤 유인책이 효과적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다양하나 시민들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시민들과 각종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 <표 73>과 같다.

〈표 73〉 각단체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유인책

| 유 인 책 내 용 | 빈도(%) | |
|---------------------|-----------|------------|
| | 자율방법단체 | 일반시민 |
| 봉사경력 점수 부여 | 72(29.6%) | 148(20.7%) |
|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제공 | 89(36.6%) | 267(37.3%) |
| 경제적 보상제도 실시 | 43(17.7%) | 158(22.1%) |
| 실적에 따른 포상 및 격려제도 확대 | 31(12.8%) | 121(16.9%) |
| 기 타 | 8(3.3%) | 21(2.9%) |
| 계 | 243(100%) | 715(100%) |

위의 표에서 보면, 응답자들은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유인책으로 보고 있는 응답자가 89명으로서 36.6%이며, 다음으로 응답자중 72명인 29.6%가 각종 공무원채용시에 봉사경력 점수를 인정해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유인책으로 보고 있다. 그외에도 경제적 보상(17.7%), 실적에 따른 포상 및 격려제도의 확대 실시(12.8%) 등을 중요한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각종 사고시의 보험혜택과 공무원채용시에 가상점 부여 방안을 주요한 유인책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반시민들의 경우에는 자율방법단체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 중 각종 사고시에 대한 보험혜택을 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유인책으로 보며, 동시에 자원봉사활동시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급해주는 경제적 보상을 중요한 유인책으로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사기업이나 공무원 채용시에 봉사경력 점수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유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유인책의 합리적인 개발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각종 단체 참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바람직한 자율방법활동의 형태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분석한 것은 다음 〈표 74〉와 같다.

〈표 74〉 각 단체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자원봉사의 바람직한 형태

| 내 용 | 빈도 (%) | |
|----------------------|------------|------------|
| | 자율방법단체 | 일반시민 |
| 자율방법대에 재정적 지원 | 85(34.7%) | 300(42.6%) |
| 직접적인 봉사활동 실시 | 105(42.9%) | 225(31.9%) |
| 경찰서나 구청의 방법관련 위원회 참석 | 15(6.1%) | 54(7.7%) |
| 경찰이나 구청에 방법관련 정보 제공 | 35(14.3%) | 100(14.2%) |
| 기 타 | 5(2.0%) | 25(3.6%) |
| 계 | 245(100%) | 704(100%) |

위의 표에서 보면, 응답자중 가장 많은 사람들인 105명(42.9%)이 방법활동과 관련한 자원봉사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즉, 순찰활동이나 감시활동을 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원봉사의 형태라고 보고 있다. 또한 응답자중 34.7인 85명은 자율방법활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보고 있다. 그외에 경찰이나 구청에 방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각종 방법관련 위원회 참석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각각 14.3%와 6.1%이다. 한편, 시민들의 경우, 응답자 704명중 300명인 42.6%는 자율방법대에 재정적 지원을 가장 바람직한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참여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25명인 31.9%가 순찰 등의 직접적인 봉사활동을 가장 바람직한 자율방법활동의 형태로 보고 있다.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법단체 참여자 사이 자율방법활동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통계적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정부는 자율방법대 순찰활동에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과 자율방법대 활동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통해서 자율방법활동과 관련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 7 장 분석결과와 종합적 논의와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제 1 절 분석결과와 종합적 논의

본 연구에서는 먼저,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의 유형과 이들의 성격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둘째, 외국에서의 경찰서비스 전달상의 각종 시민참여제도를 고찰하였으며, 셋째, 아울러 부산지역의 경찰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각종 민간 협력단체의 조직 현황과 시와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자율방범단체의 운영현황을 살펴보았다. 넷째, 시민들과 자율방범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통해서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의 경찰서비스 전달상의 참여인공통생산의 실태를 유형별로 고찰하였으며, 다섯째,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이 경찰서비스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았으며, 여섯째,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와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범대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유인책 등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파출소의 경찰관들이 인식하고 있는 자율방범활동의 실태와 활성화의 유인책 등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몇 가지 주요한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하고 이를 통해 경찰 치안서비스 활동에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유형별 자율방범활동의 영향 요인

자율방범활동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개별적 집단적 참여의 차원과 소극적 적극적 참여의 차원으로 교차분류함으로써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데 가장 중요한 특성은 이런 활동의 편익을 누가 갖게 되는가이다. 방법기기의 설치, 방법장비의 소지, 자녀에

대한 방법교육, 귀가 자녀의 마중 등 개별적 소극적 방법활동의 경우 그 편익은 참여자 개인이 편익을 누리게 되며, 범죄신고나 수상한 자의 신고 등의 개인적 적극적 방법활동의 경우 그 편익은 전체 지역사회가 누리게 된다. 또한 이웃간의 방법대책협의나 경비원 고용의 경우 그 편익은 해당 이웃이 함께 누리게 된다. 특히, 공동경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 실시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편익의 수혜자는 분명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활동의 경우 그 비용의 부담도 비교적 분명하게 할 수 있으나, 일반 주택단지에서 이웃간의 방법대책협의를 그 결과로서 생겨나게 되는 지역의 안전은 그 구역내의 주민들이 공유하게 되며, 따라서 이런 활동의 결과는 일종의 공공재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와 같이 자율방법활동이나 그결과가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경우 지역 주민들 사이에 이런 공공재의 창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하기는 아주 어렵다. 어쨌든, 이러한 주민들 간의 방법대책 협의는 경찰과의 연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특히 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집단적 방법활동이 효과적이며, 보다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율방법활동들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법기기의 설치, 방법장비의 소지, 자녀 방법 교육과 같은 개인적 자율방법활동의 경우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법단체 참여자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자율방법단체 참여자들이 일반시민들에 비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이러한 방법활동에 참여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율방법단체의 참여는 그 활동 자체 외에도 개별적인 방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귀가자녀의 마중을 나가는 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이것은 다른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 개별적 소극적인 자율방법활동은 성별, 연령, 거주지 유형 등에 의해서도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다.

수상한 자의 신고와 범죄피해에 따른 신고의 경우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법단체 참여자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나고 있다. 일반시민들의 경우 응답자 중 32.4%가 신고하는데 비해서 자율방법단체 참여자들의 경우 46.2%가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범죄피해에 따른 신고에 있어서도 일반시민들의 경우 신고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23.2%에 지나지 않는 데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의 경우 41.6%가 신고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자율방범대 참여는 개별적 적극적인 자율방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신고율은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신고비율이 낮다. 신고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반시민들이나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 모두 경찰이 소극적이기 때문이거나 혹은 경찰이 원상회복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신고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실제 관심을 둘 만큼 여유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비율에 있어서는 일반시민들의 비율이 더욱 높다. 어쨌든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서 보복의 두려움을 들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어야 할 것이다.¹⁵⁰⁾ 어쨌든 신고율이 아직 30~40% 정도에 지나지 않아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예방대책에 대한 협의의 경우에도 연령이나 성별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지만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 사이에 더욱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이 일반시민들보다 모든 유형의 방범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자율방범단체 참여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자율방범활동과 경찰서비스 결과

경찰서비스 결과는 객관적인 서비스 결과와 주관적인 서비스 결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범죄의 피해경험은 거주지의 특성에 의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며,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범단체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

150) 부산의 모대학 여교수 피살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되었으나, 그의 직업이나 연령 등에 대해 보도됨으로써 신고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범죄정보보상제도(crime stoppers)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 않는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의 참여자들과 일반시민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인식하는 동네의 범죄발생 정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일반시민들이 자율방범대 참여자들에 비해 자신들의 동네에 범죄가 보다 적게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동네에 범죄가 보다 많이 발생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율방범단체 활동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반시민들에 비해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이 범죄발생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범죄발생은 거주지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유흥가와 상가지역이 주택가나 아파트지역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발생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이러한 관계는 선형이 아니라 중간계층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비스의 주관적인 결과로서 시민들의 안전감의 경우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범대 참여자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안전감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그 관계는 선형이 아니고 중간층의 경우 보다 안전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안전감은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며, 마찬가지로 소득이 중간 집단인 경우 안전감이 상대적으로 낮다. 주관적 결과의 다른 하나인 야간 귀가의 안전성의 경우에도 거주지 유형,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며, 동시에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있어 남성들이 보다 안전하게 느끼고 있다.

경찰서비스의 주관적 결과인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분석에서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며, 그 관계는 비선형적인 것으로서 중간계층이 만족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찰활동이나 범인 수사 및 검거 활동, 그리고 전반적인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 일반시민들에 비해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의 경우 만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이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 외에 소득 계층에 따라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나며, 이런 차이는 중간계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3. 서비스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경찰서비스의 결과 중 시민들의 안전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요인은 시민들이 인식하는 1년간의 범죄발생정도($\beta = -.33254$)이며, 그 다음이 주민들 간의 친밀성 정도($\beta = .24216$)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동네의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 여부($\beta = -.09930$)이며,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별($\beta = -.09505$)이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beta = .09119$)인가 아닌가이며,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거주지 유형($\beta = -.08755$)이다. 이들 변수들이 시민들의 안전감을 24.773%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여부에 따라 주민들이 안전감을 느끼는 데 커다란 차이가 나며, 동시에 주민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주민들 간의 안전감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주민들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주민들 스스로도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정부도 이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반상회의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은 정부활동에 대한 태도($\beta = .41523$)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느끼는 안전감($\beta = .27121$)이다. 즉, 주민들이 불안하면 경찰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불심검문 및 연행경험($\beta = .17621$)이다. 즉 불심검문 및 연행 경험이 없는 사람들일수록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범죄에 대한 피해정도($\beta = -.11814$)이다. 즉, 각종 범죄의 건수와 그 경중도를 고려하여 범죄피해정도가 클수록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득수준으로서 주민들의 소득수준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beta = .10350$)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전문대 이상($\beta = -.08847$)일수록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의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45938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즉, 시민들이 경찰서비스의 만족과 불만족 정도를 위의 변수들을 통해 45.938% 정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경찰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은 정치

적 효능감인 정부에 대한 태도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경찰업무가 공권력을 사용하여 법시행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과 불만족을 해석할 때 우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경찰 서비스에 대한 만족 정도는 주민들의 안점감과 범죄피해정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과 관련하여 경찰이 보다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불심검문이나 연행을 가능하면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불필요한 불심검문과 연행은 시민들의 경찰서비스에 대한 불만만을 야기시키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 사이에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에 차이가 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자율방범단체 가입유무 변수를 회귀모형에 포함시켜본 결과 일반시민들의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여러 가지 요인을 통제하고서도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의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율방범단체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4. 자율방범단체 참여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율방범단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참여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심도($\beta=.47163$)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호응도($\beta=.22030$)이며,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친밀도($\beta=.12254$)이다. 그 외의 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위의 세 개의 변수로 주민들의 자율방범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34.180% 설명하고 있어 상당히 설명력이 높은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자율방범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며, 동시에 주민들의 호응도를 높여야 하며, 끝으로 동네 주민들 사이에 친밀감이 생길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5. 자율방범단체의 활동의 특성

자율방범단체를 통한 활동은 집단적 적극적 방법활동이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참여 동기는 지역의 안전(64.2%)이며, 그 다음이 친목도모(21.4%)이다. 그리고 각 경찰의 협력단체 별로 참여의 빈도나 적극성의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나 구청 산하의 자율방범대 참여자들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있다. 이것은 경찰 산하의 여러 단체들은 실제 한 달에 1회 정도 회합을 갖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원들이 생각하는 적극적인 참여의 정도는 각 협력단체 사이에 차이가 나지만 경찰협력단체와 구청 산하 단체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는 나지 않는다. 각 자율방범단체가 스스로 평가한 것이지만 자신들의 단체의 활동 정도가 아주 활발하거나 약간 활발하다고 평가한 평가자들의 비율이 약 80% 정도가 되고 있어 이들 단체의 활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율방범단체들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보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인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들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바쁘기 때문(46.6%)이라고 들고 있다. 그 외에도 지원체제의 미비(22.9%)와 주민들의 낮은 호응도(11.0%)를 원인으로 들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참여 방식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혹은 기부금(coprovision)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의 참여자들은 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활동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성이 다소 낮아지고 있는 것은 구성원들의 소극적인 참여(26.5%)와 형식적인 단체의 운영(24.5%)을 들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단체 운영의 합리화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참여자들은 행정기관이 지원을 잘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약 30%에 지나지 않고 있어 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체제와 관련하여 이들은 예산의 부족과 협력체제의 미비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자율방범활동이 자원봉

사활동의 일환이라고 하여 모든 경비를 스스로 조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활동은 공공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으로 공공 부문의 역할이 대체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이들의 활동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 체계의 확립은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예산이 소요되면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민단체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주민단체 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보면 이들은 각종 장비의 보급과 개선을 들고 있으며, 동시에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예산을 통한 지원의 강화나 혹은 일반시민들의 자율적 기부금을 통한 자율방범단체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경찰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킬 수 있는 시민경찰학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들에게 경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방범단체의 운영이 현재 보다는 더욱 체계적이고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시민들(27.5%)이나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41.1%)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을 들고 있다. 이것은 아직 시민들 사이에 자율방범활동이나 혹은 다른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은 그 사회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 일반시민들은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인식제고(17.9%), 혜택이나 보상을 통한 사기 앙양(13.8%),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모집(12.3%),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확대(10.1%)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비해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은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17.7%),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확대(17.7%), 혜택이나 보상을 통한 사기 앙양(9.3%)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이나 혹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아울러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유인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36.6%)이며, 그 다음이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29.6%), 경제적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것(17.7%)이다.

끝으로,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봉사활동(42.9%)이며, 그 다음이 자율방범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34.7%), 경찰이나 구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14.3%)이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각종 방법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배포한다든지, 이웃감시활동의 체계적인 조직화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율방범단체에 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경찰치안서비스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유형화시키고, 이러한 유형에 따른 성격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의 다양한 제도를 고찰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산지역의 자율방범활동의 실태를 고찰한 바 있으며, 자율방범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아울러 일반시민, 자율방범대 참여자, 그리고 경찰관들의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경찰치안 서비스 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 홍보 강화

가. 자원봉사의 사회지도 이념화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주요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자율방범활동을 강화시

중요한 것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36.6%)이며, 그 다음이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29.6%), 경제적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것(17.7%)이다.

끝으로,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봉사활동(42.9%)이며, 그 다음이 자율방범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34.7%), 경찰이나 구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14.3%)이다. 이런 분석결과를 통해서 보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서비스를 창출하는 다양한 활동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든다면, 각종 방법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배포한다든지, 이웃감시활동의 체계적인 조직화를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 있는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자율방범단체에 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 2 절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경찰치안서비스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유형화시키고, 이러한 유형에 따른 성격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의 다양한 제도를 고찰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부산지역의 자율방범활동의 실태를 고찰한 바 있으며, 자율방범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아울러 일반시민, 자율방범대 참여자, 그리고 경찰관들의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찰한 바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경찰치안 서비스 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 홍보 강화

가. 자원봉사의 사회지도 이념화

본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주요 연구 결과 중에 하나가 자율방범활동을 강화시

키기 위해서는 조사대상자들인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 모두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원봉사활동은 하나의 사회적 행위이다. 이런 행위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제도론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의 가치관이나 능력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상황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그 사회의 사회 문화적 특성, 각종 제도, 그리고 일이나 활동의 특성이라고 한다. 여기서 제도론적 접근방법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각종 행위 규칙이지만,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이러한 행위 규칙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율방범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은 그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봉사활동을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생활화되어 있는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아직 우리 사회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신장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하나인 가족중심주의나 친족중심주의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족이나 친족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성향 때문에 지역사회 전체에 대한 관심이 서구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도 각종 종교단체나 자원봉사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게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공공부문에 자원봉사활동의 도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유인책의 개발과 자원봉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도이념의 하나로 설정하는 문제일 것이다.

미국과 같이 자원봉사가 상당히 생활화되어 있는 오늘날에도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실제 이를 구체화시키고 있어 미국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은 1월 24일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콜린 합참의장을 초청하여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은 민주당의 이념도 공화당의 이념도 아니며, 바로 미국의 이념”이라고 경과를 초월한 협력을 강조하면서 「자원봉사활동 정상회담」의 개최를 밝히고 있어 미국시민들에게 자원봉사이 대한 관심을 더욱 드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¹⁵¹⁾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통령을 위시한 사회지도층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각 지역사회에서도 자치단체장이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나. 각종 유형의 방법활동 참여의 중요성 홍보 강화

일반시민들이 자율방범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활동 외에도 각종 방범기기의 설치, 방범장비의 소지, 자녀 방범교육의 실시 등의 개별적 소극적인 자율방범활동과 이웃간의 대책협의 등의 집단적 소극적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들은 시민들의 범죄피해를 줄일 뿐만 아니라 안전감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잠재적 범행자에게 범죄대상이 되기 어렵게 만드는 (target hardening) 효과도 있다. 이와 같은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계몽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업무는 경찰의 지원 하에 자율방범단체가 앞장 서서 시민들에게 전단을 배포하거나 혹은 가부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자율방범활동의 효과성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

일반시민들과 주민단체 참여자들은 자율방범활동을 포함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

151) 이 회담은 오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미국의 전 현직 대통령 6명들이 적 간접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범국가적인 자원봉사 활동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열리게 된다. 이 정상회담은 과거 부시 전 대통령이 주창했던 1천개의 불빛 자원봉사 캠페인과 클린턴 대통령의 「미 지역봉사활동」 캠페인을 확대 결합시킨다는 구상에서 출발한 것이다. 조선일보, 1997.1.26, p. 25.

한 홍보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주된참여가 실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전달의 비용을 줄임으로써 서비스 공급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이 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율방법활동은 자원봉사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소기의 성과가 없다고 시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를 꺼리게 된다. 자율방법단체 참여자들이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의 안전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지역안전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도 자율방법활동은 분명히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율방법활동 참여자들은 일반시민들에 비해 여러 가지 조건이 같다고 하더라도 안전감이나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감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자율방법활동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상당히 효과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홍보활동으로서 자율방법대활동 성과 보고 대회 등을 개최하고 아울러 이러한 활동에 대한 참여의 기회와 방법에 관해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활동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연합회와의 연계를 통해서 자율방법대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2. 자율방법단체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

가. 자율방법단체 참여자 구성의 합리화

범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며,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만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관련한 부산지역의 시민들의 자율방법활동은 부산광역시 지방경찰청이 총괄하고 있으며, 방법기획과가 주무부서이다. 지방경찰청 산하에 13개의 경찰서

가 있으며, 각 경찰서와 파출소에 경찰협조단체가 있어 이들 기관을 통해 시민들은 경찰서비스 전달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경찰협조단체로서는 치안자문위원회, 방법자문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향장, 선진질서위원회, 녹색어머니회, 공동서리정화위원회, 모범운전자회, 보안지도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가 있으며, 그리고 각 파출소별로 자율방법대, 녹색어머니회, 선진질서위원회, 방법자문위원회, 향장이 있다.

그런데, 위의 여러 위원회 중 녹색어머니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위원회에는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표들이나 자영업자들이다. 녹색어머니회의 경우에만 조직의 성격상 전 회원이 가정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의 경우 회원구성에 있어서 더욱 문제가 많다. 청소년지도위원 활용 지침에 보면, 지도위원의 자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법무부의 직원, 사회복지기관의 지도원, 각종 교원 등 청소년 관계기관의 직원, 종교인 및 건전한 서클회원 등의 청소년 관계단체의 회원, 지역사회의 지명인사 등 지역사회 유지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서 산하의 청소년 지도위원들은 대부분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기업인이거나 혹은 요식업 및 각종 자영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어서 과연 이들만으로서 청소년지도를 잘 할 수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볼 때 경찰협력단체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로서만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위원들의 구성이 위원회별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리고 주로 제조업이나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경찰들이 이들을 주로 위촉하는 것이 직접적인 원인일 것이며, 동시에 각 위원회의 명칭과 명목상의 기능은 다르지만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에는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공직자들이나, 종교단체의 종교인, 각종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의 회원, 각급학교 교원 등도 참여하여 함께 방법분제를 논의하거나 구체적인 활동을 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찰협력단체의 조직을 정비하거나 개편할 때 신규회원으로서 이들의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참여를 보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앞으로 자원봉사연합회와 연계하여 이들의 신청을 받고 경찰이 이들의 배경조사를 한 후 위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협력단체들의 인적 구성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위원들이 바쁘고, 이들의 활동이 형식화되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어쨌든, 경찰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어 많은 사회적 활동을 규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보호와 규제라는 이중적 성격 때문에 경찰서비스 전달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단지 시민들의 자발적 의사에만 맡겨둘 수는 없고, 경찰의 엄중한 선택에 의해 시민들의 참여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물론, 규제대상기관이 규제기관의 여러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오히려 자율적인 규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다양한 직업 특히, 각종 공직자들과 사회단체, 종교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위촉시에 경찰이 특별히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자율방법단체 회원의 확대

시민들은 경찰서와 파출소 산하의 각급 경찰협력 단체에 가입하거나 혹은 구청 관할 하에 있는 청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주민단체에 가입함으로써 자율방법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경찰의 협력단체 회원들의 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 적합한가는 여러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력단체에 참여하게 되면 경찰서비스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피해도 적고, 보다 안전감을 느끼고 경찰서비스에 대해 보다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면 회원들의 수를 늘리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경찰협력단체가 너무 많고 활동이 미미하다고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지만 실제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으며, 자율방법활동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의 회원 수를 50%나 혹은 100% 늘린다고 하더라도 기능수행상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조직운영이 비능률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경찰은 경찰협력단체 회원들의 수를 현행 수준으로 고집해야 할 아무런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각 협력단체별로 새로운 회원으로서 위에서 제안한 다양한 직업 특히, 공직자들

과 각종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 회원들의 추가적인 회원 영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파출소 단위로 경찰협력단체를 보다 많이 만드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찰 치안활동에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 자체의 활성화도 필요하겠지만 새로운 회원의 추가적인 영입은 시민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각 구 마다 결성된 주민자율방범대의 조직 수나 회원들의 수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그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도 기인하겠지만, 각 경찰서와 파출소, 그리고 구청의 관심도에 의해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고 한다. 자율방범활동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인책의 개발이나 시민들에게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경찰과 행정기관의 관심이 더욱 중요한 것 같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도 나타났지만, 경찰과 구청이 모두 실제 참여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즉, 참여자의 수가 각 기관의 보고서가 작성될 때마다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참여자들이 고정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며, 동시에 이들의 거주지 이동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에 대한 신상 파악이 보다 철저히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과 각 구청이 자율방범대원의 신상 파악을 보다 철저히 하고 이들의 참여 확대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췌든, 주민들의 자율방범대 참여가 범죄예방활동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이들 참여자들은 일반시민들보다 더욱 안전감을 느끼고 경찰서비스에 대해 보다 만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자율방범대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은 경찰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좋은 방안임에 틀림 없다.

다. 협력단체 회원들의 자율방범대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 확립

시민들의 자율방범활동은 흔히 시간과 노력의 제공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자율방범활동은 범죄발생을 억제하고 동네를 감시 순찰하는 업무만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에는 다양한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된다. 시민들이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어떤 요소이든 이를 제공하는 것은 자율방범활동에 참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다양한 협력단체 회원들이나 혹은 자발적인 시민들이 자율방범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아울러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로 충당할 수도 있으나 경찰이나 시정부의 예산은 언제나 이러한 활동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하기 마련이다. 게다가,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들에게도 자율방범활동에 동참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율방범대의 참여자들에게 주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킬 것이다.

라. 경찰 및 검찰 산하의 자율방범단체들의 연계 강화

부산지역 내에도 똑같은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방범단체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제각기 나름의 특성을 갖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최근에 산하의 모든 단체들을 통합하여 연합회를 결성하였지만 경찰의 산하 단체들까지 통합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검찰과 경찰 산하의 각 단체들이 쉽게 통합하기도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감독하는 행정기관이 다름에 따른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같은 목적을 수행한 기관들 사이에 경쟁도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이 구체적으로는 다소 다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같은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의 활동을 어떤 식이든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각 조직의 대표들이 함께 만나 연합대회를 개최한다든지, 혹은 함께 세미나와 정보를 교류하는 활동을 벌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 지역 내의 자원봉사단체와의 연계 강화

자율방범활동은 비록 자신들의 동네를 순찰하고 방범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교육시키고, 평가하는 다양한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자원봉사연합회와 각종 정보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 내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의 마련을 위해서 연합대회 및 학술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3. 자율방범활동 관리체계의 확립

가. 자율방범활동 참여자의 인력관리체계 확립

자원봉사자로서의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들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단의 인력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수행하는 자율방범활동이기 때문에 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책임은 경찰이 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부적합한 지원자들을 선별할 수 있도록 엄격한 선발과정을 두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경찰관이나 혹은 시민경찰학교 졸업자에 의해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경찰협력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입선과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주로 지역사회 내에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들에 한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강하고 성실한 시민들이면 충분할 것이다.

둘째,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시민경찰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율방범대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자율방범대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자율방범대원의 활동일정과 업무의 계획화가 필요하다.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는 일이 비록 순찰활동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업무에 대한 일정을 미리 확정하고 계획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원의 회원들에 대한 신상 파악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의 활동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에 필요한 인력들은 비법집행인력(non-law-enforcement personnel)으로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충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업무의 감독과 평가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자율방범활동이 과연 일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업무수행 중에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업무량을 달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동시에 자율방범활동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기별이나 혹은 전 후반기별로 정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시상과 경우에 따라서는 경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시민경찰학교의 운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율방범대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은 없다. 시민들도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편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들을 구체적인 자율방범활동으로 투입시키는 프로그램이 없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시민경찰학교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예방에 있어서 시민들과 경찰의 동반자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민경찰학교는 첫째,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으로서의 순찰을 위한 시민 교육과 둘째, 시민들의 범죄신고 및 수상한 자에 대한 감시와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 사이에 리더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 훈련, 그리고 셋째, 오늘날 경찰서의 역할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육의 기회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르칠 교과목은 경찰 윤리, 현대사회에서의 경찰의 역할, 순찰의 절차, 경찰관의 안전, 경찰력(force)의 사용, 특수무기와 전술, 범죄수사, 범죄현장관리, 조직폭력단, 교통관리, 교도소 관리, 응급치료 등 다양한 내용이 될 수도 있다. 그외에 경찰은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범죄의 요소, 관찰 지각대상, 주차시행, 주의주기, 갯활동, 약물거래, 그리고 무선기 이용과 절차 등과 같은 주

제를 다룰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역을 감시하는 것, 감시결과 보고서 작성, 무선기 이용과 절차에 대해 실습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자율방범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에게 시민경찰학교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신청자들의 신원조사를 할 필요도 있으며, 동시에 시민들이 이 자원봉사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주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운영하도록 한다. 퇴직경찰관이나 혹은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들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담당 경찰의 책임과 지도 아래 이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범죄신고 보상제도의 개선 및 홍보

현재 시민들이 범죄 신고를 하여 주요 범죄의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금을 주는 범죄신고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범죄신고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혹은 신고 자체를 귀찮게 생각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범죄신고를 실시하지 않는다. 물론 시민들이 범죄 신고를 실시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경찰이 원상 회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외에도 보복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그 범죄가 사소한 경범죄라기보다는 주요 형사범일 가능성이 있다.

범죄신고 보상제도는 범죄신고에 대해 시민들에게 보상금을 준다는 측면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고자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고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를 위시한 많은 서구의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범죄정보보상제도(crime stoppers)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실시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매우 실용적인 범죄통제 전략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이 제도는 중범들을 검거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주민들, 특히 범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는 신고에 대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됨으로써 보복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개선은 시민들의 범죄신고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범죄신고는 단순히 제도상의 문제만은 아니다.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볼 수 있듯이 범죄신고는 그 사회의 시민문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문화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본다면 제도적 개혁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자율방범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시민들에 홍보 교육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라. 각종 유인체계의 개발

자율방범활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인체계를 개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유인체계와 관련하여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 제공이며, 그 다음이 봉사에 대한 경력점수 부여이다. 자율방범단체 회원들이 업무수행에 들어가게 되면, 이들은 공적인 활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경찰의 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경비가 들게 되며, 또한 최소의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¹⁵²⁾

또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들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152) Jeffrey L. Brudney, William D. Duncombe, "An Economic Evaluation of Paid Volunteer, and Mixed Staffing Options for Public Servic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52, No. 5, (Sep./ Oct. 1992), 474-480. 최근 Brudney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데에도 비용이 들게 되므로 일반 공무원(paid personnel), 자원봉사자(volunteer), 그리고 보수의 절반을 지급받고 일하는 혼합형의 인사(mixed staffing)를 비교하여 어떤 인사전략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소방서비스(fire services)를 대상으로 연구한 바 있다. 여기서 그는 자원봉사의 경우에도 중원, 교육, 감독 등의 비용과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는 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1인당 연 800\$이 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을 개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의 경력을 학생들의 성적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이 외에도 유사한 분야의 공직을 맡게 되는 경우 그들의 활동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체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든다면, 각 공공기관에 경비업무를 맡게 되는 경우나 경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이들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혹은 호봉 계산시에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유인책이 될 것이다.

아울러, 우범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찰관만으로는 방범활동에 한계가 있는 경우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들 지역에 한정하여 일정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그 보상의 범위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적에 따라 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경찰 및 시당국의 지원 강화

가. 경찰의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

범죄의 예방은 단순히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범죄가 발생하면 즉각적으로 범인을 체포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문제와 관련하여 검찰이나 교정기관들의 활동도 있지만 경찰의 활동도 그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점에서 경찰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이미 미국 각도시의 경찰들이 지역사회경찰을 표방하고 나섬으로써 미국사회에서도 상당히 설득력있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내의 많은 도시가 범죄발생율을 크게 줄이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크게 증진시키고 있다. 미국의 지역사회경찰제도는 한국과 달리 과출소제도가 없기 때문에 실시하는 제도는 아니다. 지역사회경찰제도의 핵심적 요소는 지역경찰과 주민들의 동반자 관계 정립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경찰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과 함께 노력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파출소도 상담원제도를 두고서 관할구역 내의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들에 대해 경찰이 청취하고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찰은 비교적 방문자가 많은 도심부의 주요 파출소에 경험이 풍부하고 경찰업무에 정통한 경찰 OB들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고민이나 각종 상담에 응함으로써 각종 사건이나 사고의 중간 전달이나 피해자에 대한 조언 등을 행하는 파출소 상담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¹⁵³⁾

어쨌든, 지역사회경찰활동은 주민들이 그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게 함으로써 경찰활동에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참여의 활성화를 초래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자율방법대에 대한 예산 지원 강화

자원봉사활동은 경찰의 활동을 대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경찰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경찰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경찰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원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인력관리체계의 개선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강화도 필요하다. 자율방법대 참여자들이나 경찰관들은 모두 장비의 보급이나 개선과 관련한 경찰의 예산 지원이 자율방법대 활동의 활성화에 긴요하다고 보고 있다. 언제나 예산은 한정적이며, 희소한 것은 사실이나 자율방법대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은 투자하는 예산

153) 日本 警察廳, 日本警察白書, 1996, p. 70.

파출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찰활동은 일본의 치안유지가 양호하게 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어 외국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일본의 파출소 제도를 참고하여 새로이 도입한 나라들도 있다. 그 때문에 일본의 경찰청은 1994년에 17개국으로부터 시찰단을 받아들여 일본지역의 경찰제도와 활동 상황 등을 소개하고 지역경찰 관계자들의 국제적인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1994년에는 아시아 10개국으로부터 총 18명의 경찰간부들을 초빙하여 일본의 파출소제도와 최신과학기술을 활용한 통신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지역경찰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국제간의 교류를 넓히고 있다.

에 비해 그 성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많은 인력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높은 회수율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는 범죄로부터의 안전감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특히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 경찰은 물론 시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 경찰서비스 결과에 대한 시민설문조사의 제도화

시민참여의 여러 형태 중에서 시민들이 각종 경찰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며, 어떤 지역에 어떤 서비스 수요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아울러 경찰활동을 평가하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시민 설문조사(citizen surveys)이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시민들에게 경찰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지역사회경찰이 지향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이나 혹은 자율방법대에게 맡겨 수행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후자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공정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지방의회가 이러한 역할을 맡는 것이며, 그 구체적인 조사활동은 대학의 연구소에 위탁하는 것이다.

라. 반사회 운영의 활성화

주민 상호 간의 친밀감은 주민들의 일체감을 형성시켜 주게 되며, 이것은 공공재의 생산에 있어서 참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시키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다. 친밀감이 형성되어야만 공동으로 문제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공동으로 비용부담을 논의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들이 참여하게 되면 이웃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자원봉사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친밀감은 자율방법활동의 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경찰서비스 결과로서 시민들이 느끼는 동네의 안전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

와 같은 동네 주민들 사이의 친밀감을 제고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반상회의 활성화이다. 따라서, 경찰과 시당국은 경찰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상회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 8 장 결 론

본 연구는 경찰 치안서비스 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주민들의 방범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을 고찰하고 분석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방범기기의 설치, 방범장비의 소지, 자녀방범교육의 실시 등과 같은 개인적 소극적인 자율방범활동의 정도는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이나 지리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 사이에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수상한자의 신고와 범죄피해에 따른 신고 등 개별적 적극적인 자율방범활동과 이웃간의 방범대책과 같은 집단적 소극적인 자율방범활동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이 일반시민들에 비해 보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객관적인 경찰서비스 결과인 범죄의 피해경험은 거주지의 특성에 의해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들이 인식하는 동네의 범죄 발생정도와 관련하여서는 일반시민들이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에 비해 자신들의 동네에 범죄가 적게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발생정도는 소득수준과도 관련성이 있으며, 그 관계가 비선형적이다. 즉, 중간층의 동네주민들이 자신들의 동네에 범죄가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경찰서비스의 주관적인 결과인 안전감은 일반시민들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 사이에 차이가 나지 않으며, 소득수준 및 생활수준과 관련성이 있으나 중간층 주민들의 안전감 정도가 낮아 그 관계는 비선형적이다. 이러한 안전감은 주민들이 인식하는 1년간의 범죄발생정도, 주민들간의 친밀감, 자율방범활동의 활성화 여부, 성별, 소득수준, 거주지 유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가 안전감을 25.93% 설명하고 있다.

경찰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시민들의 정치적 태도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주민들의 생활수준과도 관계가 있으나 그 관계의 양상은 중간층의 주민들의 만족감이 낮은 꺾모양의 비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이 일반시민들에 비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찰 서비스 만족감은 정부의 정치적 태도, 주민들의 안전감, 불심검문 및 연행경험 유무, 범죄피해 정도, 소득수준, 교육수준, 자율방범단체 참여 여부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들 변수들이 경찰서비스 만족감을 45.938% 설명하고 있다.

자율방범단체 참여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관심도, 주민들의 호응도, 주민들의 친밀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세 변수들이 자율방범단체 참여의 적극성을 34.180% 설명하고 있다.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의 동기로서는 지역의 안전 확보와 친목의 도모가 가장 중요하며, 활발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서는 자신들의 사정, 지원체계의 미비, 주민들의 낮은 호응도를 들고 있다. 이들은 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부금을 내는 것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과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 모두가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혜택이나 보상을 통한 사기 앙양,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모집,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들고 있다.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은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사고시에 보험혜택을 제공하는 것, 봉사활동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시민들이 자원봉사의 바람직한 형태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직접적인 노력봉사이며,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형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경찰의 치안 서비스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사회가 자원봉사를 사회지도 이념으로 삼는 전체사회의 커다란 변화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히 정치지도자와 사회지도자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회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 가능하면 공직자, 사회단체 회원, 종교인이나 종교단체 회원 등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 인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협력단체 회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자율방범대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경찰 및 검찰 산하의 각종 자율방범단체들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며, 또한 지역 내의 다른 자원봉사단체들과 연계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자율방범단체 참여자의 선발, 훈련, 배치, 감독, 평가, 보상 등 제반의 인력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서 시민경찰학교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율방범단체 참여자들의 교육을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퇴직경찰관들 중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이들이 중심이 되어 시민경찰학교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민들의 범죄신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등 범죄신고보상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시민들의 자율방범대활동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고시에 보험혜택의 제공과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력의 인정 등 각종 유인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경찰은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듣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지역사회경찰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강화를 위해서는 시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또한 시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반상회를 활성화시켜 동네주민들 상호간에 친밀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율방범활동에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주민들의 안전감을 증진시키게 된다. 동시에 자율방범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율방범대의 각종 장비의 보급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경찰과 시당국의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여섯째, 경찰서비스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의 실시를 제도화하여 시민들의 경찰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경찰에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경찰은 이러한 조사를 통해 범죄피해조사와 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2〉

〈일반시민용〉

조사표 : 치안활동상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해가 갈수록 범죄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범죄예방이나 교통질서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치안연구소의 지원하에 시민들이 치안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시책개발을 위해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통계처리되며 응답의 결과는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 10. 28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김인

응답자 거주지 : _____ 구 _____ 동 _____ 통

1. 다음 사항 중에서 귀하께서 방법을 위해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해당란의 ()속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방법기기 설치(방법등, 경보장치, 이웃간의 비상벨 등)()
2. 방법장비(가스총, 방법봉 등)의 소지()
3. 자녀에 대한 방법 예방 교육()
4.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
5. 범죄 피해에 따른 즉각적인 신고()
6. 귀하가 자녀의 안전을 위한 마중()
7. 범죄 예방을 위한 이웃 간의 대책협의()
8. 주민 공동으로 경비원 고용()
9. 기타() _____

2. 귀하의 가족 중에서 지난 2년간 누구라도 아래의 범죄로부터 피해(피해)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없다면 3번문항으로 넘어 가십시오)

1. 없다. 2. 있다

2-1 만약 있다면, 그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단순절도() 2. 야간 주거침입절도() 3. 폭행() 4. 청소년폭력()
5. 강도() 6. 살인() 7. 강간() 8. 차량도난() 9. 기타 경범죄()

2-2. 만약 범죄피해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면 범죄 신고를 하셨습니까?
(했다고 응답하신 분은 3번 문항으로 넘어 가십시오)

1. 안했다.() 2. 했다.()

2-3. 위 의 문항에서 신고를 안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신고해봐야 경찰이 원상회복을 시킬 수가 없다.()
2. 신고해봐야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3. 신고하면 범죄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다.()
4. 신고할 만큼 중요하지 않거나 귀찮다.()

5. 신고에 따른 개인의 명예 실추의 우려가 있다.()

6. 기타.() _____

3. 귀하는 최근의 청소년범죄 및 학원폭력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심각하다.()

5. 매우 심각하다.()

4. 귀하께서 생각하실 때 귀하의 동네는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2.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

3. 보통이다.()

4. 약간 많이 발생했다.()

5. 아주 많이 발생했다.()

5. 귀하께서는 청년회와 주민자율방범대를 통한 자율방범활동이 동네의 범죄예방 및 범인체포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2.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3. 보통일 것이다.()

4. 약간 효과적일 것이다.()

5.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6. 모르겠다.()

6. 귀하께서는 주민자율방범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1. 전혀 관심이 없다.()
 2. 별로 관심이 없다.()
 3. 보통이다.()
 4. 약간 관심이 있다.()
 5. 아주 관심이 많다.()
7. 귀하께서 살고 계시는 동네는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2. 약간 안전하지 못하다.()
 3. 보통이다.()
 4. 약간 안전하다.()
 5. 매우 안전하다.()
8. 귀하께서나 혹은 자녀들이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 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2. 약간 안전하지 못하다.()
 3. 보통이다.()
 4. 약간 안전하다.()
 5. 매우 안전하다.()
9. 귀하의 동네 주민들은 서로 서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서로 전혀 모르고 있다.()
 2. 서로 별로 모르고 있다.()
 3. 그저 그렇다.()
 4. 서로 약간 알고 있다.()
 5.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다.()

10. 귀하께서는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은 경험이나 혹은 파출소에 불려가거나 연행된 경험이 있습니까?
1. 없다.() 2. 있다.()
11. 귀하께서는 경찰의 순찰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십니까?
- 1.아주 불만이다.() 2.약간 불만이다.() 3.보통이다.()
4.약간 만족한다.() 5.아주 만족한다.() 6.모르겠다.()
12. 귀하께서는 경찰의 범인수사와 체포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십니까?
- 1.아주 불만이다.() 2.약간 불만이다.() 3.보통이다.()
4.약간 만족한다.() 5.아주 만족한다.() 6.모르겠다.()
13. 귀하께서는 경찰서비스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십니까?
- 1.아주 불만이다.() 2.약간 불만이다.() 3.보통이다.()
4.약간 만족한다.() 5.아주 만족한다.() 6.모르겠다.()
14. 귀하께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한 점을 관할 행정기관에 건의하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반영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2. 별로 반영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3. 보통이다.()
4. 약간 잘 반영시켜 줄 것이다.()
5. 아주 잘 반영시켜 줄 것이다.()
6. 모르겠다.()
15. 귀하께서는 평소에 부산시가 행정업무나 사업을 어느 정도 능률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1. 아주 비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약간 비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약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5. 아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6. 모르겠다.()
16. 귀하께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아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약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모르겠다.()
17. 귀하께서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예,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확립, 청소년 선도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
 2. 각종 혜택이나 보상 등을 통한 사기 양양()
 3.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모집(상담창구, 자원봉사 센터의 설치 등)()
 4. 자원봉사단체(자생적 주민 봉사 소그룹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5.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
 6. 자원봉사에 대한 시 구 등의 행정지원체계의 확립
 7. 봉사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8. 기타() _____
 9. 모르겠다.()

18. 귀하께서는 정부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예, 자율방법활동, 교통질서확립, 청소년선도 등)의 활성화를 위해 유인(개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개발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기업이나 공무원채용시 봉사경력 점수 부여()
2. 자원봉사활동 중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3. 경비 일부 지급 등 경제적 보상제도 실시()
4. 실적에 따른 포상 및 기관장의 격려 제도의 확대 실시()
5. 기타()
6. 모르겠다.()

19. 귀하께서는 주민들이 방법활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참여 형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방법활동의 활성화를 자율방법대에 재정적 지원()
2. 방법대원으로서의 직접적인 봉사활동()
3. 경찰이나 시 구청의 방법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석()
4. 경찰이나 구청에 방법 관련 정보의 제공()
5. 기타()
6. 모르겠다.()

개인별 속성

1. 성별 : 1. 남() 2. 여()

2. 연령

1. 20대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이상()

3. 직업

1. 의사, 치과의사, 법률가, 교수, 예술가 등 전문직()

2. 회사의 사무직 및 관리직()
 3. 회사의 생산직 및 일용잡급 근로자()
 4. 각종 상점 경영자()
 5. 10인 이상 규모의 기업체 사장()
 6. 9인 이 규모의 기업체 사장()
 7. 요식, 숙박, 유흥업, 목욕, 미용, 세탁업 등 서비스업자()
 8. 요식, 숙박, 유흥업, 목욕, 미용, 세탁업 등 서비스업 근로자()
 9. 초 중등 교원()
 10.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영관급 이상 군인 포함)()
 11. 6급 이하 공무원(위관급 이하 군인)()
 12. 노점상, 행상, 과출부, 청소원, 노무자, 무직자()
 13. 주부()
 14. 학생, 졸업 후 취업 준비자()
4. 가구당 소득수준
1. 70만원 미만() 2. 7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 150만원 이상-250미만() 4.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5. 생활수준
1. 하류층상() 2. 중하류층() 3. 중류층()
 4. 중상류층() 5. 상류층()
6. 교육수준
1. 무학() 2. 국민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5. 전문대학 졸업() 6. 대학교 졸업() 7. 대학원졸업 이상()
7. 학생자녀수

초등학교(명), 중등학교(명), 고등학교(명), 대학교(명)

8. 거주지의 특성

- 1. 일반주택가() 2. 아파트단지() 3. 상가() 4. 유흥가()
- 5. 공장지대() 6. 농촌지대() 7. 기타()

〈부록 3〉

〈주민단체 참여자용〉

조사표 : 치안활동상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활동, 청소년 선도, 및 교통질서 유지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가 갈수록 범죄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차량이 증가하고 있어 범 죄예방이나 교통질서의 확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치안연구소의 지원하에 시민들의 치안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 마련을 위한 공동의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시책개발을 위해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 결과는 익 명으로 통계처리되며 응답의 결과는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 10. 28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김인

〈지원기관〉

경찰대학 치안연구소(담당:정순도 경정 T. 02-365-4808)

부산광역시 내무국 시민협력과(담당:정현빈 사무관 T.460-2256)

응답자 거주지 : _____ 구 _____ 동 _____ 통

1. 다음 사항 중에서 귀하께서 방법을 위해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해당란의 ()속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방법기기 설치(방법등, 경보장치, 이웃간의 비상벨 등)()
2. 방법장비(가스총, 방법봉 등)의 소지()
3. 자녀에 대한 방법 예방 교육()
4.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
5. 범죄 피해에 따른 즉각적인 신고()
6. 귀하 자녀의 안전을 위한 마중()
7. 범죄 예방을 위한 이웃 간의 대책협의()
8. 주민 공동으로 경비원 고용()
9. 기타() _____

2. 귀하의 가족 중에서 지난 2년간 누구라도 아래의 범죄로부터 피해(피해)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없다면 3번문항으로 넘어 가십시오)

1. 없다. 2. 있다.

2-1 만약 있다면, 그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1. 단순절도() 2. 야간 주거침입절도() 3. 폭행() 4. 청소년폭력()
5. 강도() 6. 살인() 7. 강간() 8. 차량도난() 9. 기타 경범()

2-2. 만약 범죄피해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면 범죄 신고를 하셨습니까? (했다고 응답하신 분은 3번 문항으로 넘어 가십시오)

1. 안했다.() 2. 했다.()

2-3. 위의 문항에서 신고를 안 하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신고해봐야 경찰이 원상회복을 시킬 수가 없다.()
2. 신고해봐야 경찰이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3. 신고하면 범죄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우려가 있다.()
4. 신고할 만큼 중요하지 않거나 귀찮다.()

5. 신고에 따른 개인의 명예 실추의 우려가 있다.()
6. 기타.() _____
3. 귀하는 최근의 청소년범죄 및 학원폭력의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심각하다.()
 5. 매우 심각하다.()
4. 귀하께서 생각하실 때 귀하의 동네는 지난 1년간 어느 정도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2.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
 3. 보통이다.()
 4. 약간 많이 발생했다.()
 5. 아주 많이 발생했다.()
5. 귀하께서는 청년회와 주민자율방범대를 통한 자율방범활동이 동네의 범죄예방 및 범인체포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다.()
 2.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3. 보통일 것이다.()
 4. 약간 효과적일 것이다.()
 5. 아주 효과적일 것이다.()
 6. 모르겠다.()

6. 귀하께서는 주민자율방범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1. 전혀 관심이 없다.()
2. 별로 관심이 없다.()
3. 보통이다.()
4. 약간 관심이 있다.()
5. 아주 관심이 많다.()

7. 귀하께서 살고 계시는 동네는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2. 약간 안전하지 못하다.()
3. 보통이다.()
4. 약간 안전하다.()
5. 매우 안전하다.()

8. 귀하께서나 혹은 자녀들이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 범죄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안전하지 못하다.()
2. 약간 안전하지 못하다.()
3. 보통이다.()
4. 약간 안전하다.()
5. 매우 안전하다.()

9. 귀하의 동네 주민들은 서로 서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서로 전혀 모르고 있다.()
2. 서로 별로 모르고 있다.()
3. 그저 그렇다.()
4. 서로 약간 알고 있다.()
5.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다.()

10. 귀하께서는 경찰의 순찰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십니까?
1. 아주 불만이다.() 2. 약간 불만이다.() 3. 보통이다.()
4. 약간 만족한다.() 5. 아주 만족한다.() 6. 모르겠다.()
11. 귀하께서는 경찰의 범인수사와 체포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십니까?
1. 아주 불만이다.() 2. 약간 불만이다.() 3. 보통이다.()
4. 약간 만족한다.() 5. 아주 만족한다.() 6. 모르겠다.()
12. 귀하께서는 경찰서비스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십니까?
1. 아주 불만이다.() 2. 약간 불만이다.() 3. 보통이다.()
4. 약간 만족한다.() 5. 아주 만족한다.() 6. 모르겠다.()
13. 귀하께서는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을 관할 행정기관에 건의하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반영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2. 별로 반영시켜주지 않을 것이다.()
3. 보통이다.()
4. 약간 잘 반영시켜 줄 것이다.()
5. 아주 잘 반영시켜 줄 것이다.()
6. 모르겠다.()
14. 귀하께서는 평소에 부산시가 행정업무나 사업을 어느 정도 능률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1. 아주 비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약간 비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약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5. 아주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6. 모르겠다.()

15. 귀하께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 아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약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5. 아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6. 모르겠다.()

〈주민단체 활동에 관한 내용〉

1. 귀하께서 소속된 단체는 어느 것입니까?

1. 청년회() 2. 방범위원회() 3. 선진질서위원회()
4. 녹색어머니회() 5. 향장() 6. 청소년지도위원회()
7. 보안위원회() 8. 모범운전자회() 9. 자유연맹() 10. 기타()

2. 귀하께서 주민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하시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순수한 자원봉사로서 지역안전을 위해서이다.()
2. 자녀의 귀가 도중의 안전을 위해서이다.()
3. 지역 주민들이나 회원 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4. 봉사활동을 통한 개인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얻기 위함이다.()
5. 경찰 및 관공서와의 좋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함이다.()
6. 기타() _____

3. 귀하께서 주민단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1. 경찰의 권유에 의해서이다.()

2.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이다.()
 3.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동으로 회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4. 스스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5. 주민들과 함께 방법문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6. 기타(). _____
4. 귀하께서는 주민단체의 활동에 어느 정도 자주 참여하십니까?
1. 거의 하지 않는다.()
 2. 분기별로 한 번 정도()
 3. 한 달에 한 번 정도()
 4. 2주일에 한 번 정도()
 5. 1주일에 한 번 정도()
 6. 1주일에 여러 번()
5. 귀하께서는 주민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십니까?
1. 아주 소극적이다.()
 2. 약간 소극적이다.()
 3. 보통이다.()
 4. 약간 적극적이다.()
 5. 아주 적극적이다.()
6. 귀하께서 소속된 주민단체는 어느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다.()
 2. 별로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다.()
 3. 보통이다.()
 4. 약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5.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6-1. 위의 문항에서 만약 활발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면(3,4,5 응답)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바빠서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2. 활동의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3. 지원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4. 실제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5. 주민들의 협조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6. 활동에 대한 응분의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7. 기타() _____

7. 귀하께서 소속된 주민단체의 활동은 그 효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2 응답자는 8번 문항으로)

1. 아주 작다.()
2. 약간 작다.()
3. 보통이다.()
4. 약간 크다.()
5. 아주 크다.()

7-1. 위의 문항에서 만약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응답하셨다면(3,4,5 응답),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구성원의 소극적 참여()
2. 구성원의 역할의 제약이나 장비소지의 제한()
3. 소속 단체 운영의 형식성()
4. 구성원의 능력(전문성 혹은 기술) 부족()
5. 소속 단체와 경찰의 협조체계 미흡()
6. 구성원의 인원수 부족()
7. 부적합한 사람들의 참여()
8. 기타() _____

8. 귀하의 주민단체의 봉사활동은 동네의 안전이나 교통질서 유지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2.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3. 보통이다()
 4. 약간 큰 도움을 준다.()
 5. 아주 큰 도움을 준다.()
9. 주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나 호응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좋지 않다.()
 2. 별로 좋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약간 좋다.()
 5. 매우 좋다.()
10. 구청이나 경찰서에서 주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잘 못하고 있다.()
 2. 약간 잘 못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약간 잘하고 있다. ()
 5. 매우 잘하고 있다.()
- 10-1. 만약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3,4,5에 응답한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기관장의 관심 부족()
 2.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부족()

3. 구청, 경찰, 주민자율방법대 간의 협력체계의 미비()
 4. 소속단체 구성원에 대한 사기 진작 등의 시책 부재()
 5. 소속단체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의 부재()
 6. 기타() _____
11. 만약 정부가 주민단체의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어떤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1. 활동비의 증액()
 2. 각종 장비의 보급과 개선()
 3. 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력 인정()
 4. 활동에 대한 시상()
 5. 전문적인 교육 강화()
 6. 기타() _____
12. 경찰이나 구청이 귀하가 소속된 주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2. 별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5. 매우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13. 귀하께서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예, 자율방법활동, 교통질서확립, 청소년 선도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
 2. 각종 혜택이나 보상 등을 통한 사기 양양()
 3.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모집(상담장구, 자원봉사 센터의 설치 등)()

4. 자원봉사단체(자생적 주민 봉사 소그룹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5.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
 6. 자원봉사에 대한 시 구 동의 행정지원체계의 확립
 7. 봉사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8. 기타() _____
 9. 모르겠다.()
14. 귀하께서는 정부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예,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확립, 청소년선도 등)의 활성화를 위해 유인(개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개발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기업이나 공무원채용시 봉사경력 점수 부여()
 2. 자원봉사활동 중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3. 경비 일부 지급 등 경제적 보상제도 실시()
 4. 실적에 따른 포상 및 기관장의 격려 제도의 확대 실시()
 5. 기타()
 6. 모르겠다.()
15. 귀하께서는 주민들이 방범활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참여 형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방범활동의 활성화를 자율방범대에 재정적 지원()
 2. 방범대원으로서의 직접적인 봉사활동()
 3. 경찰이나 시 구청의 방범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석()
 4. 경찰이나 구청에 방범 관련 정보의 제공()
 5. 기타()
 6. 모르겠다.()

개인별 속성

1. 성별 : 1. 남() 2. 여()

2. 연령

1. 20대이하() 2. 30대() 3. 40대() 4. 50대() 5. 60대이상()

3. 직업

1. 의사, 치과 의사, 법률가, 교수, 예술가 등 전문직()

2. 회사의 사무직 및 관리직()

3. 회사의 생산직 및 일용잡급 근로자()

4. 각종 상점 경영자()

5. 10인 이상 규모의 기업체 사장()

6. 9인 이 규모의 기업체 사장()

7. 요식, 숙박, 유흥업, 목욕, 미용, 세탁업 등 서비스업자()

8. 요식, 숙박, 유흥업, 목욕, 미용, 세탁업 등 서비스업 근로자()

9. 초 중등 교원()

10. 5급이상 고위직 공무원(영관급 이상 군인 포함)()

11. 6급 이하 공무원(위관급 이하 군인)()

12. 노점상, 행상, 파출부, 청소원, 노무자, 무직자()

13. 주부()

14. 학생, 졸업 후 취업 준비자()

4. 가구당 소득수준

1. 70만원 미만() 2. 7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3. 15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4. 2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5.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6. 500만원 이상()

5. 생활수준

- 1. 하류층상() 2. 중하류층() 3. 중류층()
- 4. 중상류층() 5. 상류층()

6. 교육수준

- 1. 무학() 2. 국민학교 졸업() 3.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졸업()
- 5. 전문대학 졸업 6. 대학교 졸업() 7. 대학원졸업 이상()

7. 학생자녀수

- 1. 초등학교(명) 2. 중등학교(명) 3. 고등학교(명) 4. 대학교(명)

8. 거주지의 특성

- 1. 일반주택가() 2. 아파트단지() 3.상가() 4.유흥가()
- 5. 공장지대() 6. 농촌지대() 7.기타()

〈부록 4〉

〈경찰관용 설문지〉

조사표 : 치안활동상의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치안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가 갈수록 범죄의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범죄의 지능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그 예방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부산시(시민협력과)는 시민들이 치안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일반시민들과 구정의 관장하에 있는 주민단체들의 자율방범활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본인은 경찰 관할 하의 주민단체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는 경찰대학 치안연구소의 의뢰에 따른 연구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쁘실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만 시책개발을 위해 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익명으로 통계처리되며 응답의 결과는 응답자 본인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 10. 28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김인

〈공동연구기관〉

경찰대학 치안연구소(담당:정순도 경정 T. 02-365-4808)

응답자 거주지 : _____ 구 _____ 동 _____ 통

1. 귀하께서는 청년회와 주민자율방범대의 방범활동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약간 잘 이루어지고 있다.()
 3. 보통이다.()
 4. 별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5. 전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6. 모르겠다.()
- 1-2. 귀하께서는 주민자율방범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 면 (3, 4, 5를 응답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자율방범대원의 수적 부족()
 2. 자율방범대원의 적극성 부족()
 3. 자율방범대원의 능력 부족()
 4. 자율방범대 운영의 형식성()
 5. 자율방범대 운영의 경비 부족()
 6. 경찰과 자율방범대 사이의 협조체계 미비()
 7. 기타() _____
2. 귀하께서는 경찰관련 각종 주민단체의 자율방범활동이 동네 주민들의 안전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아주 큰 도움을 준다.()
 2. 약간 큰 도움을 준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5.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3. 각종 주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나 호응도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좋다. ()
 2. 약간 좋다.()
 3. 보통이다.()
 4. 별로 좋지 않다.()
 5. 전혀 좋지 않다.()
 6. 모르겠다()
 7. 주민들이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른다.()
4. 경찰서에서 각종 주민단체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하고 있다.()
 2. 약간 잘하고 있다.()
 3. 보통이다.()
 4. 약간 잘 못하고 있다. ()
 5. 아주 잘 못하고 있다.()
 6. 모르겠다.()
- 4-1. 만약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3,4,5에 응답한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기관장의 관심 부족()
 2.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의 부족()
 3. 구청, 경찰, 주민자율방범대 간의 협력체계의 미비()
 4. 소속단체 구성원에 대한 사기 진작 등의 시책 부재()
 5. 소속단체의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의 부재()
 6. 기타() _____
5. 만약 경찰이 관련 각종 주민단체의 자율방범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어떤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까?
1. 활동비의 일부 지원()

2. 각종 장비의 보급과 개선()
 3. 활동에 대한 사회적 경력을 인정(예:순경 채용시에 가점 부여)()
 4. 활동에 대한 시상 확대()
 5. 전문적인 방법 교육 강화()
 6. 기타() _____
6. 귀하께서는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예,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확립, 청소년선도 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정부의 시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교육 강화()
 2. 각종 혜택이나 보상 등을 통한 사기 앙양()
 3.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모집(상당창구, 자원봉사 센터의 설치 등)()
 4. 자원봉사단체(자생적 주민 봉사 소그룹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5.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를 위한 분위기 조성()
 6. 자원봉사에 대한 시·구·동의 행정지원체계의 확립()
 7. 봉사활동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8. 기타() _____
 9. 모르겠다.()
7. 귀하께서는 정부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예, 자율방범활동, 교통질서확립, 청소년선도 등)의 활성화를 위해 유인(개인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개발한다면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사기업이나 공무원채용시 봉사경력 점수 부여()
 2. 자원봉사활동 중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 혜택()
 3. 경비 일부 지급 등 경제적 보상제도 실시()
 4. 실적에 따른 포상 및 기관상의 격려 제도의 확대 실시()
 5. 기타() _____
 6. 모르겠다.()

8. 귀하께서는 주민들이 방법활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 가장 바람직한 참여 형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방법활동의 활성화를 자율방법대에 재정적 지원()
- 2. 방법대원으로서의 직접적인 봉사활동()
- 3. 경찰의 방법 관련 각종 위원회에 참석()
- 4. 경찰에 방법 관련 정보의 제공()
- 5. 기타() _____
- 6. 모르겠다.()

9. 귀하께서는 최근 청소년 범죄와 학원포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심각하다.()
- 2. 약간 심각하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심각하지 않다.()
- 5. 전혀 심각하지 않다.()

10. 귀하께서 아래의 주민단체들의 활동이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칸에 V표시를 해 주십시오.

| 단 체 명 | 아주잘함 | 약간잘함 | 보통임 | 약간잘못함 | 아주잘못함 |
|----------|------|------|-----|-------|-------|
| 청 년 회 | | | | | |
| 방법위원회 | | | | | |
| 선진질서위원회 | | | | | |
| 녹색어머니회 | | | | | |
| 향 장 | | | | | |
| 청소년지도위원회 | | | | | |
| 보안위원회 | | | | | |
| 모범운전자회 | | | | | |
| 주민자율방법대 | | | | | |

〈부록표 1〉 주요변수 목록 및 측정지표

| 변 수 | 하위변수 | 측 정 지 표 |
|------------|---|---|
| 자율방 범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 소극적 자율방범 활동 *개인적 적극적 자율방범 활동 *집단적 소극적 자율방범 활동 *집단적 적극적 자율방범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법기기 설치, 방법장비 소지, 자녀에 대한 방법 예방 교육, 귀가자녀의 안전을 위한 마중 등의 여부 *수상한 자에 대한 신고 여부, 범죄희생에 대한 신고 여부 *범죄예방을 위한 이웃간의 협의 여부, 주민 공동의 경비원 고용 여부 *주민단체 참여자의 적극적 활동 여부 |
| 시민의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수준 *소득수준 *연령 *거주지 유형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정도 *서비스 경험 *정치적 효능감 *주민간의 친밀도 *자율방범활동에의 참여의 적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수준(상, 중상, 중, 중하, 하) *70만원, 70만원-150만원, 150-250만원, 250만원-300만원, 300만원 이상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일반주택가, 아파트 단지, 상가, 유흥가, 공장지대, 기타 *구청에서 평가한 자율방범활동 정도: 산하고 있는 동네와 잘못하고 있는 동네로 구분함. *불심검문 및 연행당한 경험 유무 *정부활동의 능률성, 대응성, 업무수행정도에 대한 인식 정도 *주민들간에 서로 아는 정도 *자율방범활동에 참여 빈도, 적극적인 활동 정도, 소속단체의 활동의 활발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의 총화 |
| 서비스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범죄희생정도 범죄희생유무 안전감 경찰서비스 만족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난 2년간 각종 범죄에 희생된 건수와 범죄의 가중치의 곱($\sum X_i W_i$). *범죄희생의 경험 유무 *야간 통행 및 집에서의 범죄로부터의 안전감 *경찰의 순찰활동, 범인검거활동, 전반적인 경찰서비스 만족감 정도 |

〈부록표 2〉

주요 설문문항의 신뢰도

| 주요 변수 | 문항번호 | 신뢰도(Cronbach's α) |
|-------------------|------------|---------------------------|
| 자율방범활동 참여의 적극성 정도 | 23, 24, 25 | 0.7922 |
| 정치적 효능감 | 17, 18, 19 | 0.7349 |
| 안전감 정도 | 7, 8 | 0.6013 |
| 경찰서비스의 만족감 | 13, 14, 15 | 0.7451 |

*위의 각 변수들의 측정을 위한 문항의 신뢰도계수들이 .6000을 넘고 있어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측정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임.

Abstract

This study has practical orientations to determine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empirical data on citizens' activities for crime prevention. This study is based on a survey of 800 citizens, 160 members of Citizen Patrolling Corps for Crime Prevention (thereafter named CPCPC), 100 members of Police Advisory Committees (thereafter named PAC), and 42 police officers from Pusan.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embers of CPCPC and PAC are more actively participating in all types of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an average citizens, and they are more satisfied with police service than average citizens. These satisfactions of police service are largely determined by political attitudes of citizens and levels of citizens' earnings. Th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and level of citizens' earnings is reversed shape of bell. The satisfaction of police service is determined by several variables such as political attitudes, feeling of safety, experience of being questioned from patrolling police officers or being taken to the police, degree of crime victimization, level of household income, level of education, whether participating in CPCPC and PAC or not. These variables explain 45.94% of variations of citizen satisfactions of police service. Feeling of safety as one of subjective outcomes of police service delivery is determined by degree of crime occurrence during last year which residents perceive, familiarity among residents, whether citizen activities for crime prevention exist or not, gender, level of incomes, and type of residence. These variables explain 25.93% of variations of feeling of safety. The degree of positiveness of members' participating in CPCPC and PAC is determined by citizens' concerns about their voluntary activities for crime prevention, degree

of residents' cooperations and supports, familiarity among residents. These variables explain 34.2% of degree of positiveness of members' participating.

The participants of CPCPC and PAC are largely motivated by neighbourhood security and fellowship. They say they could no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those organizations because of their tight schedule, ineffective police support systems, and absence of residents' cooperations and emotional supports. They consider donation of money to CPCPC as a good way of participating in citizen voluntary activities for crime prevention. Citizens and members of CPCPC and PAC also consider a campaign of publicity for the importance of voluntary activities as a best way to improve the activities of CPCPC. They consider enhancement of citizen concerns about voluntary activities, improvement of participants' morales through fringe benefits such as accidental insurance while on duty and several types of rewards, positive recruitment of volunteers for patrolling, and enlarging supports for voluntary organizations as good ways to increase voluntary participation. They consider donation of labour or time as the best way of volunteering, and provision of financial backing to the organizations as second best way of volunteering.

Based on above results of a survey, this paper suggests sever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of citizen participating in police service delivery.

First, it is necessary to initiate an advertising campaign to focus on the importance of voluntary activities and to adopt volunteering as an enhancer of social values for improving citizen participation of police service delivery. For success of volunteering, it is most important to obtain both political and support in our society.

Second, it is required to enlarge the number of members of CPCPC and PAC, because the participation in CPCPC and PAC brings about several kinds of positive side effects. It is also required to invite public officials, teachers and professors, members of religious organizations, etc. in order to diverse the number of the current membership of the PAC who are mostly small business own-

ers. It is also necessary that they make the members of PAC and citizens to increase financial support of CPCPC.

Third, it is recommended that the organizations under jurisdictions of police and the prosecutions should exchang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more closely including other voluntary organizations. Personnel management system must direct its resources more efficiently when selecting, training, assigning, supervising, evaluating, and giving rewards. It is recommended to establish Citizen's Police Academy which will educate the participants of CPCPC and PAC.

Fourth, crime-stoppers should keep their sources anonymous. The value of anonymous tips should not be overestimated because they are an effective way to report. It is recommended to develop financial incentives, such as providing accidental insurance while on duty, recognition of previous work experience of their voluntary activities.

Fifth, police should redouble their efforts to enhance their concern about community policing, and try to listen and resolve various difficulties of residents, citizens may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police service delivery. Police and municipal government should increase budgets for provision and renewal of equipments for citizen's patrolling.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police obtain citizen survey in order to get public opinions of police service delivery, and through it citizens can express their opinions to the police.

Finally, It is highly recommendable that they reestablish the neighbourhood meetings, Bansanghae in order to foster familiarity among residents. This enhances positive feeling of security within the neighbourhood, fosters a sense of togetherness coupled with voluntary patrolling.

研究報告書 97--15

경찰의 치안서비스 활동에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997年 11月 日 印刷
1997年 11月 日 發行

發 行 金 大 圖
編 輯 治 安 研 究 所
印 刷 大 韓 文 化 社
